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조달방식과 부모 지원의 젠더-계층적 성격

최선영
오신휘·박종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책임자】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오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수시) 2020-08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조달방식과 부모 지원의
젠더-계층적 성격**

발행일 2020년 11월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현대아트컴

발|간|사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결혼의 보편성은 크게 위축되기 시작하여, 21세기 초 현재에는 결혼의 당연성도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관심은 연구를 거듭하면서 체계화되고 있지만, 실제 성사되는 결혼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연구는 특히 결혼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적 기반 중 하나인 주거자금 마련을 둘러싼 세대관계와 젠더관계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비혼과 저출산 시대 가족생활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굳이 결혼한 사람이 아니어도 안정된 주거는 인간의 보편적 욕구이자 권리이다. 그러나 청년세대나 신혼부부와 같이 특정한 생애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주거불안이나 주거비용의 압박은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들의 주거문제는 사회구성원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장하고 자립해 나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미비나 부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애이행 경로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은 개인들로 하여금 사적인 가족자원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도구적 가치가 가족가치를 압도하도록 만들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부모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경제적 결과가 결정되도록 하여, 젠더-계층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다름 아닌 한국 사회의 결혼 방식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 시기에 필요한 결혼주거자금은 평균적으로 개인의 노동소득과 저축수준을 크게 능가하고 있다. 결혼을 위한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계층적으로 다르고 그것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결혼 시 부모의 지원은 남성 자녀에 대해 편향적으로 이루어져서 세대 관계와 부부 관계 모두에서 특정 성에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 결혼을 둘러싼 가족문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재생산 방식에서의 가족의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한 세대 간 자원이전 방식과 결혼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하고, 자원을 주고 받는 양측의 관계가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선영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수행되었으며, 박종서 연구위원과 오신휘 전문연구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국토연구원의 이길제 부연구위원과 본원의 조성호 부연구위원, 그리고 익명의 검독위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연구진에게 경험과 의견을 전해주시는 익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0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15
제3절 연구대상과 방법	22
제2장 결혼 초기 주거형태의 역사적·제도적 배경	33
제1절 결혼과 결혼 초기 주거의 변화 추세	35
제2절 신혼부부 주거정책 검토와 정책 함의	40
제3절 신혼부부의 생애과정과 사회경제적 특징	60
제3장 결혼주거자금 조달 실태와 유형	79
제1절 결혼주거자금 조달 실태	81
제2절 결혼주거자금 조달방식의 유형화	100
제4장 신혼부부의 특성과 결혼주거자금 조달유형	115
제1절 신혼부부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자금 조달유형	117
제2절 신혼부부의 태도와 주거자금 조달유형의 관계	130
제5장 결론	141
제1절 연구의 요약	143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향후 과제	146
참고문헌	155

표 목차



〈표 1-1〉 결혼주거자금 원천의 종류	29
〈표 1-2〉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문항 구성 예시	29
〈표 1-3〉 2018~2019년의 결혼 첫 거주주택자금 규모 조사결과 비교: 「결혼동향조사」(2019)와 「주거실태조사」(2019)	31
〈표 2-1〉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현황: 주택 지원 - 임대주택	46
〈표 2-2〉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현황: 주택 지원 - 공공분양주택	50
〈표 2-3〉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현황: 자금 지원 - 전월세	53
〈표 2-4〉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현황: 자금 지원 - 구입	55
〈표 2-5〉 남성과 여성의 연령계층별 미혼율 분포(1995년, 2015년)	62
〈표 2-6〉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 분포 및 평균초혼연령(2014~2018)	63
〈표 2-7〉 남성과 여성의 졸업-취업-연애의 순서유형 분포	64
〈표 2-8〉 초혼 5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세대 구성	67
〈표 2-9〉 혼인 연차별 초혼 신혼부부의 부부 소득의 분포, 평균, 중간값	69
〈표 2-10〉 초혼 5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및 주택소유와 소득분포	70
〈표 2-11〉 초혼 신혼부부와 일반가구의 지역 분포 비교	72
〈표 2-12〉 일반가구 주택과 결혼 첫 주택의 유형 분포 비교	73
〈표 2-13〉 일반가구와 1~2년차 신혼부부의 주거점유형태 비교	75
〈표 2-14〉 혼인 연차별 현재 주거점유형태	76
〈표 2-15〉 청년(19~39세)의 가구유형별 주택 점유형태	77
〈표 2-16〉 가구주의 연령·혼인상태·결혼시점에 따른 주택점유현황: 공공임대 비중	78
〈표 3-1〉 지역별 결혼 첫 거주주택 자산가격	82
〈표 3-2〉 결혼주거자금 원천별 금액	85
〈표 3-3〉 전체 주거자금 중 부부 자기자금 비중의 분포	88
〈표 3-4〉 전체 주거자금 중 부모 지원금 비중의 분포	89
〈표 3-5〉 전체 주거자금 중 대출금 비중의 분포	90
〈표 3-6〉 거주주택 자산가격 구간별 부모 지원 기여율 분포	92
〈표 3-7〉 거주주택 자산가격 구간별 대출 기여율 분포	93

〈표 3-8〉 부모 지원 기여율과 거주주택의 순자산 가치(평균)	94
〈표 3-9〉 남편과 부인의 결혼주거자금 원천별 금액	95
〈표 3-10〉 남편측과 부인측의 주거 이외 결혼비용 규모	96
〈표 3-11〉 남편, 부인, 남편 부모, 부인 부모의 주거자금 기여금액 분포	98
〈표 3-12〉 거주주택 자산가격 구간별 부인(측)과 남편(측)의 평균 기여금액 비교	99
〈표 3-13〉 결혼주거자금 조달유형의 7개 범주	101
〈표 3-14〉 주거자금 조달유형 분류 기준 적용	104
〈표 3-15〉 부모 지원 세부유형과 주거자금 조달유형	105
〈표 3-16〉 신혼부부 주거자금 조달유형	107
〈표 3-17〉 주택자산 5분위별 주거자금 조달유형의 비중	109
〈표 4-1〉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에 따른 주거자금 조달유형의 차이	118
〈표 4-2〉 외별이 신혼부부의 소득수준별 주거자금 조달유형	120
〈표 4-3〉 결혼연령 및 부부 경제활동 형태와 자립형에 속할 확률의 관계: 다항로짓분석	122
〈표 4-4〉 결혼시점 남성과 여성의 월평균 소득(세전)의 분포와 평균금액	124
〈표 4-5〉 본인의 주거자금 및 총결혼비용	125
〈표 4-6〉 결혼당사자의 결혼주거자금 기여금액과 성별 및 소득의 관계: 다항회귀분석 ...	126
〈표 4-7〉 결혼코호트별 성별 평균 결혼자금	127
〈표 4-8〉 결혼코호트별 본인지출 결혼비용의 결정요인: 다항회귀분석	128
〈표 4-9〉 주거자금 조달유형별 부모의 자녀부양 적정시기에 대한 견해	132
〈표 4-10〉 주거자금 조달유형별 남녀의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점수	135
〈표 4-11〉 자립/의존 유형과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이전(연간 평균)	136
〈표 4-12〉 주거자금 조달유형별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이전(연간 평균)	137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3-1] 점유형태 및 지역별 결혼 첫 거주주택비용	84
[그림 3-2] 점유형태별 주거자금원천의 동원 여부	91



Abstract

Sources of Housing Funding for Newlyweds: A Gender- and Class-Stratified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Giving

Project Head: Choi, Sun-Young

This study attempted to capture the gender and intergenerational characteristics of housing funding in newlyweds. Seven out of 10 newlywed couples were found to receive parental support. The amount of parental support varied across families of different asset levels. This study divided the observed newlyweds into two groups: those with more than half their housing fund coming from their parents (dependent type), and those with less than 50 percent of their housing fund given by the parents (independent type). The younger the age at marriage, the more prone to single-income earning, and the higher the asset level, the greater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parental dependent type.

This study also found that support from parents in all social strata centered mainly on the husband's parents. Women had lower incomes and were less likely to receive housing funding from their own parents. Women were often placed in a state of double dependence, a factor destabilizing their position in the marriage process.

*Key words: marriage, housing fund, gender, housing asset inequality, intergenerational transfer, parental financial support

Co-Researchers: Oh, Shinhwee · Park, Jong Se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결혼주거자금은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초이다. 그런데 결혼시기에 직면한 젊은 노동인구는 자산수준은 낮은 반면 필요주거자금의 요구량은 많아서 필연적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회는 이러한 주거수요와 주거자금 조달 사이의 괴리를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공적 지원과 민간 대출, 그리고 사적인 가족지원이 이 괴리를 보충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세대 간의 동거와 세대 간의 자산이전을 통해, 즉 새로운 부부가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의 지원을 받아 생활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임금노동의 일반화, 가족문화의 변화(핵가족 확대) 등에 따라 세대 간의 지원이 제약받게 된다. 부모가 성인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간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대적 가족형성은 전통사회 부모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비가족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최근에는 자산불평등의 심화, 노동소득에 대한 자산소득의 상대적 증가 등 같은 시장적 요인이 가족형성과 주거와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주택이 단지 생활 공간의 의미에 그치지 않고 가구가 보유한 자산에서 절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자산소득을 추구하는 투자대상이 된 것이다. 노동소득만을 고려한다면 부모세대와 성인자녀 세대 모두의 경제적 자립이 규범적이라 할 수 있지만, 자산 차원에서 세대 간의 자립이 규범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자산을 소유한 계층에서는 청년의 주거자립 시기에 부모에 의한 성인자녀로의 자산증여가 활발하다는 보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4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조달방식과 부모 지원의 젠더-계층적 성격

이 연구는 최근 결혼한 부부들이 주거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개인이 부모의 가족을 떠나 자신의 가족을 만드는 방식에서, 세대관계와 젠더관계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한편으로 부모의 가족을 계속해서 확장해나가는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 부모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해나가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만혼과 비혼이 확산되고 결혼의 사회적 의미도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오늘날, 결혼한 부부들은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의 변형은 사회경제적 변화로부터 고립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부의 이상적인 경제활동유형은 이제 과거의 남성 생계부양자 유형에 고착되어 있지 않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상승하였고 경제활동참여의 성격도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와 소자녀화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수 있다. 주거자산의 경제적 중요성과 투자수단으로서 주택의 가치 등 같은 경제적 부의 지형 변화 역시 결혼주거자금 조달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컨대, 최근의 결혼주거자금 조달 실태에는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변화, 여성의 사회경제적 위치변화, 주택자산의 성격 및 주택시장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개인수준의 자금원천 자료를 동원하여 결혼주거자금 조달 실태를 파악하고, 최근의 결혼연령 및 부부 경제활동 방식 등의 변화와 부모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존 정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최근 7년 이내에 결혼한 부부의 결혼주거자금의 규모는 전국 평균 1억 9,000여만 원으로 집계되었다(이하, 2015년 가격 기준). 자금원천은 자기자금 6,716만 원, 부모 지원 7,616만 원, 대출금 4,960만 원으로 구성되었다. 부모 지원금은 총량 기준으로 결혼주거자금의 약 40%를 차지하여,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자금원천임을 보여준다.

부모 지원은 신혼부부들에게 널리 확산되어 있는 주거자금 조달방식 중 하나이다. 전체 신혼가구 10가구 중 7가구가 부모에게 지원받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부모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원 규모는 양극화되어 있었다. 그 규모와 비중은 계층수준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측 부모의 지원금 규모는 전혀 없는 경우가 42.3%, 3,000만 원 미만이 7.7%를 차지하는 한편, 9,000만 원 이상 1억 2,000만 원 미만이 9.7%, 1억 2,000만 원 이상이 14.2%를 차지하여, 약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부모도 전체의 약 25%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주거자금에 대한 부모 지원금의 비중(기여율)을 살펴보면, 부모 지원금이 절반 이상을 기여한 경우는 전체의 30.7%를 차지했고, 부모 지원금이 전혀 없는 경우는 35.8%, 부모 지원금이 절반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3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금(남편과 부인), 부모 지원(남편측과 아내측), 대출금으로 구성되는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조달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거자금 조달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하나는 세대관계와 젠더관계를 측정하는 복합적 기준을 구성하여, 이 기준에 따라 구별된 다양한 유형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다른 하나는 부모 지원에 의존하여 주거자금을 조달하거나, 남편의 주거자금에 의존하는 현상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 결과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의 결혼주거자금 조달방식은 각 자금원천의 동원 여부와 자금원천별 기여율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전체 자금에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를 의존형으로 분류하고 50% 미만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자립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자기자금과 부모 지원금에서 남편(측)과 부인(측)의 상대적 기여율을 기준으로 남편측 편향, 아내측 편향, 부부 공동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기준을 교차하여 유형화한 결과, 전체 주거자금 조달유형 7개 중 남편주도 자립형이 가장 높은 비중(35.6%)을 차지했고, 남편측 부모 의존형이 그다음(23.5%)을 차지했다. 대출을 통해 자금을 동원하는 유형은 전체의 18.0%를 차지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자립한 유형은 10.4%로 나타났다. 그 외 아내주도 자립형, 아내측 부모 의존형, 양측 부모 의존형은 각각 4.1%, 4.0%, 3.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어떤 특성의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자립형(부모 지원금이 전체 자금의 50% 미만)에 속할 가능성이 클 것인가를 확인하였다. 기존연구에서 자주 활용된 변수인 거주주택가격, 주택점유형태, 거주지역, 소득수준 등과 함께, 최근의 사회변화 추세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결혼연령과 부부 경제활동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산 하위 20%에 비해 자산 상위 20%층은 의존형에 속할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소득수준은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결혼연령이 높을수록 자립형에 속하고, 부부가 결혼시점에 맞벌이로 일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립형에 속할 확률이 큰 것이었다.

부모 지원을 받지 않거나 적은 비중으로 지원받는 개인들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시기를 지연하는 것이다. 반대로 평균적인 결혼연령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를 계층적으로 중립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면, 여기에서 맞벌이 유형과 자립형의 관계는, 맞벌이로 인해 부부가 함

게 조달할 수 있는 자금(저축과 대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때 부모의 재정적 지원에 덜 의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자기자금에서 남편과 아내의 자금 기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총 결혼비용과 주거자금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기여금 차이가 단지 성별(젠더규범)에 따른 결과인지, 남편과 아내의 소득 차이에 따른 결과인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으로 올수록 총결혼 비용에 대해 성별의 효과는 줄어들고 소득의 효과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자금만을 떼어놓고 보면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결혼당사자들은 여전히 주거와 주거 이외의 비용을 남녀가 분리하여 지출하고 있지만, 총 결혼비용에 대해서는 성별 그 자체가 아니라 성별과 관련된 소득수준 등의 경제적 능력이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비용이 드는 일이다. 결혼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자금의 필요는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부부 10쌍 중 7쌍이 부모에게 지원받았다는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결혼을 통한 주거 독립과정이 여전히 사적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자산상위층에서 부모 지원의 비중과 규모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상위계층이 부모세대의 부를 자녀세대로 되물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주거자금을 증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의 지원이 결혼주거자금 조달방식에 모두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혼 이행의 복지적 수단으로서의 부모 지원과 자산상위층의 지위재생산 수단으로서의 부모 지원이라는 두 가지 지원 모두에서 부인측 부모는 소극적이고 남편측 부모가 적극적이다. 즉 모든 성격의 부모 지원은 남편측 부모에 의한 남성자녀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용어: 결혼, 주거자금, 세대관계, 젠더관계, 세대 간 이전, 자산불평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연구대상과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결혼율이 크게 감소하여 비혼인구가 늘어났고, 누구나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결혼규범도 약화되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주로 인구구조와 인구규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으며, 주로 개인들 사이의 결혼행동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을 자극해왔다.

그러나 결혼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개인들의 결혼 진입 여부를 설명하는 데 집중된 사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의 결혼진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이 하나의 제도로써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인구학적 결혼행동을 해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심부족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결혼의 당연성이나 보편성이 상대화될 때, 다시 말해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개인이 결정하게 될 때, 개인들은 기대되는 결혼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된다. 현재의 경제적 상황보다 나아질 가망이 없거나 후퇴가 예상되는 결혼은 회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결혼을 연구한 셸린(Cherlin, 2004)은 결혼이 점점 더 지위재의 '구매'라는 시장적 성격을 띠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정된 직업과 높은 소득을 갖춘 배우자는 결혼시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배우자인 반면, 그러한 노동시장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혼에 이를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사회의 결혼 이행률 연구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

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서는 결혼·출산으로의 이행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윤자영, 2012; 최필선, 민인식, 2015; Kim, 2017; 신윤정, 2020). 사회전반적인 수준에서는 안정된 노동시장 지위와 고소득을 갖춘 배우자들이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노동소득의 위상도 약화되고 있다. 노동소득은 정체되거나 미미하게 증가하는 동안, 자산소유층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자산수익은 크게 증가하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이철승, 정준호, 2018; 오민준, 2020). 요컨대, 결혼의 선택가능성이 커질수록 결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점점 더 그러한 삶의 질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규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는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조달방식에 주목하여, 결혼규범이 크게 약화된 2010년대 한국 사회에서 실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특징을 포착하고자 한다.

결혼주거자금은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초이다. 그런데 결혼시기에 직면한 젊은 노동인구의 자산수준은 낮고 필요주거자금의 수준은 높아서 필연적으로 당사자들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회는 이러한 주거수요와 주거자금 조달 사이의 괴리를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공적 지원과 민간 대출, 그리고 사적인 가족지원이 이 괴리를 보충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다.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세대 간의 동거와 세대 간의 자산이전을 통해, 즉 새로운 부부가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의 지원을 받아 생활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임금노동의 일반화, 가족문화의 변화(핵가족 확대) 등에 따라 세대 간 경제적 자립이 규범화된다. 다시 말해 부모가 성인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간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적 가족형성은 전통사회 부모 역할을 대체

할 수 있는 비가족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주거자금의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사적으로 조달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공적 주거복지 지출수준이 낮고 임대제도가 목돈을 요구하는 전세 중심으로 발달해 있어서, 신혼부부의 필요 주거자금은 (주택종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결혼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은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적 지위나 공적인 시민적 지위보다, 사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주거자금 마련에서 중요성을 키우도록 만들고 있다. 사적인 자원 의존성의 증가는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젠더 편향적인 세대 간 자원 이전과 신혼부부 사이의 경제적 기여 격차를 확대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생활에 대한 기대와 충돌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혼부부의 주거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조달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최근에 생산되기 시작했고[국토교통부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2014~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2019)], 관련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주거자원 동원을 둘러싼 세대·젠더 관계 측면에서의 협력/갈등/타협 등 동학에 주목한 연구들은 소규모 사례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자와 부모, 남편측과 아내측의 기준에 따른 주거자금 조달방식을 유형화하고 각각이 점유하는 비중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최근 결혼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해명해줄 것이다.

주거자금의 조달방식은 관련 주체들의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누가 집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가에 대한 문화적 믿음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탈전통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과거의 지배적인 문화적 이상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

전통적 관념(부거제의 유제,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 부모의 자녀 부양 책임의식)과 더불어, 새로이 부상한 가치로서 세대 간의 ‘자립’ 추구, 남성과 여성이 공평하게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가치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거자금 조달방식은 단지 경제적 자원동원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가치와 탈전통적인 가치가 맞부딪히는 장이 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어지는 1장의 후반부에서는 기존연구와 연구자료를 검토한다. 2장에서는 신혼부부의 결혼 첫 주거에 대한 역사적·제도적 배경을 검토한다. 기존문헌을 통해 20세기 후반 이후 결혼 첫 주거를 둘러싼 가족문화적 영향과 변화를 살펴보고, 2010년대에 새로 등장한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책의 현황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신혼부부의 생애, 경제활동, 주거형태 등의 특징을 파악한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을 조달원천별 기여금액과 기여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어떤 원천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얼마나 일반적으로 의존하는가를 파악한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 상대적 기여율을 파악한다. 최종적으로 부모 지원의 비중과 젠더 편향적 정도를 교차한 복합적인 지표를 구성하여 결혼자금 조달유형을 제시하고 비중을 측정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한 주거자금 조달유형의 계층적 성격과 젠더적 성격을 통계적으로 규명하고, 신혼부부의 태도와 주거자금 조달방식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1. 주거자립방식과 부모 지원

청년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방해받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Furstenberg, 2010). 일반적으로 성인기로 이행하는 것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싱글에서 파트너 관계(partnership) 또는 부모상태(parenthood)로, 그리고 부모집을 떠나 독립적 거주로의 이행이 생애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취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시대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성인됨이란 부모로부터 자립하여 성인의 역할을 떠맡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성인기 이행이 시간적으로 지연되거나 이행발생률 자체가 감소하는 현상이 보고되어 왔다(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부모의 보호와 지원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정서적, 정치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성인됨이라면, 성인기로의 이행 지연과 곤란은 부모에 대한 의존이 확대되는 현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주거에서 두드러지는데, 주거자립의 어려움은 부모와의 동거기간 연장이나 부모집으로의 복귀, 부모의 주거자금지원 등과 같이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세대의 주거를 둘러싼 부모세대와의 경제적 이전 관계는 다양한 제도적·문화적 조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세기 동안 세대 간 경제적 자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문화적으로도 강조했던 사회에서는, 문화나 제도 그 자체보다는 2000년대 경제위기와 주거비용 상승 등이 청년세대의 자립의 후퇴를 초래했다(Rowlingson, Joseph & Overton, 2017). 일례로 2008년 영국의 조사에 따르면, 30세 이하의 생애 최초 주

택구입자의 거의 절반이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Heath & Calvert, 2013, p. 1120). 청년세대의 재정적 여력이 축소되고 주택비용은 크게 늘어나서, 장기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금(deposit)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 비해 주택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 않은 독일에서는 청년 임차가구에서 부모세대의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임대료나 생활비를 지원 받거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부모집으로 회귀하는 현상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들이 부모-성인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중요시하는 것과 무관하게 나타난 현상이다(Lennartz & Helbrecht, 2018).

생애 최초 주택소유에 대한 가족 동학과 부모 배경의 영향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각 국가의 주거 레짐 또는 제도 환경이 개인들의 특정한 점유형태 선호뿐만 아니라 주거소유의 기회와 제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령 영국의 청년들은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반면 독일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 또한 영국은 생애 최초 주택소유와 가족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한 반면, 독일은 둘 사이의 관계가 보다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Bayrakdar, Coulter, Lersch, & Vidal, 2019).

남유럽의 사례는 주거자금 조달의 제도환경이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세대 간 경제적 독립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도 주거자금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주택대출제도와 민간임대시장이 발달한 이들 사회에서는 부모의 성인자녀지원 그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다루어진다. 반면, 1990년대까지도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남유럽에서는 주택금융시장이 덜 발달하여 장기대출제도에 의존하기 어려웠다. 대신에 비시장적인 사적 수단, 즉 개인의 저축이나 친족 간 증여나 대여를 통해 주거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Poggio, 2008).

가족이나 친족을 통한 주거자금지원은 전통적인 세대 간 승계의 논리가 현대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이탈리아에서는 부모집으로부터 자립하여 주택을 마련할 때, 남성자녀에게는 현물을 직접 (사전)상속하는 일이 많은 반면, 여성자녀에게는 현금을 (사전)상속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주거자금지원에서 특정 젠더가 배제되는 일은 보고되지 않았다(Poggio, 2008).

한국도 주거자금 금융화는 덜 진전된 편이고 소비자들은 장기대출을 꺼리기 때문에 장기주택대출제도가 저발달한 상태이다(전창환, 2011). 더욱이 독특한 임대제도인 전세가 발달하여 주거자립시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특히 전세와 자가의 비중이 높아 외부자원의 조달이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 전 이미 부모집으로부터 주거를 분리하고 자립한 경우는 많지 않다. 학업 중이거나 취업 때문에 부모집으로부터 분가한 경우에도 부모가 주거비와 생활비, 학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박미선, 강미나, 임상연, 유은영, 오주형, 2019). 이러한 부모의 지원이 충분치 않을 때 청년층은 쉽게 주거 빈곤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이태진, 우선희, 최준영, 2017).

성인됨의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경제적 자립이다. 이는 우리나라 미혼남녀에 대한 연구에서도 확인된다(김현주, 이선이, 이여봉, 2013). 이처럼 경제적 자립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성인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도 해명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부모의 지원을 받은 청년세대 자신은 부모의 지원을 정상적인 행위로 간주하는가, 정상적인 행위로 간주한다면 그것을 '채무'로 인식하는가, '선물'(증여)로 인식하는가의 쟁점이 존재한다(Heath & Calvert, 2013; Fingerman et. al., 2012).

2. 결혼주택 마련과 세대 간 자산 이전

거주부동산 자금 마련에 관한 국내연구들은 부모의 소득, 자산, 계층적 지위 등과 자녀세대의 자산가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해왔다. 마강래, 권오규(2013)의 한국노동패널(1~11차연도) 분석에 따르면, 부모세대의 거주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클수록 성인자녀세대의 거주부동산 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진수, 김준형, 강민규(2015)는 서울에 거주하는 3억 이상의 부동산자산 보유가구 대상의 조사를 통해, 국내 중고령가구의 주택자산이 자녀세대로 이전되는 행태를 살펴보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세대로의 주택자산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부모세대의 소득과 주택 외 부동산 소유 여부 같은 경제적 요인들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주택 특성, 자녀 특성의 영향은 대체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고진수, 김준형, 강민규, 2015).

이길제, 최막중(2017)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신혼부부가구의 부동산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순자산과 본인의 항상소득 간의 관계를 밝혔다. 부모의 순자산은 직접적인 경로로 자녀의 부동산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간접적인 경로로 자녀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높여서 자녀의 부동산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자산은 자녀의 소득수준을 경유하여 자녀의 부동산 자산가치를 높이는 방식보다는 자녀의 소득수준에 매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의 부동산 자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종훈, 이성우(2017)는 2015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 부모의 직접적 지원을 다루었다. 이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점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출상품의 활용이 클수록 부모 지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청년 또는 중년의 주택자산 형성에 있어, 부모세대로부터의 직접적인 이전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자산의 이전 행위는 부모세대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 인구집단의 주택자산가치 격차 및 주택점유형태 분포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현정, 김영주(2018)는 노동패널 2016년(19차) 자료를 분석하여, 청년층 19~39세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자산 효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점유형태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가구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월세 가구는 20대 미혼이고, 가구원 수가 2인 이하이며, 비수도권의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전세 가구는 30대 기혼이고 가구주가 남성이며 가구원 수 3인이면서 수도권의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가가구는 3인 이상의 30대 후반 남성 가구주로서 대출 이상이며 중소형 아파트에 주로 거주한다. 청년층 내부의 주택자산 격차는 가구주의 연령, 거주지역, 주택유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택자산의 가치는 가구 간 총자산, 순자산, 자본이득의 격차를 크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었다(이현정, 김영주, 2018).

이처럼 가구주의 연령·혼인 여부 같은 생애과정적 특성은 주거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실은 결혼 전후 주거 점유나 주택유형의 변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가구 외부의 자금동원이 이루어진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주거 소비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자산이 자녀세대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주택은 필수적인 생활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며 주택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주택에 매개된 세대 간 자산이전은 세대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3. 신혼부부 주거와 친족관계

세대 간 자산이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는 부모의 자산과 자녀 자산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남성자녀의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이길제, 최막중, 2017). 자녀의 결혼주거자금에 대한 부모의 젠더 편향적 지원은 국외의 세대 간 자산이전 연구에서는 거의 보고되지 않은 현상이다(Poggio, 2008; Rowlingson et al., 2017).

강한 가족주의적 사회재생산 방식을 고수해온 한국 사회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역시 가족주의 문화와 제도의 영향을 받아왔다. 가족·친족연구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주거지 선정이나 주거자금 조달에서 남편 친족이 편향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그 주요한 형태는 아들의 결혼주거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한경혜, 윤성은, 2004; 김주희, 2009; 이소영, 2011). 이 연구들은 특히 부계 중심주의의 변화 정도 또는 양계화 정도에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친족관계의 부계 편향성은 일반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세대관계를 도구적, 정서적,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세대관계의 편향적 성격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의 주거자금지원에 나타난 남성 편향성은 출계율을 의미하는 부계 직계가족주의나 거주율을 의미하는 부거제를 통해 해석되는 편이다(이소영, 2011; 이길제, 최막중, 2017).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1990년대 이후 그러한 부계 중심적인 출계율과 거주율이 가족생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일반적 견해와 충돌한다. 오히려 1990년대 이후로 세대 간

관계는 남편측과 부인측의 양측으로 확장되어, 남편측의 중심성은 크게 약화되었다는 주장이 많다. 따라서 부모 지원의 젠더 편향성을 전통문화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은 불충분하다.

오히려 성인자녀와 부모세대 사이의 관계에서도 남편측은 부부 중 남편의 역할을 보충하고, 부인측은 부부 중 부인의 역할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성역할을 모방한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Lee & Bauer, 2013; 이길제, 2017). 이에 따르면, 부모 양측의 상반된 자녀지원 양상은 부모-자녀 관계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핵가족의 성역할 분리를 모방하는 것이 되며, 그것은 전통적이기보다는 매우 근대적인 양상이다. 실제로 세대 간 경제적·신체적·정서적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차이를 확인해왔다. 특히 부모에서 자녀로의 자산이 전이나 자녀에서 부모로의 경제적 이전에서 남편측의 세대 관계가 부인측의 세대관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한경혜, 유성은, 2004; 성미애, 2006; 김주희, 2009; Kim, Zarit, Fingerman, & Han, 2015).

또한 홍성희(2019)는 자녀에게 도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의 동기가 즉각적인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교환론적인 동기가 아니라 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정병은(2007)도 부모가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동기는 도구적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나 도리와 관련된 규범과의 일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규범이나, 관습의 답습이나, 부모세대의 이타적인 도덕적 동기를 중심으로 세대 간 자원이전의 젠더 편향성을 설명하는 것에도 한계는 있다. 고선강(2012)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부모의 지원에 대한 자녀세대의 보상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부모의 필요가 증가할 때, 자녀세대는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욱

이 홍성희(2019)가 강조한 자녀세대와의 ‘좋은 관계’ 유지라는 동기 또한 단절없이 지속되는 관계의 유지를 위해 자녀세대가 일상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호혜성의 동기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성인자녀의 경제적 생활에 대한 부모세대의 지원은, 부모세대 자신의 생활안정과 여유자금과 시간 등이 있어야 가능한 계층적 현상이다. 그러나 가족·친족연구의 세대 간 자원 이전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계층적 편향성에 대체로 무관심한 편이었다. 부계적 편향이든 양계적 확장이든 그것이 사회계층 사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세대 간 연대 그 자체가 세대 내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로 발전 될 필요가 있다.

제3절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가. 최근 년도 결혼코호트로서 신혼부부

이 연구는 최근 결혼한 부부들이 결혼 첫 거주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논의이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자료인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와 관련하여 분석대상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대상과 대상시기는 2012년 8월부터 2019년 7월 사이에 결혼한 ‘결혼코호트’이다. 이 연구의 분석자료가 제공한 모든 사례를 포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대상시기를 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최근 결혼한 부부(나 커플)’

또는 ‘신혼부부’라고 명명하는 대상은 이 시기 동안 결혼한 사람들을 의미한다.¹⁾

이 연구에서 혼인은 법률혼과 사실혼 모두를 구분하지 않고 포함한다. 결혼시기도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가 기입한 결혼시기를 그대로 사용했다. 따라서 응답에 따라 결혼시기는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이거나 결혼식을 올린 시점 또는 혼인신고를 한 시점일 수 있다. 대체로 결혼식을 올린 시점을 혼인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혼인의 종류는 이론적으로 초혼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 혼인은 미혼에서 기혼으로의 생애이행(life course transition)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분석자료에서 97%가 초혼가구로 표집되어 별도로 혼인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포함하였다. 다만, 현재 신혼부부의 실태를 다룬 2장 3절에서는 초혼 신혼부부로 제한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나. 결혼주거자금과 자금원천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최근 결혼코호트가 결혼하면서 구매·임차한 주택의 자금(이하, 결혼주거자금)을 마련한 방식, 즉 결혼주거자금 조달방식이다.

1) 이 연구에서 신혼부부는 결혼 초기의 상태를 공유하는 기혼자들을 의미한다. 일상 언어생활에서 신혼, 신혼부부, 신혼집, 신혼생활 등은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며, ‘the newly weds’로 영어권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결혼 초기를 여타 결혼생활시기와 구분하는 절대적인 시간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결혼 초기의 생활을 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관련 법에서는 정책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혼인 5년 또는 7년 이내라고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러한 법적 신혼부부 규정은 정책 설계와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령, 신혼부부 통계(통계청)는 혼인 5년 이내인 부부를 신혼부부로 규정하며,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는 현재 신혼부부주거정책 대상이 혼인 7년 이내인 부부이므로 동일한 대상을 신혼부부로 간주한다.

개인의 주거상태는 가구구성(누구와 함께 사는가), 지역(어디에서 사는가), 주택유형과 점유형태(어떤 주택을 구매·임차하는가)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거상태는 생애시간 동안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거생애 중에서 ‘결혼 시점’에 초점을 맞춘다.

본 보고서에서는 결혼 첫 주택자금 조달방식을 밝히기에 앞서, 최근 결혼한 사람들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분석은 불가피하게 결혼연차가 짧은 ‘신혼부부’라는 범주의 현재 인구사회경제적 실태를 통해 파악될 수밖에 없다. 대표성 있는 기존 통계조사들은 신혼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종단적 조사를 통해 조사하기보다는 혼인 5년차 이내 또는 7년차 이내의 부부의 횡단면 정보를 집계하여 신혼부부의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신혼부부는 결혼시점의 부부를 의미하지만, 이러한 부부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징은 불가피하게 결혼 경과 연수 5년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의 특징으로 대신 분석하는 경우가 있음을 밝힌다.

2. 연구방법

가. 연구방법과 자료

이 연구는 기존 실태조사 자료와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례 인터뷰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조달 실태에 대한 파악은 가장 핵심적인 연구과제이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한다. 이 조사는 혼인 7년 이내(2012년 8월 이후부터 2019년 7월 이내 결혼)의 신혼부부를 모

집단으로 설정한 표본조사이다. 조사설계는 가구특성에 관한 조사와, 가치관과 결혼 전후 고용/주거/소득 등의 상황에 대한 개인별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조성호, 변수정, 김문길, 김지민, 2019).

조사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이루어졌고 필요한 경우 우편조사를 병행하였다. 전국적 대표성을 얻기 위한 층화표집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조사의 원자료에서 제시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조사결과 활용 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의 신혼부부 샘플은 교육수준과 주택점유형태 면에서, 여타 조사와 차이가 있다. 우선 교육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통계청(2019)의 신혼부부행정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고졸 이하의 학력집단이 과소표집되었고, 국토교통부(2019)의 주거실태조사에서 확인되는 초혼연도 2018년 및 2019년 가구주의 주택점유형태와 비교하여 보증부 월세가 과소표집되었다. 즉 상대적인 하위계층이 과소표집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이러한 표집 한계에 주의하여 분석을 진행하겠지만, 이 연구 또한 원 분석자료의 편향에서 나오는 한계를 공유할 수 있음을 밝힌다.

이 연구는 기존 사회조사 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를 통해 밝혀진 주거자금 조달유형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소규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20년 10월에 이루어졌으며, 총 7 부부의 사례를 부부의 대표자 개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사례는 연구진의 주변인들로부터의 소개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인구/사회경제적 대표성보다는 주거자금 조달유형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별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보다는, 연구결과의 구체화를 위해 인터뷰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다.

나. 분석자료의 검토

1) 결혼 첫 거주주택자금 관련 기존조사 검토

본 보고서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결혼 첫 거주주택자금과 자금조달유형은 특정한 조사대상(결혼한 사람)과 특정한 정보(결혼시점 거주주택자금 규모와 자금원천)를 포함하는 조사자료에 의존하여 연구할 수 있다. 그러한 조사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의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에 기초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이 조사자료를 분석함에 앞서, 결혼과 주거에 관한 기존조사를 간략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횡단면 사회조사에서 결혼 첫 주거에 관한 정보는 별도의 문항을 통해 응답자의 회고에 기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 결혼 첫 거주주택자금과 자금원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횡단면조사 자료로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가 있다. 이 조사는 전체 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특정 인구집단에 특화된 조사는 아니다. 하지만 가구주의 연령, 결혼 여부, 가구구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실태의 차이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실태조사」는 관찰시기가 조사대상의 현재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 결혼 첫 주거에 관한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년도에 결혼한 가구의 현재 시점 주거 정보를 결혼 첫 주거에 관한 정보로 간주하고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의 관심에서 보았을 때, 「주거실태조사」의 주요한 한계는 주거 자금원천에 관한 문항에 있다. 이 문항들은 주거자금원천을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부 각각이 동원한 자금의

원천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즉 부부당사자의 개인별 자금을 구분할 수 없고, 부모의 지원금액이 남편측 부모의 지원인지 아내측 부모의 지원 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조사에서 2018년과 2019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현재 주거자금 조달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례는 자가의 경우 17.1%, 전세의 경우 14.1%, 보증부 월세의 경우는 3.9%로 조사되었는데(국토교통부, 2019),²⁾ 이 수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같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실시한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결혼 첫 거주주택 마련에 부모의 지원이 있었던 경우는 전체의 약 40%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최선영, 2020, p.206에서 재인용), 불과 2~3년 사이에 부모 지원율이 10%대로 감소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주거자금지원 여부와 규모에 대한 응답은 과소보고될 개연성이 크다. 법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증여세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사회조사에서 정정하여 정확하게 응답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다. 이러한 응답 편의를 통제할 수 있는 문항설계가 필요하다.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소유한 주택자산가액에 대한 통계를 비롯하여, 신혼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통계자료는 응답자의 과소보고나 누락 등의 편의를 제거한, 행정통계로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의 주거관련 정보에 주택점유형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직 주택유형과 소유주택가액 정보만을 제공하여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실태조사와 신혼부부통계는 결혼시점

2) 2019 주거실태조사 원자료에서 필자가 직접 계산한 수치로서, 무응답을 제외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의 주거상황에 특정화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주거자금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불충분하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이 보고서에서는 주거자금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대표성 있는 기술을 위한 용도로, 이 자료들을 사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일한 조사대상을 계속해서 추적조사하는 패널조사에서도 주거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패널조사는 결혼시점과 조사시점이 일치된 상태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회고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결혼시점 주거상황에 대해 오차를 최소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은 동일 가구의 자산과 소득을 매년 상세하게 조사했기 때문에, 결혼을 비롯한 생애이행에 따른 주거변동 사항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특히 원가구와 분가가구의 자산과 소득에 관한 정보가 모두 제공되기 때문에, 원가구나 분가가구 중 어느 한 가구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경우에 비해, 두 가구 사이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분가가구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 결혼 첫 거주주택의 유형이나 자금규모 등에 대한 대표성 있는 정보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결혼주거자금에 대한 부모 지원 실태 정보가 제한적인 것도 한계이다. 노동패널은 결혼한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부모 지원 금액을 질문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원가구(부모가구)의 소득과 자산의 특성과 분가한 자녀가구의 소득과 자산의 특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양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산 이전에 대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결혼한 커플의 양측 부모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이다. 분가가구 중 원가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사례만을 다루면서 그 분가가구의 구성원이 여성

그렇다면 「결혼동향조사」에서 결혼주거자금 정보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하에서는 「주거실태조사」의 2018년 및 2019년 결혼한 가구주의 현재 주택정보와 「결혼동향조사」의 같은 연도에 결혼한 부부의 결혼 첫 거주주택에 관한 정보를 비교하여, 이 조사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하 분석에 참조한다.

「결혼동향조사」의 전체 대상(혼인 7년 이내) 결혼 첫 거주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 29.7%, 전세 53.7%, 보증부 월세 8.6%로 나타났다(조성호 외, 2019, pp. 242). 결혼 연도가 2018년과 2019년인 부부의 거주주택만을 살펴보면, 자가 18.5%, 전세 62.0%, 보증부 월세 10.8%의 비중을 보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서, 혼인 1년차와 2년차 부부의 거주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30.2%, 전세 43.2%, 월세 20.4%이다(국토교통부, 2019).³⁾ 2018년과 2019년 결혼한 사례만을 비교하면, 「결혼동향조사」는 「주거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전세 비중이 높고 자가와 보증부 월세의 비율은 낮게 표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결혼 첫 거주주택자금의 규모 및 조달방식은 혼인연차와 상관없이 전체 대상(혼인 7년 이내)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므로, 「결혼동향조사」의 전체 대상(혼인 7년 이내)의 결혼 첫 주택의 점유형태와 「주거실태조사」의 최근(2018년과 2019년) 결혼한 부부의 거주주택의 점유형태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르면, 두 조사의 결혼 첫 주택 점유형태에서 자가 비중은 유사하고 전세와 월세의 비중만이 차이가 났다. 보증부 월세는 상대적으로 주택자산(보증금)의 규모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구매자금의 규모보다 작고, 상대적으로 부모자금에 대한 의존 정도도 작은 편이다. 따라서 「결혼동향조사」에서 측정한 부모자금 의존 정도는 과대평가된 것일 수 있다.

3) 2019 주거실태조사 원자료에서 필자가 직접 계산한 수치로서, 무응답을 제외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그 외 점유형태의 비중은 순월세 0.7%, 무상 5.6%이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가급적 점유유형별로 자금 조달유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거주주택자금의 규모 측정 결과를 비교한다. <표 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결혼동향조사의 결과와 주거실태조사의 결과는 두 조사 모두 표집오차를 가진 표본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의 신뢰성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가는 중간값에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 값이 유사했고, 전세는 평균과 중위값 모두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 규모는 두 조사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아마도 결혼동향조사에서 신혼부부만을 선별 표집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의 규모가 낮은 월세 가구가 과소표집된 결과일 것이라 추측된다.

<표 1-3> 2018~2019년의 결혼 첫 거주주택자금 규모 조사결과 비교: 「결혼동향조사」(2019)와 「주거실태조사」(2019)

(단위: 만 원)

구분	결혼동향조사(2019)		주거실태조사(2019)	
	평균	중간값	평균	중간값
자가	23,739	20,500	23,792	23,000
전세	17,503	15,000	16,972	15,000
보증부 월세	5,949	5,000	2,826	1,000
전체	17,399	15,000	16,053	15,000

이상에서 본 보고서의 주요 분석자료인 결혼동향조사의 자료 성격을 검토하였다. 주거실태조사와 비교하여 보증금 규모가 작은 월세 점유 가구가 과소 표집되었고, 월세 보증금 규모는 과대 측정되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점유형태를 구분하는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연구결과의 대표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한다.



제2장

결혼 초기 주거형태의 역사적·제도적 배경

제1절 결혼과 결혼 초기 주거의 변화 추세

제2절 신혼부부 주거정책 검토와 정책 함의

제3절 신혼부부의 생애과정과 사회경제적 특징

제 2 장

결혼 초기 주거형태의 역사적·제도적 배경

제1절 결혼과 결혼 초기 주거의 변화 추세

결혼 양식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기 마련이다. 서구사회에서 시작된 근대화 과정은 부모주도의 결혼을 결혼당사자 주도의 결혼으로 전환하였는데, 특히 성인자녀 세대의 도시 임금노동과 데이트 혁명 등이 이러한 변화를 이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절에서는 결혼 초기 주거와 관련하여 결혼당사자와 부모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과정을 거쳤는가를 기존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문헌고찰을 통해 가족형성과정에서 세대 및 젠더 관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기 직전, 한국 가족의 모습은 1950~60년대 농민가족의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 농촌지역 사회조사에 따르면, 당시의 가장 일반적인 혼인 양식(혼인 후 거주방식)은 결혼한 부부가 남편의 부모 및 형제와 함께 거주한 후 일정기간 이후(부친의 사망 이후) 분가하는 것이었다(이해영, 권태환, 1968; 정승모, 2010; 권내현, 2010; 문소정, 1991).

196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이농과 압축적 산업화의 결과로, 농촌에서 3세대가 동거하는 가구형태가 드물어지기 시작했다. 젊은 인구의 대다수가 도시로 이주함으로써 물리적으로 부모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남편의 부모가족과 하나의 가구를 이루는 일은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게 되었다. 즉 새로 가구를 형성한 신혼부부의 일상적 생활과 경제적 생존은 부부 중심의 단위 내에서 충족되어야 했다.

그러나 결혼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일거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배우자 선택에서 맞선이 줄어들고 연애혼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부모는 최종적으로 결혼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배우자 선택 양식은 완전한 자유혼이라기보다는 절충혼이라고 평가된다(함인희, 2001). 더욱이 부모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부담하는(‘자식을 결혼시키는’) 주체임을 자임해왔다.

부모가 책임지는 결혼이라는 관념은 농촌경제와 농민가족의 재생산방식에 기원을 두고 있었지만, 화이트칼라를 비롯한 근대적 임금노동자들의 생활과 도시문화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 실시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혼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혼주거자금을 결혼당사자(남성)의 자력에 의해 마련한 경우는 전체의 20% 수준이었다. 남자측(남자측 부모)이 집을 마련(사거나 빌리는 것)한 경우가 64%이고 여자측이 마련한 경우는 4%에 불과했다. 양가부모가 공동 부담한 경우는 12%였다(최선영, 2020, p.171에서 재인용).

급격한 산업화 시기, 가난과 부모의 부재는 부모가 지원하는 결혼이라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난 결혼방식을 양산하였다. 일찍이 도시 비공식부문이나 공장에 취업하여 소득을 벌어들인 미혼여성들은 소득을 부모에게 제공한 대가로 결혼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었으며, 그마저 여의치 않은 여성들은 스스로 혼수를 마련해야 했다. 더 어려운 처지에 속한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결혼식을 뒤로 미루고 동거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최신덕, 1980; 윤흥숙, 1991). 이러한 경우에도 부모가 지원하고 친인척의 후원하에서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념은 지속되었다.

1980년대 후반 3저호황으로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생활개선이 이루어지고 도시 중산층이 성장함에 따라, 결혼 양식의 가족주의적이고 부계 중심적인 경향은 더욱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다.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학벌

이 좋은 남성의 결혼에는 막대한 규모의 혼수가 동원되었다. 이때의 혼수는 신부측이 신랑측의 부모와 친족공동체에 제공하는 일방적인 선물이었는데, 시장적 지위가 높은 신랑에 비해 경제적으로 무능한 신부가 그 격차를 보충하기 위해 선물을 제공한 것이었다고 한다(김모란, 1995).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결혼의 의례적 요소와 물질적 보상의 요구 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1990년대 이후 결혼한 남성이 부모와 동거하는 일은 더욱 줄어들었다. 1980년 25~29세 유배우자의 22.1%가 3세대 가구에 속해 있었던 데 반해, 1990년이 되면 그 비율은 14.5%로 떨어졌다(최선영, 2020). 실제로 2001년 당시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 첫 주거형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9.0%가 남자측의 부모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응답했지만, 2000년대 초가 되면 결혼한 커플의 주거는 부모의 주거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함인희, 2002).

이에 따라 결혼 첫 주택 마련이 결혼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거주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은 산업화 이후에도 부모가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남자측 부모의 책임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전체 결혼비용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산층으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낮았다. 앞서 말했듯이 결혼식을 비롯한 혼수와 예물 등에 많은 비용을 소모했고,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된 편이었기 때문이다. 회고적 자료이지만, 2001년 전국규모의 가족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세를 얻어 출발한 경우가 52.8%로 과반수가 넘고, 월세가 17.3%, 새로 집을 사서 출발한 경우는 7.8%에 불과하다. 남자의 부모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는 경우도 19.0%에 이르고 있고 여자 부모집에서 출발했다는 경우도 1.4%를 차지했다(함인희, 2002, p. 87).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칼라의 경우 자기 집 혹은 전세에서 출발했

다는 경우가 많고, 블루칼라의 경우 월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함인희, 2002, p. 88).

1990년대 초, 결혼한 지 4년 이내, 수도권 지역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1992년 현재 대졸여성은 결혼비용 중 59.8%를 부모, 18.4%를 축의금에 의존하고 있고, 대졸남성도 부모 부담 50.3%, 축의금 20.6%로 나타났다. 반면 고졸이하 부부의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의존 정도가 낮았다. 고졸 이하 여성은 부모에게 31.7%, 축의금 11.9%를 의존하고 있고, 남성은 부모 28.6%, 축의금 19.2%로 나타났다(이기춘, 조은정, 1992).

남녀 모두 부모의 도움으로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은 계층에 따라 큰 편차가 있었다. 사실,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일터로 나온 10대, 20대 미혼 남녀 노동자들에게 임금노동은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부모의 직접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희박한 여성 노동자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소득은 본인의 생활비는 물론, 가족구성원의 생계자금과 교육비 등에 소모되어 축적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최선영, 2020). 가족의 생활여건이 개선된 1980년대 이후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자신의 결혼자금 목적으로 저축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김승경, 2015).

과거에는 결혼 양식을 신혼부부의 주거지 위치를 통해 판단했었다. 그러나 세대 간 주거 분리가 일반화된 20세기 후반 이후로는 결혼 양식을 판단하기 위한 다른 지표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결혼비용, 특히 주거자금 부담형태는 세대 간 동거유형(신혼부부의 주거지 위치)과 더불어 '가족형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Hajnal, 1982; Micheli, 2012).

그러나 현대적 결혼에서 남편측 부모가 자녀의 결혼주거자금을 지원하

는 것 그 자체를 부계적 원리에 따른 가족형성을 보여주는 확고한 실례로 간주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임금노동자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까지도 자녀세대의 결혼을 부모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문화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 의존적인 결혼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1990년대 초의 대졸자들 다수는 취업 1~2년 이내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이기춘, 조은정, 1992). 충분히 노동소득을 벌어들이기 전에 결혼적령기에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주거비용을 비롯한 결혼비용은 부모와 축의금 등 부조에 의존한 것이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모나 친족의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금융적 수단에 의존하기도 어려웠다.

사적인 부모-자녀 관계망 외부에서 주거자금을 조달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금융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달리 말해, 부모에 의존하여 결혼자금을 조달했던 과거의 관행은 오랜 가족문화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지 않았던 점, 그리고 부모 이외의 자금조달 수단이 부재했던 점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근 20년은 이러한 부모 의존적 결혼주거자금 조달이 일정한 한계에 도달한 시기이다. 결혼의 지연, 결혼율의 감소, 출산율의 감소는 막대한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청년세대의 곤란과 직결된 문제로 간주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대상의 주거정책, 특히 주거자금 지원정책을 고안하게 되었다.

제2절 신혼부부 주거정책 검토와 정책 함의

이 절에서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현황을 개괄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흐름을 이해한다.⁴⁾

1.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현황⁵⁾

가. 주택 지원 정책

1) 임대주택

대표적인 주택 지원 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이다. 여기에는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5년/10년/5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등이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임대 기간 50년,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된다. 좀 더 상세하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

4) 관련 내용은 다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① 대한민국 정부. (각 연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중앙부처).
② 대한민국 정부. (각 연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중앙부처).
③ 대한민국 정부. (각 연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중앙부처).

5) 이하의 내용은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www.lh.or.kr>), 주택도시시기금(<http://nhuf.molit.go.kr>)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2020. 10. 20. 인출) 해당 홈페이지 외의 내용은 별도로 출처를 표기하였다.

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수급자를 뜻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71호, 2020. 10. 19., 일부개정)」 별표 3]. 예비 신혼부부까지 대상이 된다는 것은 신혼부부 주거 마련에 긍정적인 요소이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상의 규모나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영구임대주택 대상인 신혼부부는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이어야 해당된다. 또한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해야 1순위에 해당되며, 1순위 혹은 2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주택 건설 지역 연속 거주 기간이 길수록,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과되어 이를 토대로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71호, 2020. 10. 19., 일부개정)」 별표 3].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5년, 10년, 5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용 면적 85㎡ 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이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이다. 50년 공공임대는 현재 신규 공급이 없으며 예비 입주자로만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5년·10년 분양 전환 임대주택의 특별공급(건설량의 30%) 대상이다. 신혼부부의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 혼인 기간 7년 이내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한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1순위이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가 해당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 수,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과하고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또한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여야 하며(3인 이하는 동일 기준), 자산 기준은 2019년 기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2,799만 원 이하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전세 계약)하여 입주 대상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전용 면적 85㎡ 이하)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6세 이하 자녀) 혼인 가구로 공공임대주택 기준의 청약 자격과 동일하다.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한데, 신혼부부 전세임대 I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신혼부부 전세임대 II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다. 2가지 유형 모두 자산 기준은 2020년 기준으로 총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이며⁶⁾, 전세임대 I의 임대 보증금은 한도액⁷⁾(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8,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세 지원금의 5%, 전세임대 II는 한도액(수도권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기타 1억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세 지원금의 20%이다. 월 임대료는 2가지 유형 모두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6) 전세임대 I의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 전세임대 II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적용하는데, 2020년 기준 2가지 유형 모두 동일하다.

7) 전세 임대 I, II 모두 특정 범위 내에서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연 1~2% 이자 해당액이다. 임대 기간은 전세임대 I 은 최장 20년, II는 최장 6년(유자녀 추가 시 최대 10년)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25호, 2020. 10. 19., 일부개정)」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의 1순위는 신혼부부 입주 대상자(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제외) 중 자녀가 있는 사람(임신, 입양 포함)이며, 2순위는 신혼부부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3순위는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이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 자녀 수, 청약 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해당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과하여 합산된 점수가 높은 세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 중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용 면적 85㎡ 이하이고, 자녀 양육을 고려하여 방이 2개 이상으로 구성된다. 입주 대상은 다른 임대주택 기준과 동일하게 무주택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및 한부모가족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마찬가지로 매입임대 역시 I, II의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각각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전세임대 II와 동일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포함하여 매입임대 유형 I 은 저소득층 중심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 유형 II는 일반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입주자 선정 역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이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뜻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전세임대와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 자녀 수, 청약 규정, 지역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점수가 차등 부과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70%이며, 매입임대 I 은 20년, 매입임대 II는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 거주 기간이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이 별도로 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청년 등이다. 이때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자산은 2019년 기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9만 원 이하이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85~90% 이고, 입주자 선정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1순위, 청년이 2순위에 위치한다. 1순위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 수급자 여부, 자녀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해당 사업 대상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과 및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행복주택은 청년(19~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전용 면적 60㎡ 이하)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산단 근로자 등이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사람(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과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가리킨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은 2020년 기준 총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이다. 또한 입주 전까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71호, 2020. 10. 19., 일부개정)」 별표 5].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며 거주 기간은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이다. 현재 2022년까지 13만 6,000호가 사업 승인 예정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80% (산단형은 90%)를 공급하는 젊은 계층 대상 중심의 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전용 면적 60㎡ 이하)이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우선공급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행복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나 신청 주택이 전용 면적 50㎡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71호, 2020. 10. 19., 일부개정)」 별표 4]. 다른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순위는 혼인 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가구소득, 자녀 수,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 기간 등을 토대로 점수를 부과하여 우선권을 부여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3인 이하는 동일 기준), 자산 기준은 2020년 기준 총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이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임대 의무 기간은 30년이다.

이 외에도 20년 임대 기간, 전용 면적 85㎡ 이하, 시중 시세의 80% 수준의 장기전세주택이 있는데, 우선공급 대상인 신혼부부 입주 자격은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며, 소득은 2020년 기준 전용 면적 6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전용 면적 60㎡ 초과~85㎡ 이하는 120% 이하여야 하고, 자산 기준은 부동산 2

억 1,550만 원, 자동차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자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주체이나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으로 임대 기간은 8년, 전용 면적 85㎡ 이하, 초기 임대료는 일반공급 시세 대비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계층은 시세 대비 70~85%로 특별공급(20% 이상)을 제공한다. 의무 임대 기간은 8년이며,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되어 있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무주택자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이며(별도의 자산 기준 적용), 혼인 기간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현재 2022년까지 매년 3만 3,000호 공급을 계획, 전국 12개 지구에 7,732호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역세권·대학 인근 등 청년층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금 융자 이율 추가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한다.

〈표 2-1〉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현황: 주택 지원 - 임대주택

주택 유형	임대 기간	전용 면적	임대 조건	입주(청약) 자격
영구 임대주택	50년	40㎡ 이하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 30% 수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예비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5년 10년 (50년)	85㎡ 이하 (50㎡ 이하)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 90% 수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입주자 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매월 약정 납입일 6회 이상 납입 -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신혼부부 전세	20년/ 6년	85㎡ 이하	- 보증금: 전세 지원금의 5%/20%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 유형	임대 기간	전용 면적	임대 조건	입주(청약) 자격
임대주택 (I, II)	(10년)		- 월 임대료: 연 1~2% 이내 *전세 지원금 한도 (수도권 1억 2,000만/2억 4,000만, 광역시 9,500만/1억 6,000만, 기타 8,500만/1억 3,000만 원)	-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I, II)	20년/ 6년 (10년)	85㎡ 이하	임대료: 시세 대비 30~7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주택	10년	60㎡ 이하	임대료: 시세 대비 85~90% 이하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청년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행복주택	6년 (10년)	60㎡ 이하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 60~80% 수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대학생, 청년, 산단 근로자 등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국민임대 주택	30년	60㎡ 이하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 60~80% 수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장기전세 주택	20년	85㎡ 이하	보증금(시중시세 80% 수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8년	85㎡ 이하	임대료: 시중 시세 대비 70~85%(청년·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함.

자료: 저자 직접 작성(참고 자료는 p. 40. 각주 5) 참조).

2) 공공분양주택

주택 지원 정책에는 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주택이 있다. 이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구입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이다.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여기서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으로 건설량의 30%가 공급되는데, 청약 자격은 입주자 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하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3인 이하는 동일 기준), 자산은 2020년 기준으로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 자격 순위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한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1순위, 그 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이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 수,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과하고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71호, 2020. 10. 19., 일부개정)」 별표 6]. 그 밖에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최대 10년의 전매 제한 기간 적용, 전체 면적의 50% 이상 GB 해제 또는 30만㎡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 범위에서 거주 의무를 적용한다.

또 하나의 공공분양주택으로는 신혼희망타운이 있다.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 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 설계,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한 신혼부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 건설·공급한다.⁸⁾ 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 전량을 신혼부부,⁹⁾ 예비 신혼부부,¹⁰⁾ 6세 이하 자녀가 있

는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화 서비스는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를 비롯한 공동육아방, 실내 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강화, 수납공간 강화, 스마트홈 기술 적용 등을 가리킨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71호, 2020. 10. 19., 일부개정)」 별표 6-2에 제시된 청약 자격은 다음과 같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저축 포함)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다. 소득은 전년도 가구당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이다(3인 이하는 동일 기준).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분양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여야 한다.¹¹⁾ 자산은 2020년 기준 3억 300만 원 이하이며, 주택 가격이 총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 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2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한다. 1단계는 30% 공급으로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구소득,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 등에 따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2단

8)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였다.

9)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뜻한다.

10)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11) 2020년 9월부터 완화된 요건이다.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을 포함하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 가격이 6~9억 원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일반공급(25%)에 해당되며 6억 원 이하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국토교통부, 2020a).

계는 1단계 낙첨자와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에 따라 가점제로 공급한다. 또한 실 주거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연 1.3% 저리(고정금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를 연계할 수 있는데, 최장 30년간 주택 가격의 30~70% (4억 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 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 시점에 대출 기간 및 자녀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표 2-2〉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현황: 주택 지원 - 공공분양주택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입주(청약) 자격
공공 분양주택	85㎡ 이하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신혼희망 타운주택	60㎡ 이하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함.

자료: 저자 직접 작성(참고 자료는 p. 40. 각주 5) 참조).

나. 자금 지원 정책

1) 전월세 자금 지원

우선 전세자금 지원 정책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이 제도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정

부(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액의 90%를 지급보증해주기 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대규모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즉 이 제도는 일반적인 은행 대출에 비해 더 큰 규모의 자금을 더 짤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은 일정한 자산,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이므로, 신혼부부 특화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의 기준을 완화해줌으로써 소득이 약간 높아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대출규모를 절대 금액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최대 80%까지 대출해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 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¹²⁾이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신혼부부는 6,000만 원 이하이다. 자산 기준은 순자산 가액이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로 2020년 기준 2억 8,800만 원이다. 그 외 주택도시금융대출 등과의 중복대출 금지, 신용도 등의 요건도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으로 임차보증금은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이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 원, 수도권 외 8,000만 원이며 신혼부부는 전세 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1.8~2.4%의 변동금리로 부부 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많

1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라도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한다.

을수록, 보증금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대출 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¹³⁾하며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기준 적용시 최대 10년 이용 후 2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부부를 가리킨다. 대출 자격, 주택 전용 면적, 임차보증금, 대출 비율, 대출 기간 등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하나, 대출 한도와 대출금리가 상이하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억 6,0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다 낮은 1.2~2.1% (변동금리)이다.

이 외에 월세 관련 대출에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를 우대형으로 분류하여 저리의 월세 대출을 해 준다.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의 구분을 두지는 않지만, 일반형에 속할 수 있는데, 이때 부부 합산 연소득은 5,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2020년 기준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물론 일반형이 아닌 우대형에 속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면 우대형에 해당된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주택 전용 면적 등의 기준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하다.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960만 원(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이며, 우대형은 연 1.0%, 일반형은 연 2.0%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이용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13)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표 2-3〉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현황: 자금 지원 - 전월세

대출 유형	전용 면적	신청 자격	대출 요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85㎡ 이하 (읍/면 100㎡ 이하)	- 세대주(민법상 성년)를 포 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신혼부부 소득 기준 6천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2억 8,800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수 도권 외 2억 원 - 대출 한도: 수도권 1.2억 원, 수 도권 외 8,000만 원 - 대출 비율: 최대 80% - 대출금리: 1.8~2.4% 변동금리 -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 최대 10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85㎡ 이하 (읍/면 100㎡ 이하)	- 중복대출 금지, 신용도 고 려 등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 개월 이내 결혼 예정	- 대출 한도: 수도권 2억 원, 수 도권 외 1억 6,000만 원 - 대출금리: 1.2~2.1% - 기타 내용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
주거안정 월세 대출	85㎡ 이하 (읍/면 100㎡ 이하)	- (우대형)취업준비생, 희망기 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 기타 자격은 버팀목 전세자 금 대출과 동일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960만 원(매 월 최대 40만 원 이내)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 반형 연 2.0% -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 최대 10년)

자료: 저자 직접 작성(참고 자료는 p. 40. 각주 5) 참조).

2) 주택 구입자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크게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이 있다.¹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 대상 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 분할 불가)로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¹⁵⁾이고 세대주 포함

14) 그 밖의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상품도 있다.

15)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라도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000만 원 이하이며, 이들의 순자산가액이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2020년 기준 3억 9,100만 원)여야 한다. 그 밖에 중복 대출 금지, 신용도 등을 고려한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를 뜻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가리킨다. 대출 한도는 DTI, LTV를 고려하여 최고 2억 2,000만 원(2자녀 이상 2억 6,000만 원) 이내이며, 대출금리(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는 연 1.65~2.40%로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기간이 길수록 금리는 높아진다. 청약(종합)저축 가입 수준, 자녀 수 등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대출 기간은 10, 15, 20, 30년으로 선택 가능하다. 또한 대출을 받은 경우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있는데 자격 및 대출 요건 등은 위와 동일하나, 대출 한도는 최고 2억 원 이내(신혼가구 2억 2,000만 원, 2자녀 이상 2억 6,000만 원), 대출금리는 연 1.95~2.70%의 차이가 있으며, 신혼가구는 연 0.2%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이 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대출이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해당 주택은 LH가 공급하는 전용 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이다. 대출금

대주로 예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한다.

리는 연 1.3%의 고정금리이고, 대출 한도는 4억 원 이내(주택가액의 70% 이내)로 20년 또는 30년의 대출 기간 선택이 가능하다. 한편, 주택을 매각, 대출 만기 또는 조기 상환(전액)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 손익(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 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하는 처분 이익 공유 특성이 있으며, 여기에는 대출 기간 및 자녀 수에 따라 정산 비율이 달라진다.

〈표 2-4〉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현황: 자금 지원 - 구입

대출 유형	전용 면적	신청 자격	대출 요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85㎡ 이하 (읍/면 100㎡ 이하)	- 세대주(민법상 성년)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신혼부부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3억 9,100만 원 이하 - 중복대출 금지, 신용도 고려 등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 대출 한도: 최고 2억 2,000만 원 (2자녀 이상 2억 2,000만 원) *DTI, LTV 고려 - 대출금리: 1.65~2.40%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청약저축 가입수준, 자녀 수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대출 기간: 10, 15, 20, 30년 선택 가능 - 대출 후 1개월 내 전입, 1년 실거주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85㎡ 이하 (읍/면 100㎡ 이하)		- 대출 한도: 최고 2억 원 (신혼가구 2억 2,000만 원, 2자녀 이상 2억 6,000만 원) *DTI, LTV 고려 - 대출금리: 1.95~2.70%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신혼가구 연 0.2%p 우대금리 적용 *청약저축 가입수준, 자녀 수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기타 내용은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 대출	60㎡ 이하	- 세대주(민법상 성년)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신혼부부 소득 기준 7,000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4억 원 이내(주택가액의 70% 이내) - 대출금리: 연 1.3% 고정금리 - 대출 기간: 20년, 30년 선택

자료: 저자 직접 작성(참고 자료는 p. 40. 각주 5) 참조).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나타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변화

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기(2006~2010)

2006년 마련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자녀에게 공급량을 할당하는 정도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었다.

신혼부부를 주거정책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포함한 것은 2008년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08-99호, 2008. 7. 15. 제도 시행)을 통해서였다. 그 내용은 주택 특별공급과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에 대한 지원이었다. 이 지침은 신혼부부라는 포괄적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실제 자격은 결혼 그 자체가 아니라 출산에 의해 부여되었다. 즉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저소득층이면서, 혼인 5년 이내에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다. 공급 규모도 연간 5만 호에 불과하여 매우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특별공급 외에 기존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신혼부부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로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연간 7만 세대를 목표로 구입자금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연 5.2%, 1년 거치 19년 상환, 1억 원 한도로, 전세자금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연 4.5%, 2년 상환(최장 6년), 6,000만 원 한도로 그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역시 엄격한 소득 기준 적용을 통한 저소득층 신혼부부 중심의 접근을 취했다. 무엇보다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은 적용 제외일 가능성이 컸다.

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기(2011~2015)

2차 기본계획 시기의 신혼부부 주택정책은 1차 기본계획에 비해 주택 임차 및 구입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고, 부부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완화되었다. 특히 주택공급 정책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기(2011~2015)에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정부(2010)는 추진 계획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신혼부부에 한해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 했던 기준 폐지와 소득 요건 완화(구입: 2,000만 원 → 3,000만 원, 전세: 3,000만 원 → 4,000만 원)를 제시했다. 그 밖에 미임대 국민임대 발생 시 신혼부부 입주 우선권 부여,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 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¹⁶⁾를 추진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기존의 무주택 요건은 폐지(대출 신청 시 무주택자로 완화)되었고,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역시 모두 6,000만 원으로 완화되었다. 더불어 주택 구입의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졌으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신혼부부 포함)의 경우 유한책임 대출¹⁷⁾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가지 대출 모두 소득수준에 따라 금리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전체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기와 비교할 때 이 시기는 주로 소득 기준, 한도, 금리 등의 대출 요건들을 완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16) 이 정책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기(2016~2020)에도 지속 추진된다.

17) 보통 대출자의 연체 등의 문제로 대출금을 회수할 때, 은행은 경매를 통해 주택을 처분하고 대출금을 회수한다. 이 때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처분한 가격이 대출금보다 모자랄 경우, 기존의 무한책임 방식에서는 대출자의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유한책임 방식에서는 주택 가격만큼만 대출자가 책임을 지면 된다. 즉 대출자는 대출금 전액이 아닌 주택 가격만큼만 책임을 가진다.

무엇보다 이 시기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는 ‘행복주택’의 공급이다. 공공용지, 도시재생 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저렴(주변 시세 60~80%)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이 우선공급 대상(80%)이다. 2013년 2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동년 5월 오류동, 가좌,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 7개 시범지구 후보지를 발표하고 점차 확대하는 등 2017년까지 총 14만 호를 목표로 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하였다. 특히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신규로 건설·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기(2016~2020)

이 시기에도 정부는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신혼부부의 우선권을 유지했고,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했다. 그러나 공급규모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혼주거자금 마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정부의 주거정책이 역점을 둔 것은 대출, 즉 자금지원정책이었다.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 일정 소득 기준 이내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해주는 정책을 펼쳤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은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청년, 예비부부의 주거 문제에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혼인(결혼)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주거에 있었기 때문에 혼인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만혼 추세를 완화를 꾀했기 때문이다. 이 중 신혼부부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는 혼인(결혼) 전 공공임대주택 청약 자격 부여가 있다. 결혼예정일 3개월 전에만 해당되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했는데(입주 시점에 혼인 여부 입증), 행복주택은 2016년부터 시행되었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5년 12월),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청약 기회를 허용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년 11월).

이 시기의 신혼부부 주택 마련 자금(구입, 전세)에 대한 지원은 과거에 비해 좀 더 강화되었다. 2018년 1월에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 및 주택 구입 상품을 출시하였다. 주택 구입과 전세 모두 이전에 비해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신혼부부 우대 금리 확대 및 자녀 수에 따른 우대 금리 추가, 두 자녀 이상 대출 한도 증가 등을 추진하고 신청 시기를 결혼 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였다. 전세자금 역시 대출 한도와 대출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만기 일시 상환 방식뿐만 아니라 분할 상환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 밖의 전세 대출 임대주택 중도금 대출 허용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주택 구입의 경우 유한책임 대출의 연소득 기준을 전 소득 구간으로 완화하였고, 육아휴직자 원금 상환 유예 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 2019년에는 신혼부부의 인정 범위를 확대(5년 → 7년)하였고, 대출 절차 간소화(비대면 채널 구축), 다자녀 가구 우대 혜택(금리, 한도, 기간)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2009년부터 추진한 5년·1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과 이후 추진된 행복주택 등을 계속 공급(국민임대 30%, 5년·10년 임대 15%(민간 10%))하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2008년 시행) 입주 대상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입주 기회를 확대하였다. 2018년에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정책이 새로이 추진되었는데, 평균 소득 70%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되 평균 소득 50% 이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를 적용하였다. 더불어 2019년에는 임대주택 청약 시 혼인 기간·연령 등의 가점 항목을 삭제하는 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도 하였다.¹⁸⁾

이 외에도 그간 추진했던 행복주택은 투룸형 주택(전용 36㎡) 공급을 확대하고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자녀 양육이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 신혼희망타운은 건설·공급을 추진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단지 내 단차 제거 등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특성을 반영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2018~2022년 5년간 총 15만 호(분양 10만 호 + 임대 5만 호) 공급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특히 연 1.3%의 저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자금 지원을 하는 장기대출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제3절 신혼부부의 생애과정과 사회경제적 특징

이 절에서는 혼인 5년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생애과정 및 사회경제적 특징과 주거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해, 2010년대 중반과 후반에 이루어진 결혼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통계자료를 집계한 「신혼부부통계」(통계청, 2019), 일반가구 대상의 전국 표본조사인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등을 활용한다.

18) 이전에는 만혼 추세 완화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 연령이 낮을수록 공공임대 청약 시 가점을 부여하였다.

1. 결혼이행 과정

최근 20여 년 사이에 결혼율은 크게 감소했다. 늦게 결혼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만혼 및 비혼의 확대시기에, 결혼한 사람들은 어떤 생애과정·사회경제적·주거형태적 특성을 보여주는가. 우선 연령계층별 미혼율과 초혼연령 분포를 통해, 최근 시기 결혼의 인구학적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으로 결혼한 사람들의 생애이행과정, 즉 배우자를 언제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가구형태로 살고 있는지, 부부 사이에서 소득활동을 어떻게 배분하고 소득은 어느 정도를 벌어들이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2010년대 결혼율과 결혼연령

20세기 중반 보편혼 문화에서는 남녀 모두 일정한 나이에 결혼을 했다. 신혼부부는 결혼 초기라는 가족 생애주기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개인 생애연령도 유사한 인구학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을 이룰 수 있었다. 이와 달리 1990년대부터 초혼연령은 눈에 띄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30대 연령 집단에서도 미혼으로 남아 있는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초혼연령에서도 30대의 비중이 늘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이후 심화되었으며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이다. 20대와 30대는 물론 40대에도 미혼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표 2-5〉는 1995년과 2015년의 성별 연령계층별 미혼율을 비교한 것이다. 1995년 30~34세 여성과 남성의 미혼율이 각각 6.7%와 19.5%였던 것이, 불과 20년 후인 2015년 현재 37.5%와 55.8%로 급상승했다. 1995년 30대 후반에 미혼인 사람은 전체의 10%에 못 미쳤는데, 2015년

에는 그 수치가 여성 19.2%, 남성 33.0%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연령당 초혼율이 매우 낮은 구간으로 알려져 있는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미혼율도 크게 올라갔다. 결혼 시기가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평생 결혼하지 않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 남성과 여성의 연령계층별 미혼율 분포(1995년, 2015년)

(단위: %)

구분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1995	여성	83.3	29.6	6.7	3.3	1.9	1.0	0.6
	남성	96.3	64.4	19.5	6.6	2.7	1.3	0.7
2015	여성	96.8	77.3	37.5	19.2	11.3	6.4	3.7
	남성	98.8	90.0	55.8	33.0	22.5	13.9	7.9

자료: 통계청 KOSIS. (각 연도). 인구총조사. [웹사이트] (2020. 10. 10.) URL: <https://kosis.kr/index/index.do>

최근 5년 사이에 이루어진 결혼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혼인지속연수 5년 이내 남녀(‘신혼부부’)의 초혼연령을 나타낸 것이 〈표 2-6〉이다. 이 표에서는 초혼연도별 초혼연령의 평균값과 더불어, 연도별 초혼연령의 100분위수를 제시함으로써 결혼한 사람들의 나이가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초혼 사례에 나타난 초혼연령은 상위 10%와 하위 10%의 극단치를 제거했을 때, 남성은 27.18세에서 37.98세 사이에 분포하고, 여성은 25.01세에서 35.16세 사이에 분포한다. 이러한 초혼연령에 혼인 지속기간 1~5년차를 적용하면, 신혼부부의 연령은 2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넓게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기준 혼인 1년차 초혼 신혼부부의 연령 범위는 하위 10%에서 상위 10%가 남성 27.0세에서 38.9세이고 여성은 25.0세에서 35.9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이른 결혼에 해당되는 하위 10% 연령과 하위 25%

연령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한 반면, 중간연령, 상위 25% 연령, 상위 10% 연령은 모두 상승하였다. 가장 변동폭이 큰 분위수는 남녀 모두 상위10%(p90) 연령이었는데, 남성은 2014년에서 2018년의 5년 사이에 2.4세 상승했고(37.5세→38.9세),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1.3세 상승했다(34.6세→35.9세).

〈표 2-6〉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 분포 및 평균초혼연령(2014~2018)

(단위: 세)

초혼연도		p10	p25	p50	p75	p90	평균
남성	2014	27.27	29.41	31.72	34.25	37.45	32.08
	2015	27.19	29.44	31.85	34.50	37.67	32.21
	2016	27.18	29.48	32.00	34.83	38.04	32.41
	2017	27.17	29.41	32.00	35.06	38.30	32.50
	2018	27.01	29.32	32.01	35.28	38.88	32.62
	전체	27.18	29.42	31.89	34.70	37.98	32.33
여성	2014	25.02	27.24	29.58	32.08	34.59	29.76
	2015	25.01	27.23	29.61	32.27	34.90	29.85
	2016	24.99	27.24	29.67	32.47	35.28	29.98
	2017	25.06	27.25	29.67	32.50	35.57	30.04
	2018	24.96	27.16	29.64	32.55	35.92	30.07
	전체	25.01	27.23	29.63	32.32	35.16	29.92

주: 신혼부부 통계는 혼인신고 기준으로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함. 그러나 이 표에서 혼인 연도는 혼인신고 연도가 아닌 조사를 통해 생산된 실제 혼인 연도를 기준으로 함. 혼인신고 5년 이내 남녀 중 실제 혼인 연도가 2018년 현재 5년 이내인 경우는 전체의 91.9%로서 혼인신고 연도와 실제 혼인 연도는 크게 다르지 않음.

자료: 통계청. (2019). 신혼부부통계 원자료(RDC 접속 및 반출).

최근 20~30년간 이루어진 혼인행동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일정한 연령을 경과했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일 것이라 전제할 수 없게 되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결혼하더라도 결혼하는 시기가 매우 다양해졌다.

나. 경제적 자립과 배우자 선택의 순서

이러한 개인 혼인행동의 변화는 졸업, 취업, 주거독립 등 전통적으로 성인기 이행을 표시하는 지표에서 나타난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20대 청년기는 최종학교 졸업, 취업준비, 실업과 이직 등으로 인해 매우 복잡해졌다. 더욱이 최근 들어 성인기에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은 결혼이나 출산 같은 가족생애(또는 파트너십)와 관련된 이행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을 얻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되었다(김현주, 이선이, 이여봉, 2013).

〈표 2-7〉은 결혼상대자를 만나는 것이나 그러한 상대자와 결혼하는 것 모두 첫 취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졸업→취업→연애→결혼의 순서를 따른 사례가 남자의 78.4%, 여자의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졸업 이후 결혼상태인 현재까지 일 자리 경험이 없이 결혼한 사례도 남성 11.6%, 여성 15.5%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첫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배우자를 만난 후 첫 직장을 가진 후 결혼에 이르는 사례는 가장 비중이 낮았다. 남성의 10.1%, 여성의 9.7%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남성과 여성의 졸업-취업-연애의 순서유형 분포

구분	(단위: %)		
	남자	여자	전체
졸업→첫 직장→배우자 교제	70.3	67.0	68.6
첫 직장→졸업→배우자 교제	6.6	6.4	6.5
첫 직장→배우자 교제→졸업	1.6	1.5	1.5
(소계: 취업-연애-결혼)	(78.4)	(74.8)	(76.6)
졸업→배우자 교제(직장경험 없음)	9.6	13.6	11.6
배우자 교제→졸업(직장경험 없음)	2.0	1.9	2.0
(소계: 비취업 결혼)	(11.6)	(15.5)	(13.5)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졸업→배우자 교제→첫 직장	3.6	3.4	3.5
배우자 교제→졸업→첫 직장	5.1	4.9	5.0
배우자 교제→첫 직장→졸업	1.4	1.4	1.4
(소계: 연애-취업-결혼)	(10.1)	(9.7)	(9.9)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이러한 생애과정 순서상의 특징은 여성의 청년기 생애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1960년대 이래 여성의 생애에서 최종 학교 졸업과 결혼 사이의 기간이 연장되기 시작했다. 이 기간은 취업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는 시기이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교육기간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중등교육에서 배제된 많은 여성들은 일터로 나갔고 혼인적령기 즈음까지 취업을 통해 가족경제에 기여하고 결혼자금을 마련하였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여 중등고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던 여성들은 곧바로 결혼하거나 짧은 노동경력을 뒤로하고 결혼하였다. 때문에 전체 여성들 중 결혼 전 노동경험이 없는 사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최선영, 2020). 이와 달리, 2010년대 이루어진 결혼에서 여성의 약 75%는 일단 첫 직장에 들어간 이후,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졸업, 취업, 결혼의 순서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여성의 생애에서도 결혼 전 취업은 일반적인 일이 되었으며, 결혼상대자와의 만남도 재학 중이나 구직 기간이 아닌 구직 이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애과정 이행과 더불어 주목할 것은 결혼 전 가구형태이다. 표로 제시하지 않지만, 결혼하지 않은 19~39세 미혼인구는 대부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와 동거하는 비

율은 감소하여, 19~24세는 82.9%가 부모와 동거하지만 30~34세의 62.3%, 35~39세의 54.5%가 부모와 동거한다. 하지만, 19~39세 전체 미혼인구의 부모동거율은 82.9%로 매우 높았다(이길제, 2020, p. 21).¹⁹⁾ 이러한 미혼남녀의 부모동거형태는 부모집에서 결혼주거로 곧바로 이행하는 사례가 적어도 절반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신혼부부의 가구형태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결혼하면서 새로운 단독 주거지를 마련한다. 새로운 가구와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다. 가구형태(세대구성)는 이러한 초혼 신혼부부 가구·가족 형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혼인 1년차~5년차에 해당하는 부부는 1세대 부부가구(31.6%)를 형성하거나 자녀를 낳아 2세대 부모-미혼자녀 가구(48.6%)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부모의 집을 결혼 첫 주거지로 정하는 경우는 특히 드물었다. 일단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주거를 분리하는 것임은 매우 확고한 규범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청년세대의 경제적 능력저하 등과 같이, 부모와의 동거가 비용절약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전체의 7.1%에 불과하다.

자녀 없이 신혼부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는 1.8%이고 신혼부부가 자녀와 부모와 함께 3세대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는 그보다 비중이 높은 5.3%이다. 자녀의 존재는 부부에게 시간적, 경제적 자원의 부담을 높이므로, 부모 세대와의 동거를 통해 이러한 자원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 부모 세대와 성인 자녀 세대 사이의 각종 자원 이전은 대체로 세대 간 동거를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근접 거주 같은 대안적 방법에

19) 이길제(2020, p. 21)의 <표 7>에서 재계산한 수치이다.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⁰⁾

부부의 거처가 다른 경우, 즉 남편과 아내가 따로 주거하는 경우도 11.5%에 이른다. 부부 모두 직장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의 직장 소재지가 서로 달라 거처의 분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경우에도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주거지가 중심적 주거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생활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자녀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도 있다(통계청, 2019, p. 16).

〈표 2-8〉 초혼 5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세대 구성

(단위: 가구 수, %)

구분		가구 수	(구성비)	
부부 거처가 동일한 경우	소계	930,993	(88.5)	
	1세대 가구	332,376	(31.6)	
	2세대 가구	+부모	19,432	(1.8)
		+자녀	511,387	(48.6)
		+기타친족	11,641	(1.1)
	3세대 이상 가구	55,822	(5.3)	
	기타	335	(0.0)	
부부의 거처가 다른 경우		121,359	(11.5)	
합계		1,052,352	(100.0)	

주: 혼인신고 기준 혼인 5년차 이내 초혼 신혼부부임.

자료: 통계청. (2019).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8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9. 12. 12.). p. 16.

20) 재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거처가 동일한 경우는 80.7%, 서로 다른 경우는 19.3%였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1세대 가구를 이룬 경우가 36.0%,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35.3%를 차지했으며, 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은 6.9%로 초혼 신혼부부의 그것보다 근소하게 낮았다(통계청, 2019, p. 17.).

라. 신혼부부의 소득분포와 경제활동

신혼부부는 일반적으로 노동 이력과 저축 기간이 짧아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러나 평균적인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혼연령의 분산도 크기 때문에, 결혼 초기의 부부들 사이에서도 노동이력과 축적자산이 내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 요인과 더불어 신혼부부의 소득 분포 특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결혼의 계층화 경향이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결혼 이행률이 낮고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의 결혼 이행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소득 하위 계층의 결혼 이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은 동일 연령 집단의 소득 수준보다 높은 수준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표 2-9〉는 행정통계의 소득 자료(고용DB)를 원자료로 구축한 신혼부부통계의 일부로서, 신혼부부의 소득 분포를 혼인 연차별로 나타낸 것이다. 혼인 1년차 부부의 가구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반영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중간 소득이 5,164만 원이고 평균 가구소득은 5,639만 원이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초혼연령의 다양화 및 계층 편향적 결혼율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고, 부부 경제활동 유형의 영향도 있다. 특히 혼인 1년차 부부의 가구소득이 혼인 연차가 더 오랜 부부의 가구소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종단적으로 추적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50.8%였는데, 2년차인 2016년에는 45.3%, 2017년 43.3%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 44.9%로 근소하게 올라갔다(통계청, 2019, p. 5).²¹⁾

〈표 2-9〉 혼인 연차별 초혼 신혼부부의 부부 소득의 분포, 평균, 중간값

(단위: %, 만 원)

구분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3,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7,000만 원 미만	7,000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합계	평균 소득	중간 소득
혼인 1년차	8.5	15.5	23.7	22.6	19.1	10.7	100.0	5,639	5,164
혼인 2년차	9.6	18.2	25.0	21.6	15.6	10.0	100.0	5,353	4,815
혼인 3년차	9.1	17.3	26.3	20.9	15.7	10.7	100.0	5,555	4,778
혼인 4년차	9.7	18.4	24.9	21.3	15.6	10.0	100.0	5,398	4,790
혼인 5년차	9.5	17.2	24.5	21.2	16.2	11.5	100.0	5,577	4,912
전체	9.3	17.3	24.9	21.5	16.4	10.6	100.0	5,504	4,883

주: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집계한 것임. 초혼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신혼부부통계. [웹사이트]. (2020. 10. 30.) URL: <https://kosis.kr/index/index.do>

최근 결혼한 커플의 소득분포는 1인 소득과 2인 소득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평균 7,364만 원이고 중위소득이 6,641만 원인데 반해, 외벌이 부부의 소득은 평균 4,238만 원이고 중위소득은 3,971만 원이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외벌이 부부의 소득은 맞벌이 부부 소득의 59.8% 수준이었다. 소득분포를 보면, 연평균소득 3,000만 원 미만의 비중이 외벌이가구는 33.5%인데 반해, 맞벌이 가구는 10.4%였으며, 7,000만 원 이상의 연평균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벌이 가구가 11.7%에 불과한 데 반해, 맞벌이 가구는 45.5%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혼부부의 부부소득 분포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 즉 맞벌이/외벌이에 따라

21) 아울러 2018년 현재 혼인 1년차 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53.9%이고 2년차 49.0%, 3년차 45.9%, 4년차 44.9%, 5년차 44.7%이다(통계청, 2019, p. 22).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맞벌이와 같은 부부 경제활동 유형의 특징을 계층적 상위집단의 속성과 동일시할 수 있다.

〈표 2-10〉은 주택소유 여부별 초혼 신혼부부의 소득분포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주택미소유 부부에 비해 평균소득 및 중간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소유 부부 내에서도 소득 1,000만 원 이하가 6.7%, 1,000만 원~3,000만 원 미만이 14.7%로 나타났으며, 주택미소유 부부 내에서도 소득 1억 원 이상이 9.2%를 차지했다. 이 표를 통해 소득수준과 주택소유 여부의 관계를 확정적으로 묘사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상대적 저소득층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상대적 고소득층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된다.

〈표 2-10〉 초혼 5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및 주택소유와 소득분포

(단위: %, 만 원)

구분	1,000만 원 미만	1,000만	3,000만	5,000만	7,000만	1억 원 이상	합계	평균 소득	중간 소득
		3,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				
전체	9.3	17.3	24.9	21.5	16.4	10.6	100.0	5,504	4,883
맞벌이	1.8	8.6	19.2	24.8	25.9	19.6	100.0	7,364	6,641
외벌이	8.6	24.9	33.7	21.2	8.9	2.8	100.0	4,238	3,971
주택 소유	6.7	14.7	23.8	23.1	19.2	12.5	100.0	6,032	5,366
주택 미소유	11.3	19.4	25.7	20.2	14.3	9.2	100.0	5,092	4,530

주: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집계한 것임. 초혼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신혼부부통계. [웹사이트]. (2020. 10. 30.) URL: <https://kosis.kr/index/index.do>

2. 주택시장에서 결혼 첫 거주주택의 상대적 위치

가. 결혼 초기 주택유형

1) 초혼 신혼부부의 지역적 분포

우리나라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도시에 집중해 있다. <표 2-11>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의 27.8%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20.1%가 서울에 거주하여 47.9%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일반가구 역시 서울·경기 거주 비중이 43.3%에 달하지만, 신혼부부의 서울·경기 집중도가 그보다 높다. 그 외 신혼부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는 제조업이 집중된 인천과 울산, 행정자치도시 세종이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와 경기도 이외의 시·군은 신혼부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특성은 한편으로 신혼부부의 인구사회적 특징, 즉 30~40대 인구의 일자리가 서울·경기와 특정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사정을 반영한다.²²⁾ 그러나 일자리가 밀집한 지역은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저렴한 도시 외곽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이상림, 이지혜, 2017). 즉 초혼 신혼부부의 지리적 분포는 한편으로 도시 집중을 유발하는 요인과 도시 집중을 억제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22) 2019 인구총조사(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25~39세 남성의 47.3%와 여성의 48.8%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통계청, 2019 인구총조사).

〈표 2-11〉 초혼 신혼부부와 일반가구의 지역 분포 비교

(단위: %, %p)

구분	일반가구	초혼 신혼부부	비중 차이
서울특별시	19.2	20.1	-0.9
부산광역시	6.8	5.9	0.8
대구광역시	4.8	4.4	0.3
인천광역시	5.5	5.9	-0.4
광주광역시	2.9	2.7	0.2
대전광역시	3.0	2.9	0.1
울산광역시	2.1	2.5	-0.3
세종특별자치시	0.6	1.0	-0.4
경기도	24.1	27.8	-3.6
강원도	3.1	2.5	0.6
충청북도	3.2	2.8	0.4
충청남도	4.2	4.1	0.2
전라북도	3.6	2.7	0.9
전라남도	3.6	2.8	0.9
경상북도	5.4	4.4	1.0
경상남도	6.5	6.2	0.3
제주특별자치도	1.2	1.3	0.0
(서울/경기)	(43.3)	(47.9)	(-4.6)
(서울/경기/광역시자치시)	(69.0)	(73.2)	(-4.2)
(경기 제외 시도)	(31.0)	(26.8)	(4.2)
전체	100.0	100.0	-

자료: 일반가구의 지역분포는 2019 인구주택총조사(KOSIS)에서 가져왔고, 초혼 신혼부부의 지역 분포는 통계청(2019)에서 가져왔음.

2) 결혼 첫 주택의 주택유형

결혼 첫 주택의 주택유형은 모든 지역에서 일반가구의 주택유형 분포와 차이를 보인다. 일반가구에 비해 신혼부부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다. 〈표 2-12〉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1%이고, 일반단독주택은 12.5%이다. 반면 초혼 신혼부부가 사는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69.4%

이고 일반단독주택은 1.2%에 불과하다.

초혼 신혼부부는 주로 아파트에 거주한다. 공동주택유형 중에서 아파트는 가장 선호되는 주택유형으로 알려져 있고, 지역에 따라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가격이 가장 비싼 편이다. 신혼부부의 첫 주거지인 아파트 비중은 경기도가 74.5%, 광역, 자치시가 72.0%, 그 외 시·군은 81.3%이다. 반면 서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반가구에 비해 신혼부부 가구의 아파트 비중이 낮아서 결혼 첫 주택유형 중 39.2%에 불과하다. 서울의 결혼 첫 주택은 일반단독주택 비중과 아파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다세대주택(30.9%), 다가구/연립(25.1%)의 비중이 높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비거주용 주거는 전국적으로 신혼부부의 첫 주거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표 2-12〉 일반가구 주택과 결혼 첫 주택의 유형 분포 비교

(단위: %)

구분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고시원	일반단독 주택	비거주용 /기타	합계
〈일반가구〉								
서울	42.2	18.4	28.5	4.3	2.2	2.2	2.3	100.0
경기	56.9	11.6	18.8	2.6	2.1	6.3	1.7	100.0
광역·자치시	57.0	8.8	23.2	2.4	1.3	5.7	1.7	100.0
그 외 시·군	44.2	2.7	18.7	0.8	0.5	29.2	3.9	100.0
전국	50.1	9.4	21.8	2.3	1.4	12.5	2.5	100.0
〈결혼 첫 주택〉								
서울	39.2	30.9	25.1	3.0	0.0	0.0	1.8	100.0
경기	74.5	4.2	18.2	2.6	0.5	0.0	0.0	100.0
광역·자치시	72.0	7.2	15.0	3.3	0.5	2.0	0.0	100.0
그 외 시·군	81.3	2.6	10.5	3.3	0.0	2.2	0.0	100.0
전국	69.4	9.4	16.4	3.0	0.3	1.2	0.3	100.0

주: '결혼 첫 주택'은 결혼 연도가 2018년과 2019년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다가구/연립주택'은 다가구 단독주택 및 영업용 단독주택과 연립주택(4층 이하 공동주택)을 합한 것임. 주택유형 분류 기준은 국토교통부(2019), 2019년 주거실태조사 조사지침서. pp. 20-26 참조.

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19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나. 결혼 첫 주택의 점유형태

신혼부부는 일반가구에 비해 자가점유율이 낮고 임차가구 비중이 높다.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은 58.0%인 반면(국토교통부, 2020b), 최근 결혼한 부부(2018년과 2019년 초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30.2%로서 일반가구에 비해 자가점유율이 약 28%p가 낮다.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는 자가점유율이 아닌 주택소유율 통계를 제시하는데, 2019년 현재 가구주연령별 주택소유율은 30세 미만인 10.6%, 30대가 41.3%이다. 30대와 40대에 생애 최초 주택구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40대의 주택소유율은 59.1%로 급등하고 이후 50대 63.4%, 60대 68.2%, 70대 70.0%로 완만하게 증가한다(통계청, 2020, p. 22). 이처럼 신혼부부의 낮은 자가점유율이나 주택소유율은 부부의 생애과정(연령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략적으로 신혼부부 10가구 중 3가구가 자가를 소유한다면, 나머지 7가구는 임차로 주택을 마련한다. 연령이 어리고 노동이력이 짧은 신혼부부가 주택을 소유하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2-13>을 보면, 자가점유의 비중이 낮은 만큼 월세(보증부 및 비보증부)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결혼 첫 주택에서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중은 20.4%로서 일반가구의 그것(19.7%)보다 근소하게 높을 뿐이었다. 결혼 첫 주택으로 월세 점유는 흔치 않았으며 대부분이 전세임대였고, 그다음이 자가였다.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비중은 높지 않아, 임차 가구의 경우에도 결혼 시점에 동원하는 주거자금의 규모가 크다.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의 분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의 자가점유율이 12.5%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도가 28.1%,

광역시치시가 31.6%, 그 외 시·군이 41.8%였다. 그러나 월세 비중의 지역별 격차가 크지는 않다. 서울과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전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표 2-13〉 일반가구와 1~2년차 신혼부부의 주거점유형태 비교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합계	자가+전세
〈일반가구〉							
서울	42.7	26.0	24.8	3.3	3.2	100.0	68.7
경기	53.5	19.2	20.6	2.6	4.1	100.0	72.7
광역시·자치시	60.4	12.5	20.8	3.1	3.2	100.0	72.9
그 외 시·군	68.8	7.5	15.0	4.0	4.8	100.0	76.3
전국	58.0	15.1	19.7	3.3	3.9	100.0	73.1
〈결혼 첫 주택〉							
서울	12.5	63.8	19.7	0.0	4.0	100.0	76.4
경기	28.1	40.3	22.1	1.5	8.0	100.0	68.4
광역시·자치시	31.6	43.8	19.0	0.5	5.1	100.0	75.4
그 외 시·군	41.8	32.2	20.4	0.7	4.9	100.0	74.0
전국	30.2	43.2	20.4	0.7	5.6	100.0	73.4

주: '결혼 첫 주택'은 결혼 연도가 2018년과 2019년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19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표 2-14〉는 혼인 연차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 비중은 감소하고 자가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 초기는 점유형태가 활발하게 변화하는 시기이며, 월세의 비중도 근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비중이 더 클 것이라고 짐작된다. 참고로 통계청의 신혼부부 통계에서는 2015년 혼인 1차연도였던 가구의 주택 소유 실태의 종단적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에 따르면 1차연도 34.1%가 2차연도에는 39.2%, 3차연도에는 44.4%, 4차연도에는 48.9%로 늘어난다(통계청, 2019, p.

36). 이러한 종단적 추적 결과를 참조하여, <표 2-14>의 혼인 연차별 주택 점유형태를 해석하면, 결혼 1~2년차에는 일반가구에 비해 자가점유율이 낮았지만, 이후 연차가 늘어날수록 자가소유가 늘어나서 6년차 이후에는 일반가구 평균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주택을 소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14> 혼인 연차별 현재 주거점유형태

(단위: %)

혼인연차 (결혼 연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	합계
1년차(2019)	30.2	44.9	20.0	0.1	4.7	100.0
2년차(2018)	30.2	42.2	20.5	1.0	6.1	100.0
3년차(2017)	41.7	39.3	15.8	0.7	2.6	100.0
4년차(2016)	46.6	32.8	14.5	0.6	5.5	100.0
5년차(2015)	50.8	29.9	15.7	0.1	3.6	100.0
6년차(2014)	60.1	26.2	11.0	0.3	2.5	100.0
7년차(2013)	59.8	24.3	12.3	0.2	3.4	100.0
전체	47.0	33.3	15.3	0.5	4.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19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지금까지 신혼부부의 주거유형을 일반가구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년집단 내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특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특히 임차가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30대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의 상대적 비중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표 2-15>에 따르면, 19~39세의 청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유형은 자가 57.2%, 전세 17.9%, 보증부 월세 19.9%, 순월세 1.7%, 무상 3.3%이다. 세부 가구 형태를 보면 1인가구, 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등에 따라 주택 점유형태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층의 경우 부모의 자가점유율은 70.3%로 나타

났다. 이와 달리 일단 부모집을 떠난 상태(청년이 가구주인 경우)에서는 대체로 자가점유율이 낮고 임차비율이 높다. 그 양상은 청년의 결혼 여부나 부모됨의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부모집에서 부모와 동거하던 상태의 자가점유율보다는 낮지만 청년 1인가구의 자가점유율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청년 부부가구’)는 자가점유율이 33.6%이지만, 청년 1인가구는 6.7%로서 26.9%p 낮다. 자녀가 있는 청년부부의 자가점유율은 50.6%이다.

뿐만 아니라 <표 2-15>는 부모의 주택에서 가구원 상태로 있는 경우와 부모로부터 주거를 분리하고 혼자 생활하는 경우 주거 점유형태가 크게 다르다는 것도 보여준다. 청년 1인가구는 자가나 전세에 비해 보증부 월세와 순월세의 비중이 높아서 매월 소득의 상당부분을 주거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청년 1인가구와 청년 부부가구의 차이는 자산에 있다. 자가와 전세 비중이 높은 것은 청년 부부가구가 1인가구와 달리 높은 수준의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는 데 기인한다.

<표 2-15> 청년(19~39세)의 가구유형별 주택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순월세	무상	계
전체 청년가구원		57.2	17.9	19.9	1.7	3.3	100.0
청년 가구 유형	청년 1인가구	6.7	21.6	58.3	8.6	4.8	100.0
	청년 부부가구	33.6	35.3	24.6	0.8	5.7	100.0
	청년부부+자녀가구	50.6	27.7	15.5	0.9	5.3	100.0
	부모+청년가구원	70.3	12.7	14.3	0.9	1.8	100.0
	기타 청년가구원	55.3	17.0	21.3	1.9	4.5	100.0

주: 2016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자료: 임덕영, 이경애, 진미윤, 이의중. (2017). 청년 주거 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p. 71.

〈표 2-16〉은 일반가구에 비해 30대이거나 최근 결혼한 경우 임대유형 중 공공임대의 비중이 낮은 것을 보여준다. 미혼이거나 결혼연차가 짧은 가구주의 가구는 상대적으로 자가비율이 낮고 임차비율이 높다. 일반가구 수준에서,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분양전환공공)의 비율은 86.6%대 13.0%이었는데, 2018~19년 결혼한 가구의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분양전환공공임대포함)의 비율은 92.9% 대 5.3%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정책에서 공공주택의 공급은 실제 신혼부부의 주거실태에 매우 미미하게 반영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동일한 30대 연령집단 내에서 기혼가구와 미혼가구를 비교하면, 미혼가구가 더욱 임차와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임대시장이 민간임대 중심이며, 30대 젊은 연령층이거나 최근 결혼한 경우 민간임대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16〉 가구주의 연령·혼인상태·결혼시점에 따른 주택점유현황: 공공임대 비중

(단위: %, 가구수)

구분	일반가구	30대 가구주	30대 기혼	30대 미혼	2018-19년 결혼 가구	2018-19년 결혼 30대
자가+무상 임차	61.9 38.1	46.9 53.1	57.7 42.3	24.5 75.5	35.8 64.2	36.4 63.6
민간임대주택	86.5	90.2	88.0	92.8	92.9	92.6
공공임대주택	11.7	7.0	7.5	6.3	4.6	5.5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1.3	1.6	2.5	0.6	0.7	1.0
기타임대주택	0.5	1.3	2.1	0.3	1.8	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수	21,144	3,994	2,441	1,553	625	41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수	61,170	7,088	5,126	1,962	881	596

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19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제3장

결혼주거자금 조달 실태와 유형

제1절 결혼주거자금 조달 실태

제2절 결혼주거자금 조달방식의 유형화

제 3 장 결혼주거자금 조달 실태와 유형

제1절 결혼주거자금 조달 실태

이 장에서는 「결혼동향조사」에 기초하여 최근 결혼한 신혼가구의 결혼 주거자금 조달 실태와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다루는 결혼주거자금은 결혼 첫 거주주택의 자산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새롭게 동원된 자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혼주거자금의 조달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신혼가구는 첫째, 거주주택자산을 소유한 가구여야 하며, 둘째, 그러한 자산을 결혼시점에서 새로 마련한 가구여야 한다. 따라서 결혼 첫 거주주택을 보증금 없이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받고 있는 경우는 거주주택자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으며, 거주주택자산이 있으나 결혼 전부터 소유·임차하고 있던 주택을 결혼 첫 거주주택으로 하여 새롭게 주거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는 사례도 제외하였다.²³⁾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이하의 논의를 전개한다. 이하에서 화폐로 표시된 모든 자료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 2015년 가격으로 환산하여 제시한다.

1. 결혼주거자금의 규모

「결혼동향조사」의 조사대상(2012년 8월 이후 2019년 7월 사이 결혼)

23) 「결혼동향조사」의 전체 사례수는 총 1,779가구(남성 1,779명, 여성 1,779명)이다. 주택 점유형태에 따라 거주주택자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뉜다. 거주주택자산이 있는 경우는 자가 554가구, 전세 893가구, 보증부 월세 180가구이며, 거주주택자산이 없는 가구는 무상 137가구, 보증금 없는 월세 3가구, 기타(년세, 사글세, 일세, 기숙사 등) 등이 다. 본문에서 제시한 수치는 거주주택자산이 없는 가구를 제외한 것이며, 1,627가구이다.

기준으로, 부부의 결혼 첫 거주주택자산의 가치는 1억 9,486만 원(2015년 가격으로 환산함)으로 집계되었다. 점유형태에 따라 자산 규모는 차이가 있는데, 자가는 2억 6,244만 원, 전세보증금은 1억 8,048만 원, 월세보증금은 5,239만 원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한 것이 <표 3-1>이다. 서울의 주거자산가치가 가장 컸고, 강원은 가장 작았다. 특히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보다 구매가격의 지역별 차이가 컸다. 서울의 평균 구매가격은 5억 9,347만 원이지만, 가장 낮은 강원은 1억 4,383만 원이었다. 임차비용(보증금)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주택구매가격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다.

<표 3-1> 지역별 결혼 첫 거주주택 자산가격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서울	28,347	59,347	23,551	7,502
부산	21,015	26,432	19,189	7,137
대구	18,720	25,328	12,631	3,866
인천	15,637	21,972	12,542	9,304
광주	12,476	19,153	10,433	1,714
대전	17,922	21,888	17,045	2,631
울산	13,420	17,608	11,583	7,429
세종	14,574	33,626	13,768	4,214
경기	20,234	28,108	19,062	7,846
강원	9,425	14,383	8,635	2,776
충북	12,197	15,595	10,267	754
충남	13,841	19,884	12,005	2,261
전북	11,326	16,176	8,113	3,058
전남	10,942	16,856	6,750	4,604
경북	11,317	17,062	7,709	2,050
경남	14,099	18,025	10,458	2,439
제주	12,856	19,717	9,788	1,051
전국	19,486	26,244	18,048	5,239

주: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결혼동향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의 87.4%는 결혼하면서 새로 집을 마련한다. 그 외 8.9%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부터 혼자 살던 집을 신혼 거처로 사용하며, 나머지 3.7%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가족 또는 친척이 거주하던 집을 신혼 거처로 사용한다(조성호 외, 2019, p. 243).²⁴⁾ 기존의 거처를 신혼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43.2%가 자가였고, 38.0%는 전세, 18.0%는 보증부 월세, 0.8%는 순월세였다.

「결혼동향조사」의 결혼주거자금 원천에 관한 조사는 결혼시점에 새로 주택을 마련한 사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원자료와 마찬가지로 새로 주택을 마련한 사례에 한정하여 주거자금 조달방식을 파악하도록 한다.²⁵⁾

[그림 3-1]은 결혼하면서 새로 주택을 마련한 사례에 한정하여 주택비용을 집계한 것이다.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사는 경기도, 그리고 부산과 세종 등 광역시와 자치시, 경기도를 제외한 시·군으로 범주화했다. 전국 평균금액으로, 자가구매가는 2억 1,418만 원이고, 전세금은 1억 5,106만 원이며, 월세보증금은 4,080만 원이다. 서울의 자가구매가는 4억 7,332만 원, 경기도는 2억 7,896만 원, 광역/자치시는 2억 1,148만 원, 기타 시·군은 1억 6,276만 원이다. 결혼 첫 주택의 가장 일반적인 점유형태는 전세이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서울 1억 9,808만 원, 경기 1억 7,827만 원, 광역/자치시 1억 3,866만 원, 기타 시·군은 8,265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증부 월세는 평균금액 기준으로 모든 지역에서 5천만 원 이하였다.

결혼 첫 주택의 점유유형이 자가와 전세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감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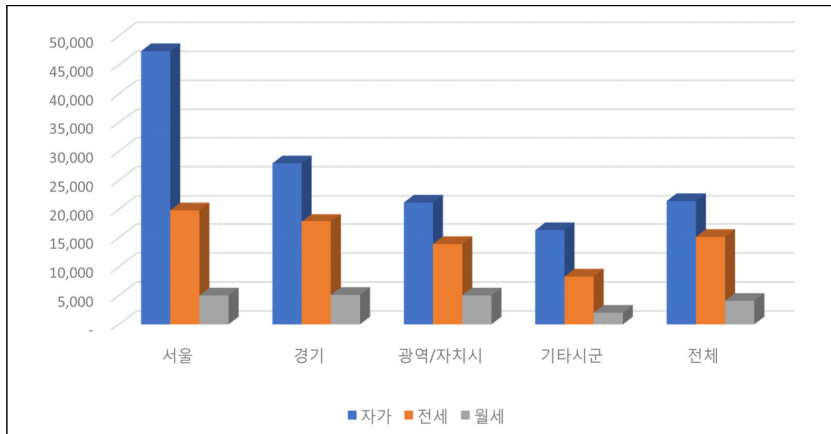
24) 본문의 수치는 신혼부부 전체에 대한 것이며, 거주주택자산을 소유한 신혼부부 1,627쌍에 대한 수치로 바꾸면, 결혼하면서 새로 집을 마련한 사례는 1,421쌍이고, 87.3%에 해당된다(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9).

25) 기존주택을 결혼 첫 거주주택로 사용하는 경우는 새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비해, 자가점유율이 높았고, 주거자산가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9).

여 전국 평균 자가+전세의 금액을 따로 계산해보면, 평균 2억 538만 원, 중간값 1억 7,233만 원이 결혼 첫 주거자금으로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월세를 선택하지 않는 한 결혼할 때 평균 2억 원의 주거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라면 그 금액이 더욱 커지고 경기도 이외의 시·군 지역이라면 이보다 적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3-1] 점유형태 및 지역별 결혼 첫 거주주택비용

(단위: 만 원)



주: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2. 결혼주거자금의 조달방식

가. 자금원천의 종류와 규모: 자기자금, 부모 지원, 대출

그렇다면 최근 결혼한 커플은 주거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가. 다음의 <표 3-2>는 거주주택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를 자금원천별 평균

금액과 총액대비 비중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장 주목해서 볼 것은 결혼당 사자의 자기자금 규모이다. 자기자금은 평균 6,700여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금액은 결혼당사자 두 사람이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모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²⁶⁾ 그러나 그 규모는 평균 결혼주거자금 1억 9,292만 원에 대해 34.8%에 불과하다.

〈표 3-2〉 결혼주거자금 원천별 금액

구분	평균금액(만 원)	비중(%)
자기자금	6,716	34.8
부모 지원	7,616	39.5
부채	4,960	25.7
전체 거주주택자금	19,292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따라서 거주주택자금의 나머지 65.2%는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노동이력이 짧고 저축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3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보면, 신혼부부의 현재 구매능력과 주택 소비지출 필요액 사이의 격차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다면, 신혼부부는 어떤 수단을 통해 구매력과 가격의 격차를 메우는가. 이 방식은 점유형태와 자금조달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30대 미혼가구는 다른 연령대의 가구주에 비해 월세 비율이 높았다. 구매력의 부족을 점유형태 조정을 통해 메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결혼 첫 거주주택의 점유형태를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결혼 첫 해의 가구가 자가점유 비율은 낮았지만, 월세 비율이 높지는 않았다.

26) 한 사람의 임금소득자가 월 5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6,700만 원을 모으는 데 약 11년이 소요된다. 두 사람의 저축을 합한다고 가정하면 한 사람당 5.5년의 저축 기간이 필요한 수치이다. 임금의 규모에 따라 저축액과 저축 기간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소득과 자기자금의 관계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결혼에 진입한 두 남녀는 부족한 자산 수준에 맞추어 점유형태 등 주택소비수준을 하향조정하기보다는, 외부 자금을 동원하여 구매력을 보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신혼부부는 자기자금 이외의 주거자금을 대출과 부모 지원을 통해 얻는다. 이자와 원금의 상환 의무가 있는 금융부채와, 금융적 상환 의무가 없는 부모의 증여는 경제적으로 상반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은행을 통한 대출이 신용도와 상환능력, 그리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해 접근성이 정해지는 반면, 후자는 오직 사적인 부모-자녀관계에 의해 접근성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치적 성격도 다르다. 지난 10년 사이에 신설된 신혼부부 우대 주거정책은 대출규모를 늘리고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정책이었다. 즉 낮은 구매능력과 높은 주택 비용 사이의 격차를 은행대출을 통해 보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3-2>에 따르면, 신혼부부 결혼주거자금 총액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조달원천은 대출이 아니라 부모 지원이라는 가족적 수단이었다. 전체 거주주택자금 중 대출금은 4,960만 원으로 25.7%를 차지한 반면, 부모 지원 금액은 평균 7,616만 원으로 대출금보다 13.8%p가 높은 39.5%를 차지했다. 나아가 이러한 부모 지원 금액은 자기자금 평균 6,716만 원보다 900만 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결혼 첫 거주주택자금은 자기자금이나 대출보다는 부모 지원금액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결혼주거자금에서 부모 지원 금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결혼 이행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기초가 여전히 가족적인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자금조달원천의 총액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가령 인구의 소수 집단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동원하여 평균 값을 높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혼부부

들 사이에서, 그리고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부모로부터의 자금 지원 경험이 얼마나 일반적인가를 검토해야 하고, 부모 지원 금액은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자금원천의 구성방식

1) 점유형태별 주거자금원천의 일반성

우선 전체 주거자금에서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의 분포를 살펴보자. <표 3-3>은 전체주거자금 중 부부의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전혀 없음, 50% 미만, 50% 이상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결혼당사자가 자기자금이 전혀 없이 주거자금을 조달한 가구는 자가의 16.9%, 전세의 16.2%, 보증부 월세의 16.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자기자금을 투입했지만 전체 주거자금 중 50%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자가 54.3%, 전세 47.4%, 보증부 월세 18.1%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자금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앞서 평균금액 기준으로 조달원천의 규모를 살펴본 바와 같이(총액 대비 자기자금의 비중이 약 35%를 차지함), 자기자금 기여율의 분포도 전체 주거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중이 낮다는 유사한 사실을 알려준다. 자기자금 기여율이 50%가 넘는 사례는 자가의 경우 28.8%, 전세의 경우 36.4%로 나타났다. 보증부 월세는 자가 및 전세와 달리, 자기자금 기여율이 50%를 넘는 경우가 전체 월세 가구의 65.5%를 차지했다.

〈표 3-3〉 전체 주거자금 중 부부 자기자금 비중의 분포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없음	16.9	16.2	16.4
있음			
50% 미만	54.3	47.4	18.1
50% 이상	28.8	36.4	65.5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부모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의 분포를 살펴보자. 앞서 평균 금액 기준으로 부모 지원 금액은 전체 주거자금 중 가장 많은 비중(약 40%)을 차지하는 조달원천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표 3-4〉는 신혼부부 가구들 사이에서 이러한 부모 지원이 얼마나 일반적인가를 보여준다. 대략 30% 이상의 신혼부부가 부모 지원 없이 주거자금을 조달한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자가의 32.6%, 전세의 32.4%, 보증부 월세의 72.4%가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반면, 필요한 자금의 전액을 부모가 지원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는데, 자가의 10.4%, 전세의 10.3%, 보증부 월세의 9.8%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듯, 주거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서, 부모 지원 여부와 정도는 부부(가구)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7년간 결혼한 부부 10쌍 중 3쌍은 부모 지원이 없었다고 보고했으며, 부모가 전적으로 주거자금을 지원한 가구는 10쌍 중 1쌍을 차지했다.

나머지 10쌍 중 6쌍은 일정한 규모와 비중으로 부모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여율 50%를 기준으로 50% 미만과 50%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비중을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보다 50% 미만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자가의 경우 39.4%, 전세의 경우 34.1%, 보증부 월세의 9.7%가 부모 지원이 있었지만 50%를 넘지 않았다. 반면 자가가구의 17.6%, 전세가구의 23.2%, 보

증부 월세가구의 8.1%는 부모가 주거자금 전액을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50% 이상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정하면, 부모 지원금은 평균 1억 1,845만 원으로 계산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이는 결혼당사자 부부의 기여금액 평균 8,037만 원(0원 제외 계산)의 약 15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할 경우, 동원하는 자금의 규모는 1억 원을 초과하고 결혼당사자의 기여를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부모 지원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험이며, 부모 지원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부모 지원 금액의 편차가 내적으로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표 3-4〉 전체 주거자금 중 부모 지원금 비중의 분포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0%	32.6	32.4	72.4
50% 미만	39.4	34.1	9.7
50% 이상 100% 미만	17.6	23.2	8.1
100%	10.4	10.3	9.8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신혼부부가 의존하는 또 다른 외부적 원천은 대출이다. 〈표 3-5〉는 주거자금 중 대출비중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가의 경우, 대출금이 전혀 없는 경우는 26.2%로 부모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3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부모 지원보다는 대출이 더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세의 경우에는 부모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가 32.4%였던 데 반해, 대출금이 전혀 없는 경우는 41.3%로

더 많았다. 즉 전세로 임차할 때에는 대출보다 부모 지원이 더 일반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보증부 월세 임차가구의 다수는 자기자금을 중심으로 보증금을 마련하며, 부모 지원과 대출의 자금규모와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또한 자가와 전세가 부모 지원과 대출의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자가와 전세의 주거자금규모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 평균 자가의 주거자금은 2억 1,418만 원이고, 전세금은 1억 5,106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주거자금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 정도를 지원할 것인가는 결국 예산 제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가와 임차(전세)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구매자 선택의 문제라면, 더 많은 자금이 동원되어야 하는 자가구매는 추가적인 부모 지원보다는 추가적인 대출가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표 3-5〉 전체 주거자금 중 대출금 비중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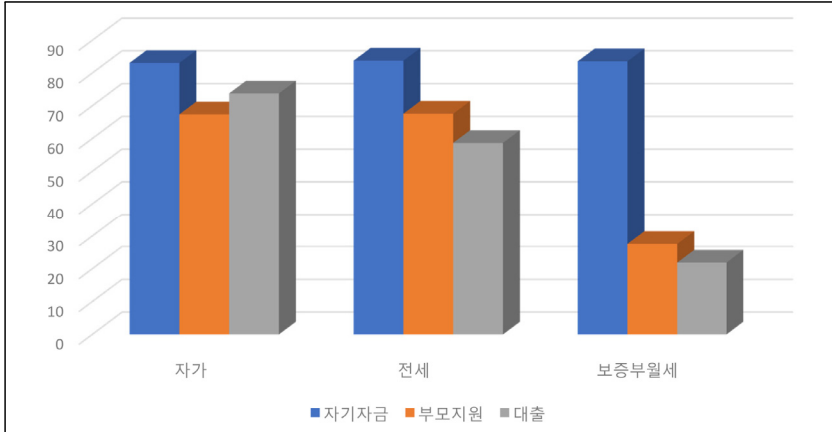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0%	26.2	41.3	78.1
50% 미만	49.4	40.4	11.9
50% 이상	24.4	18.3	10.0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그림 3-2]는 이상의 논의를 각 자금원천의 활용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요약한 것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거자금원천은 당연히 당사자의 저축이다. 그다음으로 일반적인 수단은 점유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가는 부모 지원보다는 대출이, 전세와 보증부 월세는 대출보다는 부모 지원이 더 일반적으로 동원되는 주거자금 원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점유형태별 주거자금원천의 동원 여부

(단위: %)



주: 기여 여부는 <표 3-3>, <표 3-4>, <표 3-5>에서 각 원천의 기여율 0% 이외의 수치를 가져온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2) 거주주택 자산가격과 주거자금의 외부조달

이하에서는 부모 지원과 대출의 외부자원 조달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거주주택 자산가격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 3-6>은 거주주택 자산가격에 따라 부모 지원 여부와 비중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거주주택 자산가격이 높을수록 부모 지원을 받는 경향이 커졌다. 1억 원 미만 주택자산에서 부모 지원이 있는 경우는 38.6% 였지만, 가장 상위구간인 3억 원 이상에서는 약 90%가 부모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표 3-6〉 거주주택 자산가격 구간별 부모 지원 기여율 분포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2억 원 미만	2억~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전체
부모 지원 없음	61.4	38.7	18.8	10.7	35.8
50% 미만	12.0	31.1	53.4	44.9	33.6
50% 이상~100% 미만	14.7	19.9	21.2	30.7	20.4
100%	11.9	10.3	6.6	13.7	1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	(408)	(605)	(269)	(139)	(1,4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다음 〈표 3-7〉은 거주주택자 산가격에 따른 대출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주택자산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대출 동원율도 높아졌다. 1억 원 이하는 대출이 있는 경우가 35.6%였지만, 1억~2억 원 미만은 63.3%가 대출을 동원했고, 2억~3억 원 미만은 75.1%가 대출을 동원하여 거주주택을 마련했다. 그러나 3억 원 이상은 69.4%만이 대출금이 있어서, 2억~3억 원 미만에 비해 대출이용률이 낮았다.

우리의 사례에서 주택자산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는 139쌍으로서 전체 부부의 9.8%를 차지했다. 즉 주택자산가격 상위 10%는 대출보다 부모 지원을 통해 거주주택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나머지 90%에서는 자산가격이 늘어날수록 부모 지원과 대출 동원이 함께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부모 지원 금액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동원됨에 따라, 주택가격과 본인 및 부모 자금을 합한 일종의 가족동원자금 간의 차액을 대출을 통해 보충하는 양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자산 가격 1억 원 미만을 차지하는 신혼부부는 부모의 자금을 동원하는 정도도 낮았지만 대출을 동원하는 정도도 낮게 나타났다.

편의상 1억 원 미만을 자산하위층,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을 자산중

간층, 3억 원 이상을 자산상위층으로 이해한다면, 가장 많은 수가 분포한 자산중간층의 경우, 자기자금과 부모의 지원, 그리고 대출 등 모든 자원이 동원된다. 반면 자산하위층은 당사자의 자금이 주요한 자금원천이고, 부모 지원이나 대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자산상위층은 고가의 자산을 마련함에 있어 부모의 지원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대출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거주주택 자산가격 구간별 대출 기여율 분포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2억 원 미만	2억~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전체
대출없음	64.4	36.7	24.9	30.6	39.7
50% 미만	16.7	41.6	55.7	55.6	40.8
50% 이상	16.5	20.9	19.4	13.9	18.6
50% 이상~100% 미만	2.4	0.8	0.0	0.0	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	(408)	(605)	(269)	(139)	(1,4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부모 지원금이 없는 경우 거주주택자산의 규모가 가장 작았고, 나머지면주는 큰 차이가 없었다. 평균 2억 2,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이었다. 부모 지원이 없는 경우 자기자금은 7,745만 원과 대출금 5,107만 원으로 주거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50% 미만을 지원하는 경우의 부모 지원금은 평균 6,634만 원이다. 자기자금과 대출금은 평균 금액으로 부모 지원금 평균액을 모두 초과하며, 자기자금은 약 9,000만 원, 대출금은 7,669만 원이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부모의 평균 지원금액은 약 1억 4,707만 원이었으며, 부모의 지원비중과 규모가 큰 만큼 자기자금은 평균 4,671만 원,

대출금은 평균 2,745만 원에 불과했다.

부모의 지원 비중이 높을수록 순자산가치도 높게 나타났다. 부모 지원 금액이 50% 미만인 경우는 가장 많은 자기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만큼 대출금도 많아서 순자산가치는 떨어졌다. 반면 부모가 50% 이상을 지원한 경우 자기자금은 가장 적게 투여되었지만 순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부모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부모 지원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비해 높은 순자산가치를 갖게 된 것이다. 부모의 지원 비중에 따른 순자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F=45.83^{***}$).

〈표 3-8〉 부모 지원 기여율과 거주주택의 순자산 가치(평균)

구분	자기자금	부모 지원금	대출금	전체 금액	순자산
부모 지원 없음	7,745	-	5,107	12,852	7,745
50% 미만	8,920	6,634	7,669	23,223	15,554
50% 이상~ 100% 미만	4,671	14,707	2,745	22,123	19,378
100%	-	23,238	-	23,238	23,238
전체	6,716	7,616	4,960	19,292	14,33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다. 남편(측)과 부인(측)의 주거자금 기여 비교

결혼주거자금은 혼인 지속기간 동안 부부 사이에서 공유되는 자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공유자산에 대해 개별 주체들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기여를 한 측과 더 적은 기여를 한 측은 그러한 사실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의미 틀 내에서 상대적인 기여 몫을 해석하고 자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단위가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 주거자금 조달에 기여한 몫이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부모 지원의 일반성 여부

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아래 <표 3-9>는 바로 그러한 관심에서 자기자금, 부채, 부모 지원의 세 가지 자금원천을 남편과 부인이 각각 어느 정도의 규모와 비중으로 동원하는가를 집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 결혼주거자금에서 남편(측)이 자기자금, 대출, 부모 지원 등의 원천으로 조달한 금액이 전체의 7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인(측)은 부인 본인의 자기자금과 대출, 그리고 부모의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전체의 20.3%를 기여하는 데 그쳤다.

자금원천별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남성(측)의 기여가 여성(측)의 기여를 압도했다. 특히 자기자금 항목보다는 부모 지원 항목에서 남편측과 부인측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남편측의 경우 자기자금보다 부모 지원 금액이 더 컸으며, 부인측의 경우는 부인의 자기자금이 부모 지원 금액보다 컸다.

이러한 사실은 전체 결혼주거자금 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금원천인 부모 지원이 부인측 또는 양측 공동의 기여가 아니라 가히 일방적인 남편측 부모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 당사자들 내부에서도 남편의 기여와 부인의 기여는 큰 차이가 났다. 남편의 기여가 부인의 기여보다 약 3배가량 높았다.

<표 3-9> 남편과 부인의 결혼주거자금 원천별 금액

구분	평균금액(만 원)			구성비(%)		
	남편	부인	전체	남편	부인	전체
자기자금	4,850	1,866	6,716	72.2	27.8	100.0
부모 지원	6,198	1,418	7,616	81.4	18.6	100.0
부채	4,325	635	4,960	87.2	12.8	100.0
합계	15,373	3,919	19,292	79.7	20.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이러한 주거자금 기여에 대한 남편(측)과 부인(측)의 격차는 ‘남자는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살림 마련’이라는 관습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거 이외의 결혼비용은 부인(측)이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 「결혼동향조사」에 포함된 ‘주거 이외 결혼비용규모’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표 3-10>에 제시했다. 우선 주거 이외의 결혼비용은 결혼주거자금과 비교하여 그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 이 비용에는 통상적으로 ‘살림 마련’이라고 하는 내구소비재 구매뿐만 아니라 신혼여행 비용과 결혼식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을 합한 금액은 평균 3,600만 원 수준이었다. 본인의 지출금을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비교하면, 부인의 지출금액이 근소하게나마 더 많았으며, 부모 지원 금액에서는 남편측 부모의 지출금액이 약 200여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주거자금과 마찬가지로 남편측은 부모가 자녀보다 더 많이 지출했고, 부인측은 자녀가 부모보다 더 많이 지출했다.

주거자금 이외 결혼비용을 조달함에 있어, 남편측과 부인측이 부담하는 금액에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지금까지 살펴본 결혼주거자금 조달에서 젠더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관해 직접적으로 해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거자금을 포함한 전체 결혼비용에 대해서도 남편측 주도의 자원동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표 3-10> 남편측과 부인측의 주거 이외 결혼비용 규모

(단위: 만 원)

구분	남편	부인	평균
본인	1,848	1,884	1,866
부모 지원	1,884	1,605	1,745
합계	3,732	3,489	3,611
(N)	(1,421)	(1,421)	(2,84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남편과 부인, 남편측 부모와 부인측 부모, 이 네 주체가 동원한 자금의 절대 금액 분포를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전체 금액 대비 비중을 제시하는 대신 절대 금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분포를 제시한다.

〈표 3-11〉에 따르면, 남성의 약 20%와 여성의 약 50%가 결혼 시 주거자금에 대한 자기자금의 기여가 전혀 없었다. 특히 여성의 절반이 주거자금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상반된 경제적 행동은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분리된 성역할에 맞추어 행동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달리, 남성과 여성의 노동이력, 소득수준, 자산수준 등 경제적 격차가 크고 그러한 경제적 능력의 차이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별도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결혼주거자금 조달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소극적이거나 미미하게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기여금액의 분포는 남편과 부인 모두 6,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6,000만 원 이상인 경우보다 많았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혼주거자금에 기여한다. 남편의 33.7%가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기여했으며, 그 이상의 자금을 주거자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의 30%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들은 전혀 기여가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 이었고, 기여하는 경우에는 남성보다 더 적은 금액을 동원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도 3,000만 원~6,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기여한 사례가 전체의 20%가 있었으며, 그 이상을 조달한 경우도 약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측 부모와 부인측 부모의 기여 차이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혼주거자금의 약 40%가 부모의 지원에서 나온다는 것은 앞서 확인했다. 또한 남편측 또는 부인측 상관없이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양측 어느 쪽의 부모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약 30%인 것이다. 그런데 부모를 남편측과 부인측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지원 여부를 살펴보면, 남편측에서도 부모가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42.3%를 차지했고, 부인측에서는 그 수치가 7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측 부모가 지원하지 않는 경우(42.3%)는 부인측 부모도 지원하지 않아 양측 모두의 지원이 없는 경우(약 30%)와 부인측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12.3%)로 구분될 수 있다.

남편측 부모의 지원은 남편 본인의 기여금 분포와 달리 양극화된 양상을 보인다. 전혀 지원이 없는 경우가 다수인 상황에서, 9,0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약 25%를 차지했으며, 14.2%는 1억 2,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측 부모는 절대 다수가 딸 자녀 결혼에 대해 주거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9,0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지원하는 경우는 약 6% 정도로 나타났다.

〈표 3-11〉 남편, 부인, 남편 부모, 부인 부모의 주거자금 기여금액 분포

(단위: %)

구분	남편 본인	부인 본인	남편 부모	부인 부모
없음	20.4	52.2	42.3	79.0
3,000만 원 미만	17.8	22.6	7.7	5.9
3,000만 원~6,000만 원 미만	33.7	20.1	18.4	7.6
6,000만 원~9,000만 원 미만	12.9	1.8	7.7	1.6
9,000만 원~1억 2,000만 원 미만	10.1	2.4	9.7	3.3
1억 2,000만 원 이상	5.2	1.0	14.2	2.7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표 3-12〉는 이러한 남편측과 부인측 기여금액의 차이가 거주주택 자산가격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거주주택 자산가격 구간별 부인측과 남편측의 기여금액을 평균액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면, 전체적으로 남편과 남편측 부모가 부인과 부인측 부모에 비해 약 네 배 많은 자금을 기여하는데, 이러한 부인측 대비 남편측의 비율은 자산가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산하위층과 자산상위층에서 남편측 기여와 부인측 기여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고, 자산가격 1억~2억 원 미만과 2억~3억 원 미만인 자산중간계층과 중상위계층에서는 남편측 비율이 각각 3.85배와 3.45배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혼주거자금에 대해 남편과 남편측 부모가 주로 기여하는 것은 자산상위/중위/하위 계층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는 앞서 부모 지원이 계층적으로 편향되어 나타난 것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즉 자산하위층은 부모 지원이 드물었던 반면, 자산상위층은 부모 지원이 일반적이었다. 부모의 지원 그 자체가 주거자금규모, 즉 거주주택 자산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추가적 부모 지원을 결여한 사례에서 거주주택 자산가격이 낮게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생활수준이 결혼한 자녀의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1억 원 이하의 자산하위층에는 경제적 하위계층이 다수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거자금을 남편측이 편향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모든 자산 계층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루어지는 현상이었다. 남편측 편향이 특정한 계층의 지향이나 전략으로 환원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12〉 거주주택 자산가격 구간별 부인(측)과 남편(측)의 평균 기여금액 비교

(단위: 만 원)

구분	1억 원 미만	1억~2억 원 미만	2억~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전체
부인과 부인측 부모(A)	1,118	3,050	5,302	9,046	3,919
남편과 남편측 부모(B)	5,118	11,754	18,291	39,037	15,373
남편측비율(B/A)	4.58	3.85	3.45	4.32	3.9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제2절 결혼주거자금 조달방식의 유형화

1. 유형분류의 기준

지금까지 살펴본 주거자금 조달방식을 통합하여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형화가 아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 이론적 유형화를 시도한다. 첫째는 수직적 세대관계를 유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립과 의존을 범주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결혼당사자와 이들의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다. 두 번째 기준은 수평적 젠더관계를 유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 기여가 부부 양측 중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있는가, 아니면 양측이 자금조달의 책임을 공유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두 기준을 교차하여 주거자금 조달유형을 분류한 것이 <표 3-13>이다. 자립형은 자립의 수단이 저축인가 대출인가에 따라 다시 하위분류한다. 차입자립형은 대출주체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는다. 차입금은 미래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므로 향후 부부 공동의 경제활동에 의해 차입금과 금융비용이 충당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입에 의한 자립을 제외한, 나머지 범주인 저축을 통한 자립유형과 부모 의존 유형만을 남편(측)과 부인(측)의 상대적 기여에 따라 분류한다. 부부 양측의 상대적 기여도를 저축자립형과 교차하면, 남편주도 자립형, 아내주도 자립형, 공동 자립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부모 양측의 상대적 기여도를 의존형과 교차하면, 남편측 부모 의존형과 아내측 부모 의존형, 그리고 양측 의존형으로 분류된다.

〈표 3-13〉 결혼주거자금 조달유형의 7개 범주

구분	자립		의존
	저축형	차입형	
남편	남편주도 자립형	차입자립형	남편측 의존형
부인	아내주도 자립형		아내측 의존형
공동	공동 자립형		양측 의존형

그렇다면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자립과 의존, 그리고 남편(측)과 부인(측) 관계에서의 공유와 분리 등을 범주화하는 양적 기준은 무엇인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부모 지원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자립과 의존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자가와 전세의 자립형은 약 32%, 월세의 자립형은 7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3-4〉 참조). 둘째, 단지 부모 지원을 받는 사례 모두를 ‘의존’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규모로 지원받을 경우에만 ‘의존’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의미 있는 규모의 지원, 즉 절대 금액이 상한선(또는 하한선)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결혼주거자금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국외 연구에서 부모-자녀 사이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유형화를 시도할 때, 임의로 상정된 일정 금액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지원’으로 분류한 연구들이 있다(Rowlingson, Joseph, & Overton, 2017).²⁷⁾ 세 번째 방법은 상대적인 금액, 즉 전체 주거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부모 의존형과 자립형을 구분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세 번째 기준—전체 주거자금 대비 비중—을 적용하고자

27) 주거자금에 특정화된 것은 아니지만 국외 연구를 참조하면, 세대 간 자원이전 연구에서 자원이전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 이상일 경우만 자원이전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유럽의 세대 간 관계 조사(SHARE)에서는 250유로를 기준으로 측정했고, 영국의 한 조사는 1,000파운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를 유효한 세대 간 이전 사례로 간주했다(Rowlingson et al., 2017).

한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타당한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첫 번째의 ‘지원 여부’ 기준은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서, 주거자금 총액에 부모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경우라면 금액의 규모나 비중에 상관없이 모두 부모자금에 의존한다고 분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는 단지 자립과 의존을 구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자립하고 의존하는가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비추어 보면, 첫 번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자기자금과 부모 지원금이 다양한 비중으로 분포하는 현실을 단순화하는 단점이 있다. 가령 전체 주거자금의 10%를 부모가 지원한 경우, 이를 부모 의존형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나머지 90%를 결혼당사자가 각자의 자기자금과 대출금 등을 조합하여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가 더 해명되어야 할 관심사이다. 이 연구는 세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젠더관계를 교차하여 주거자금 조달방식을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부모 지원 여부보다는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기여 비중을 기준으로 세대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연구질문에 부합한다.

두 번째 기준인 절대 금액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기술하는 것도 동일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결혼주거자금은 ‘자가와 월세’로 단순화되어 있지 않고, 전세와 반전세 등 점유형태가 복잡하다. 이러한 점유형태에 따른 차이를 비롯하여, 지역별 차이, 주택유형에 따른 차이 등에 의해, 주거자금의 규모는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따라서 절대적 금액을 기준으로 ‘자립/의존’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가령 부모가 주거자금 3,000만 원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전체 주거자금규모에 따라 주거자금의 전부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는 결혼주거자금에 대한 기준을 부모 지원의 비중으로 정하였다. 부모의 지원 비중이 50%에 미달하는 경우를 자립형으로 범주화하고, 부모의 지원 비중

이 50% 이상인 경우를 의존형으로 범주화한다.

그다음으로 자립유형은 다시 대출금 비중에 따라 차입자립형과 잔여범주로 구분한다. 차입자립형은 전체 주거자금 대비 대출금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로 정의했다.

그다음으로 차입자립형을 제외한 나머지 자립형을 남편 주도와 아내 주도, 그리고 공동(양측) 기여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구분 기준은 40% 이상에서 60% 이하인 경우를 공동 기여로 판단하고, 나머지 40% 미만과 60% 초과를 기준으로 남편(측) 주도와 아내(측) 주도를 구분했다.

2. 주거자금 조달유형의 분포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채택한 유형분류 기준을 본 분석자료에 적용한 중간과정은 <표 3-14>와 <표 3-15>로 예시한다. <표 3-14>와 <표 3-15>는 자립과 의존의 구분 기준인 부모 지원 50% 미만과 부모 지원 50% 이상의 이분범주가 아니라 부모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와 부모가 전체를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 상호배타적인 네 개의 범주로 제시했다.

<표 3-14>는 부모가 지원하는 세부유형에 각각 대출비중, 자기자금의 부인 기여율, 부모 지원의 부인측 기여율을 교차한 것이다. 앞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립형은 대출비중과 자기자금의 부인측 기여율만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의존형은 부모 지원의 부인측 기여율만을 기준으로 유형화한다. <표 3-14>는 이러한 연구자의 선택에 의해 포함된 부분(음영 표시)과 탈락된 부분을 동시에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표 3-14>는 자립형 내부에서 부모의 지원이 전혀 없는 범주와 부모의 지원이 있지만 50%에 미달하는 범주 사이에 내적 차이가 있으며, 의존형에서 부모가 50% 이상을 지원하지만 전부를 지원하지는 않는 범주와 부모가 전부를 지원하는 범주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14〉 주거자금 조달유형 분류 기준 적용

	구분	자립형		의존형		합계
		부모 지원 없음	부모 지원 50% 미만	부모 지원 50% 이상 ~100% 미만	부모 지원 100%	
1. 대출비중	50% 미만	28.7	33.6	25.0	12.8	100.0
	50% 이상	65.2	33.4	1.5	0.0	100.0
	전체	35.8	33.6	20.4	10.3	100.0
2. 자기자금	부인 40% 미만	43.4	37.1	19.6	-	100.0
	부인 60% 이상	37.6	39.7	22.7	-	100.0
	부인 40~60% 미만	37.5	43.2	19.3	-	100.0
	전체	41.7	38.5	19.8	-	100.0
3. 부모 지원	부인측 부모 40% 미만	-	53.0	30.5	16.5	100.0
	부인측 부모 60% 이상	-	51.2	36.7	12.1	100.0
	부인측 부모 40~60% 미만	-	47.1	35.7	17.2	100.0
	전체	-	52.2	31.8	16.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표 3-15〉는 부모 지원의 세부분류 중에서, 신혼부부 주거자금 조달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부모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 자립의 수단은 남편의 저축인 경우가 4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은 차입에 의존한 자립이 35.5%로 나타났다. 부부가 동일한 비중의 저축으로 자립한 경우는 전체의 11.3%에 불과했고, 아내의 저축에 의해 자립한 경우는 4.7%에 불과했다. 부모가 50%에 미달하는 비중으로 주거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남편주도형 자립이 54.4%였으며, 아내주도형 자립은 7.3%, 부부 공동형은 19.0%, 차입자립형은 19.4%를 차지했다.

부모 지원의 세부 유형 중 부모가 지원은 하지만 50% 미만인 유형은 전체의 30% 비중을 차지한다. 부모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 다음으로 일반적인 유형이다. 이 경우에도 남편의 저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부부 공동형도 약 20%를 차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 지원이 없는 경우 차입자립형이 35.5%를 차지한 것과 달리, 부모 지원이 50% 미만의 비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나머지 자금을 차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차입자립형은 19.4%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모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와 부모 지원이 50% 미만인 경우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대출의존도였다. 부모가 지원할 경우 대출을 덜 동원하는 대신, 남편이 주도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거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에 의존하는 사례(차입자립형)의 비중이 컸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전체 주택자금의 규모와 점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의 주거자금 마련은 월세 등과 같이 주거자금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남편의 자산규모(저축)가 큰 경우,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 등 이 세 가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립형(부모 지원 50% 미만)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범주이다. 그보다 부모 의존형(부모 지원 50% 이상)은 약 30%를 차지한다. 이 범주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거주부동산가치가 높은 주거계층 상위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자산상위계층의 주거자금 대부분을 부담하는 부모는 남편측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전체 금액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에 남편측 부모의 지원에 더욱 극단적으로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부모 지원 세부유형과 주거자금 조달유형

(단위: %)

구분	부모 지원 없음	부모 지원 50% 미만	부모 지원 50% 이상~ 100% 미만	부모 지원 100%	전체
남편주도 자립형	48.6	54.4	0.0	0.0	35.6
아내주도 자립형	4.7	7.3	0.0	0.0	4.1
부부 공동형	11.3	19.0	0.0	0.0	10.4

구분	부모 지원 없음	부모 지원 50% 미만	부모 지원 50% 이상~ 100% 미만	부모 지원 100%	전체
차입자립형	35.5	19.4	0.0	0.0	19.2
남편측 부모 의존형	0.0	0.0	74.7	80.4	23.5
부인측 부모 의존형	0.0	0.0	14.9	9.2	4.0
양측 공동형	0.0	0.0	10.4	10.4	3.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가장 범주를 단순화하여 주거자금 조달유형을 나타내고, 이를 주거점유형태에 따라 구분한 것이 <표 3-16>이다. 본 분석자료의 표집에서 월세의 비중이 근소하게 낮았던 것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의 자가/전세/월세 비중을 적용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신혼부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각 자금원천의 동원 여부와 자금원천별 기여율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전체 자금에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를 의존형으로 분류하고 50% 미만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자립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자기자금과 부모 지원금에서 남편(측)과 부인(측)의 상대적 기여율을 기준으로 남편측 편향, 아내측 편향, 부부 공동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기준을 교차하여 유형화한 결과, 전체 주거자금 조달유형 7개 중 남편주도 자립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남편측 부모 의존형이 그다음의 비중을 차지했다. 의존형이든 자립형이든 남편과 남편 부모가 부인과 부인 부모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자금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주도 자립형은 남편이 자기자금의 60% 이상을 조달하고, 주거자금의 50% 이상을 자기자금과 대출로 조달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이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즉 남편주도 자립형은 남편 자신의 저축뿐만 아니라 전체 50% 미만의 비중으로 대출과 부모 지원금을 조달하는 유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부모 지원이 있다고 해서 의존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자립형으로 분류했다. 주거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자기자금, 대출, 부모자금을 적절한 비중으로 총동원하는 남편주도 자립형이었다.

남편측 부모 의존형은 부모 지원금의 60% 이상을 남편측이 제공함으로써 주거자금 총액의 50% 이상을 부모가 지원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사례가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차입자립형(19.2%)이었다. 대출금액의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에도 사례에 따라 부모의 지원금과 자기자금이 포함되지만, 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표 3-16〉 신혼부부 주거자금 조달유형

구분	자립형					의존형				합계
	남편 주도	아내 주도	공동	차입	(소계)	남편측	아내측	양측	(소계)	
자가	32.3	4.8	10.8	24.1	(72.0)	23.4	2.6	2.1	(28.1)	100.0
전세	35.0	3.5	10.1	17.9	(66.5)	24.9	4.9	3.8	(33.6)	100.0
보증부 월세	52.7	6.2	11.5	10.0	(80.4)	13.8	3.0	2.7	(19.5)	100.0
전체*	35.6	4.1	10.4	19.2	(69.3)	23.5	4.0	3.2	(30.7)	100.0
수정 전체**	38.0	4.5	10.6	18.2	(71.3)	22.0	3.7	3.0	(28.7)	100.0

주: 1) 전체 값(*)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의 각 점유형태별 비중이 적용된 값이고, 수정 전체 값(**)은 국토교통부(2019) 조사에서 2018년과 2019년에 결혼한 신혼부부 주택의 점유형태별 비중을 적용한 값임. 자가 32.21%, 전세 46.06%, 보증부 월세 21.75%의 비율을 적용함.

2) 표본가중치 적용과 반올림으로 가로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2) 국토교통부. (2019).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이와 함께 상대적 비중은 낮지만 남성(측) 주도 자금동원에서 벗어난 유형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부부가 유사한 비중으로 결혼

자금에 기여한 공동 자립형(10.4%)은 결혼당사자들이 가장 이상적이거나 원칙적인 주거자금 조달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주거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거나,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의 주거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대해 미혼남녀 다수는 동의하기보다는 반대한다(이삼식, 박중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p. 344; 조성호 외, 2019, p. 322). 이러한 이상적 기준에 따르면, 현재 신혼부부 중 공동 자립형의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결혼당사자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세대관계(자립)와 젠더관계(책임공유)가 주거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후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17〉은 7개 자금조달유형과 주택자산 5분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1/5분위에서 5/5분위에 이르는 자산분위와 주거자금 조달유형 사이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계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5/5분위와 1/5분위 또는 5/5분위와 나머지 자산 계층 사이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5분위와 나머지 집단과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자산하위층에서는 자립형의 비중이 69.4%~76.0%를 차지한 반면 자산상위층에서는 자립형이 59.1%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5/5분위의 의존형 비중이 전체 평균수준보다 높은 40.9%를 차지한 것은, 다른 계층에 비해 남편측 의존형 비중(32.0%)이 월등하게 높은 데 힘입은 것이다. 자산상위층은 주로 남편측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강하며, 아내측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보다는 차라리 양측 부모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지원 받는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나머지 1/5분위에서 4/5분위에 이르는 자산 하위 80% 유형에서 남편 주도성과 남편측 의존경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립형 내에서는 주로 남편주도형이 다수를 차지했고, 의존형 중에서도 남편측 부모 의존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3-17〉 주택자산 5분위별 주거자금 조달유형의 비중

(단위: %)

구분	자립형					의존형				합계
	남편 주도	아내 주도	공동	차입	(소계)	남편 측	아내 측	양측	(소계)	
1/5분위	46.9	3.9	7.9	17.4	(76.0)	20.2	2.4	1.4	(24.0)	100.0
2/5분위	33.2	4.0	11.2	21.1	(69.4)	22.7	4.2	3.6	(30.6)	100.0
3/5분위	32.6	3.4	10.6	24.8	(71.4)	22.1	4.4	2.0	(28.5)	100.0
4/5분위	37.0	3.3	10.1	19.6	(70.1)	21.3	5.3	3.3	(29.9)	100.0
5/5분위	27.1	6.0	12.0	14.0	(59.1)	32.0	3.7	5.2	(40.9)	100.0
전체	35.6	4.1	10.4	19.2	(69.3)	23.5	4.0	3.2	(30.7)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다음 소절에서는 사례 인터뷰 결과를 소개한다. 현실의 사례를 통해 각 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각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3. 주거자금 조달유형별 신혼부부 사례

이하에서는 주거자금 조달유형 중 남편측 부모 의존형과 남성주도 자립형, 아내주도 자립형, 양측부모 의존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예시한다. 신혼부부 중 한 사람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주거자금의 원천과 조달방식을 중심으로 정보를 취합하였다. 각 사례에 따라 주거자금 조달과정에서 겪은 경험이나 지원을 제공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서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례들은 뒤에 이어지는 4장 2절에서 신혼부부 특성과 주거자금 조달유형의 관계를 해석하기 위한 보완적 자료로도 사용된다.

가. 남편측 부모 의존형 사례

사례 1: 신혼부부 김OO과 박OO은 2019년에 서울에서 결혼을 했다. 두 사람 모두 취업 중이지만 소득이 높지는 않았다. 남편인 김OO의 어머니는 투자용으로 2018년 서울에 15평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구매한 바 있다. 임대소득을 위한 것이기는 했지만, 다른 투자용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어서, 이 아파트는 나중에 아들에게 증여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인 김OO이 직장을 그만두고 구직에 나서자, 소득이 없는 아들에게 이 주택에 들어가 살라고 한다. 김OO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이 소형 아파트에 사는 동안 박OO과 결혼하기로 했다. 그러자 김OO의 어머니는 아들 김OO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한다. 부인 박OO은 남편 김OO의 직장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부동산자산 조차 없었다면 결혼을 결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인 박OO은 증여세 4,000만 원 중 절반인 2,000만 원을 부담함으로써, 주거자금에 기여했다. 이 부부는 남편측 부모 의존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2020년 10월 26일 부인 박OO 인터뷰)

사례 2: 2014년에 결혼한 남성 A와 여성 B는 2억 2,000만 원의 아파트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다. 남편 A는 결혼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비정규직이었던터라 임금소득이 많지는 않았다. 남편 A는 자신의 용돈을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어머니에게 맡겨왔다. 어머니는 아들의 소득과 자신의 여유자금을 합하여 적금이나 펀드에 넣어 목돈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한편 부인 B는 학업 때문에 일찍 분가하여 친동생과 함께 소형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다. 전세금은 오래전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7,000만 원과 함께 사는 동생이 대출받은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남편 A의 자기자금은 어머니의 소득과 합해져서 어머니에 의해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부모의 기여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자기자금이 모호하다. 부인 B는 결혼 전까지 살았던 집의 전세금 중 부모가 준 7,000만 원의 절반을 신혼집 마련에 사용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B의 부모의 기여금이다. 결혼을 결정한 후에야 A와 B는 동원할 수 있는 주거자금규모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남편 A는 자기자금이 아마도 4,000~5,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부인 B는 3,500만 원에 자신의 저축 500만 원을 보태어 4,000만 원 정도는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부부의 자기자금은 1억 원 미만이었는 데, 이 금액은 남편 A가 비정규직이고 소득이 낮아 대출금도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전세금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건례를 앞두고 A의 어머니는 아들인 A에게 아파트 전세금을 보태주겠다는 의사를 전한다. 그전까지 A의 어머니가 A에게 결혼해서 살 집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었지만, A도 어머니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한다. 부인측의 4,000만 원과 남편측의 1억 6,000만 원,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2,000만 원으로 신혼집을 마련했다.

자영업자인 양측 부모는 모두 자기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온 중산층으로서,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얼마간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갖고 있다. 남편 A의 부모는 부동산자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반면 부인 B의 부모는 부동산자산을 임대하여 얻는 수입이 은퇴한 현재의 주요 소득원인 터라, 자녀의 주거자금 용도로 추가지출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A의 부모는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한다는 통념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인측에서 4,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에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고 한다.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인 B의 부모측도 자신들은 치르지 않은 희생을 치른 남편측 부모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결혼당사자인 A와 B도 남편측 부모의 지원에 큰 고마움을 갖게 되었으며, 결혼 초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가족행사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A와 B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린다. 남편측 부모에게만 정기적으로 30만 원을 드리고, 부인측 부모에게는 부정기적으로 현금 선물을 하고 있다. 부모의 지원금 비중이 이 전체 금액의 50%를 상회하므로 남편측 부모 의존형으로 분류한다.

(2020년 10월 27일 부인 B 인터뷰)

나. 남성주도 자립형 사례

사례 3: 박00과 강00은 2014년에 결혼했다. 결혼할 당시 박00에게 3,000만 원의 저축이 있는 것과 달리 강00에게는 모아 놓은 저축이 없었다. 박00은 은행 대출을 통해 5,000만 원을 조달하여, 8,000만 원으로 다세대주택 전세금을 마련했다. 박00은 강00의 저축이 없었다는 것을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됨에 따라 8,000만 원의 자금으로 서울에서, 그리고 출퇴근을 고려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두 사람 모두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강00이 회사와의 계약 종료로 약 3개월간 무직이었던 적이 있었다. 박00은 이 시기에 강00이 무직이었기 때문에 정부

의 주거지원정책인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결혼 당시에는 부부합산소득이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고 3,000만 원밖에 주거자금이 없고 양가 부모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회고한다. 이 사례는 남성주도자립형에 해당된다.

(2020년 10월 27일 남편 박00 인터뷰)

사례 4: 남편 C와 아내 D는 2020년 2월에 결혼했다. 결혼 전 남편은 누나와 함께 경기도 수원시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다. 전세금은 누나가 마련한 것이다. C가 결혼하기 전 누나가 먼저 결혼하여 이주했고, C가 남아 혼자 살던 중 D와 결혼하였다. 신혼집은 C가 누나와 함께 살다가 혼자 살기 시작한 수원의 아파트이다. 결혼하면서 C는 누나에게 전세금 1억 원을 갚았다. 대학병원 의사인 C는 1992년생으로 올해 나이 29세이지만, 비교적 빨리 1억 원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 D도 C와 동갑이고 일한 지 오래되었지만, 큰돈이 없는데다 C가 이미 필요한 돈을 지불하였으므로 주택자금에 추가적인 기여를 하지는 않았다. 참고로 이들은 결혼 전부터 공동통장을 만들어 공동소비에 필요한 자금을 함께 관리해왔다.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매월 납입하고 있다. 이 통장으로 결혼식비용과 결혼 이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2020년 10월 26일 아내 D 인터뷰)

다. 아내주도 자립형 사례

사례 5: 남편 E와 아내 F는 2017년에 결혼했다. E는 결혼 전에 6년 정도 오피스텔 월세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지내왔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계속 일을 했으나, 수중에 저축액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남편 E는 결혼을 한다면 집은 남자가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번 돈은 대부분 지출했다. 반면 아내 F는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신혼집은 아내 F가 대학 졸업 후 계속 일을 하면서 모았던 저축액과 정부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전세 가격의 70%)을 통해 전셋집을 마련했다. 첫 신혼집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이사할 때 늘어난 보증금은 E의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마련했다. 이 지원금은 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값이 나가고 있다. 현재 절반 정도 갚았다고 한다. 남편 E의 부모 측에서는 첫 신혼집과 지금의 집(이사)에 이르기까지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배

경에는 남편 E의 개인적인 가정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 부부는 아내측 부모 및 친척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결국 이 신혼부부는 양가 부모의 지원 없이 아내가 주도하여 주거자금을 마련한 아내주도 자립형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10월 17일 남편 E 인터뷰)

라. 양측부모 의존형 사례

사례 6: 남편 G와 아내 H는 2019년 2월에 결혼했다. G와 H는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모두 정규직으로 부부의 소득수준은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이 서울이라 부부의 자금만으로는 주택 마련이 어려웠다. 남편 E는 결혼 전에 다세대 주택 원룸에서 수년간 거주했었고, 아파트청약에 당첨되어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었다. 아파트가 건축되는 기간에 아내 H를 만나서 결혼하였고, 분양받은 아파트는 H의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현재 임대를 준 상황이다. 사실 G는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자기 힘으로 갚아나가려고 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H와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기로 하자, 부모가 자연스럽게 주택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한다. 또한 배우자인 H의 부모도 분양받은 아파트 구매대금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다. 현재 분양집 세입자의 전세금과 양가 부모의 추가 지원으로 두 사람의 직주거리로 고려한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엔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다. 당사자 남편과 아내의 자기자금은 전체 주거자금에 대해 10~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양가 부모의 지원이다. 남편 G의 부모가 지원한 금액은 2억 3,000~4,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양가 부모의 지원은 무상이며, 결과적으로 당사자 G와 H를 포함한 각 집안의 주거자금 비율은 50:50이다. 양가 부모의 지원이 약 80~90%인 것을 볼 때 이 사례는 양측부모 의존형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10월 17일 남편 G 인터뷰)



제4장

신혼부부의 특성과 결혼주거자금 조달유형

제1절 신혼부부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자금 조달유형

제2절 신혼부부의 태도와 주거자금 조달유형의 관계

제 4 장

신혼부부의 특성과 결혼주거자금 조달유형

3장에서는 주거자금 조달원천을 중심으로 주거자금 조달유형을 파악했다. 이 장에서는 신혼부부의 특성과 주거자금 조달유형의 관계를 살펴본다. 신혼부부 집단은 결혼진입과 결혼초기라는 두 가지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이지만, 연령, 경제활동상태, 소득수준, 가치관 등의 측면에서 내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신혼부부 내부의 인구, 사회경제, 가치관의 차이가 주거자금 조달유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모든 측면을 기계적으로 대입하여 관계를 측정하기보다, 기존 연구와 최근 한국 사회의 결혼, 노동, 가치 등의 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1절에서는 만혼과 맞벌이 증가라는 현상과 주거자금 조달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2절에서는 가치관과 주거자금 조달유형의 관계를 살펴본다. 3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금지원을 받아 결혼한 커플이 이후 부모세대와 어떤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제1절 신혼부부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자금 조달유형

1. 신혼부부 초혼연령과 주거자금 조달유형

〈표 4-1〉은 최근 7년 이내에 결혼한 부부의 초혼연령별 주거자금 조달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남녀 모두 30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결혼할 때 의존성이 많았고, 그 이후에 결혼할 때 자립형이 늘어났다. 결혼연령과

의존/자립 여부의 밀접한 관계는 오늘날 흔해진 만혼 추세가 주거자금 조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혼인이 26세 이상 40세 미만에서 이루어지며(통계청, 2019), 이 표본조사에서도 초혼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는 6.0%, 41세 이상인 경우는 2.1%에 불과했다.

우선 남성의 결혼연령과 주거자금 조달유형의 관계를 살펴보면, 결혼연령이 높을수록 자립형의 비중이 커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립형은 부모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 지원이 50% 미만이고 자기자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50% 이상이라는 의미이다. 늦게 결혼한 사람들은 일찍 결혼한 사람들보다 자립형의 비중이 컸다.

여성의 결혼연령과 주거자금 조달유형의 관계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결혼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립형의 비중이 커지며, 남성보다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가령 남성 초혼연령 36~40세의 자립형 비중이 78.5%인데 반해, 여성 초혼연령 36~40세의 자립형 비중은 85.8%였다. 또한 자립형 내에서 여성의 결혼연령이 늦을수록 아내주도 자립과 공동 자립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측)과 부인(측)의 상대적 기여율이 결혼연령과 체계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늦은 결혼과 남편 또는 아내의 상대적 기여율은 관련이 없어 보인다.

<표 4-1>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에 따른 주거자금 조달유형의 차이

(단위: %)

구분	자립형					의존				합계
	남편 주도	아내 주도	공동	차입	(소계)	남편측	아내측	양측	(소계)	
남성결혼연령										
~25	26.4	5.9	9.9	8.3	50.4	27.0	8.7	13.9	49.6	100.0
26~30	29.8	1.9	10.9	19.9	62.5	30.7	4.9	1.9	37.5	100.0
31~35	36.2	4.2	9.8	20.2	70.4	22.2	3.6	3.7	29.6	100.0

구분	자립형					의존				합계
	남편 주도	아내 주도	공동	차입	(소계)	남편측	아내 측	양측	(소계)	
36~40	41.2	7.3	13.1	16.8	78.5	15.6	3.2	2.8	21.6	100.0
41~	64.8	8.4	5.8	14.9	93.8	6.2	0.0	0.0	6.2	100.0
여성결혼연령										
~25	26.2	1.5	6.0	19.7	53.4	37.8	4.1	4.8	46.6	100.0
26~30	35.5	3.2	9.3	19.3	67.2	24.5	5.0	3.3	32.8	100.0
31~35	34.8	4.9	12.5	20.4	72.6	21.7	2.9	2.8	27.5	100.0
36~40	51.4	13.0	12.7	8.7	85.8	8.2	3.5	2.6	14.2	100.0
41~	56.8	0.0	10.8	18.5	86.1	13.9	0.0	0.0	13.9	100.0
전체	35.6	4.1	10.4	19.2	69.2	23.6	4.0	3.2	30.8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2. 신혼부부의 경제활동유형과 결혼주거자금 조달유형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조달유형은 당사자 본인의 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연구의 분석자료인 「결혼동향조사」에서 신혼부부의 결혼 당시 소득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자. 신혼부부의 소득은 개인 소득과 부부 소득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혼 당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전체 커플의 55.8%였다. 여성들은 결혼 전 교제할 당시 취업률이 80.3%였으나, 그 후 전체의 18.8%가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거나 임금수준이 낮은 경우 일을 그만둔 비중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소득원이 1인인 외벌이 가구와 소득원이 2인인 맞벌이 가구의 가구소득 차이가 크기 때문에, 두 유형의 가구를 구분하여 가구소득과 주거자금 조달유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두 유형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는 맞벌이 가구에서 공동 자립유형의 비중이 13.5%를 차지하는 데 반해, 외벌이 가

구에서는 그 유형의 비중이 5.5%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 의존형의 비중도 차이가 있어서, 맞벌이 가구(29.2%)보다 외벌이 가구(34.4%)가 부모 의존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 가구유형 내에서 소득분위와 주거자금 조달유형은 체계적인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본 연구의 유형 분류가 부모 의존율과 남편/부인의 상대적 기여율이라는 서로 성격이 다른 두 변수를 교차한 복합적 지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4-2〉 외벌이 신혼부부의 소득수준별 주거자금 조달유형

(단위: %)

구분	남성주도 자립	여성주도 자립	공동 자립	차입형 자립	남성측 부모 의존	아내측 부모 의존	양측 의존	전체
〈맞벌이 가구〉								
1분위	42.9	5.1	7.2	21.8	17.0	2.7	3.4	100.0
2분위	33.5	7.0	20.6	13.8	22.5	1.3	1.2	100.0
3분위	35.1	6.3	7.5	18.8	25.2	3.2	3.9	100.0
4분위	27.7	3.0	14.7	21.1	27.1	3.8	2.6	100.0
5분위	35.7	1.2	16.9	13.5	25.3	1.6	5.9	100.0
전체	35.1	4.5	13.5	17.8	23.3	2.5	3.4	100.0
〈외벌이 가구〉								
1분위	30.4	4.6	8.2	22.0	26.2	5.8	2.8	100.0
2분위	35.4	1.6	7.6	20.6	29.5	5.1	0.2	100.0
3분위	48.7	2.3	5.5	14.6	22.2	3.6	3.1	100.0
4분위	39.7	4.2	3.5	13.7	30.6	4.4	3.8	100.0
5분위	36.0	4.2	2.5	22.1	21.3	7.6	6.2	100.0
전체	38.0	3.3	5.5	18.7	26.0	5.3	3.1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부모 의존형과 자립형에 속할 확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통계적인 모형을 통해, 지금까지 살펴본 초혼연령과 부부 경제활동유형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3. 결혼연령 및 경제활동유형과 주거자금 조달유형: 자립/의존

결혼연령 및 경제활동유형과 자립/의존형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립형(=1)과 의존형(=0)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독립변수는 결혼연령, 맞벌이 여부, 성별, 결혼시점 소득(로그값), 결혼시점 거주주택 자산가격(5분위수), 주택점유형태(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거주지역(8개 특별, 광역, 자치시와 9개 도)이다.

다항로짓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연령이 상승할수록 자립형에 속할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에 대하여 외벌이는 자립형에 속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20세기 후반기의 결혼과 비교하여 최근의 결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는 만혼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결혼주거자금 조달에서 의존형보다는 자립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앞서 3장에서 분할표를 통해 기술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주택 자산가격은 자립/의존 유형에 속할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주택점유유형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택자산가격 하위 1/5분위에 비해 5/5분위는 자립형에 속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2/5분위, 3/5분위는 1/5분위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역변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한 더미형 지역 독립변수의 로짓값 중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에 주목해보자. 음의 값을 갖는 지역은 서울에 비해 자립형 확률이 낮은 곳이고, 양의 값을 갖는 지역은 서울에 비해 자립형 확률이 높은 곳이다. 계수의 절대값은 서울과의 자립형 확률의 격차로 이해하면 된다. 이에 따르면, 전국에서 자립형으로 주거자금을 조달할 확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와 세종이었으며, 가장 높은 곳은 광주와 인천이었다.

결혼 연도의 로짓값은 음수로 나타났다. 최근 년도로 올수록 자립형 자

금조달보다는 의존형 자금조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결과인지, 부모세대 중 상위계층의 자금지원 여력이 향상된 것인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모형에는 기존 연구에서 강조된 부모세대의 자산상황(마강래, 권오규, 2013; 이길제, 최막중, 2017)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은 결혼시기 및 부부 경제활동유형과 주거 자금 조달유형 사이의 통계적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모 지원을 받지 않거나 적은 비중으로 지원을 받는 개인들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시기를 지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반대로 평균적인 결혼연령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시점 부부의 맞벌이가 계층적으로 중립적인 현상이라면, 맞벌이 유형은 부부가 함께 조달할 수 있는 자금(저축과 대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부모 지원에 덜 의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3〉 결혼연령 및 부부 경제활동 형태와 자립형에 속할 확률의 관계: 다항로지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중심화 결혼연령		0.11 ***
부부 경제활동(외벌이)	맞벌이	-0.34 *
거주주택 자산가격(1분위)	2분위	-0.38
	3분위	-0.23
	4분위	-0.47 *
	5분위	-1.13 ***
	주택점유형태(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0.25
거주지역(서울)	부산	0.89 **
	대구	0.79 **
	인천	1.10 ***
	광주	1.49 ***

독립변수		회귀계수
	대전	0.47
	울산	-0.51
	세종	-1.02 **
	경기	0.56 ***
	강원	0.18
	충북	0.28
	충남	0.57
	전북	0.2
	전남	0.70 *
	경북	-0.13
	경남	0.29
	제주	-1.14 *
	결혼 연도	-0.13 ***
	성별	
	여성	0.05
	결혼시점 월평균 소득로그값	-0.19
	절편	272.70 ***
<hr/>		
Logistic regression	Number of obs =	2,069
	Wald $\chi^2(27)$ =	183.92
	Prob > χ^2 =	0.000
	Log pseudolikelihood =	-1176.1618
	Pseudo R^2	0.0951

주: 1) 결혼시점 소득이 있는 사례만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4. 성별 결혼자금 기여 격차: 젠더 규범과 소득의 상대적 효과

주거자금 조달유형에서 특징적인 것은 남성(측)의 기여가 여성(측)의 기여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주거자금 마련이 남성의 젠더 역할이라는 관념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남성이 노동이력, 노동지위, 소득 등에서 여성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이 실제 남성과 여성의 결혼

주거자금과 전체 결혼자금 기여액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결혼시점 남녀의 소득분포

〈표 4-4〉는 결혼시점 소득이 있는 사례에 한정하여 월평균 소득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결혼시점 월평균 소득은 298만 원이고 중위수는 280만 원이다.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16.2%를 차지하고 가장 상위구간인 월 350만 원 초과인 경우도 전체의 21.2%이다. 성별에 따라 월평균 소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337만 원이고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249만 원이다. 특히 여성은 2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27.6%였다. 결혼 당시 여성들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성 월평균 소득의 74%에 불과하다.

〈표 4-4〉 결혼시점 남성과 여성의 월평균 소득(세전)의 분포와 평균금액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200만 원 이하	7.2	27.6	16.2
201~250만 원	15.7	31.9	22.8
251~300만 원	24.0	23.8	24.0
301~350만 원	20.0	10.5	15.8
351만 원 이상	33.1	6.2	21.2
합계	100.0	100.0	100.0
평균(만 원)	337	249	298
중위수(만 원)	302	240	280

주: 결혼할 당시 월평균 소득을 보고한 사례에 한정된 것으로, 소득이 0인 경우는 제외함. 모든 화폐소득은 2015년 가격으로 환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나. 본인의 결혼비용 결정요인 분석

〈표 4-5〉에 따르면 결혼주거자금 조달 사례(1,421쌍)에서 주거자금에 대한 본인의 기여금은 남성이 평균 4,850만 원, 여성이 1,866만 원으로 나타났다. 주거자금과 기타 결혼비용을 합한 전체 결혼비용으로 남성이 6,689만 원, 여성이 3,744만 원을 지출한다. 주거자금은 확연히 남성에게 편향되어 있지만, 전체 결혼비용을 관찰하면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격차가 줄어든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여성과 남성의 결혼비용 지출액의 차이가 성별 이외, 결혼연령과 소득 등과 같은 요인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분석한다. 독립변수 중 결혼시점 소득은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그런데 우리의 사례에는 결혼시점에 비취업 상태에 있는 사례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결혼시점 소득을 보고한 사례에 한정하여 소득과 결혼비용 사이의 관계를 측정한다. 최종 사례수는 남성 1,165명, 여성 904명이며, 남성의 평균 주거자금은 4,795만 원, 총 결혼비용은 6,593만 원, 여성의 평균 주거자금은 2,052만 원, 총 결혼비용은 4,085만 원이다.

〈표 4-5〉 본인의 주거자금 및 총결혼비용

(단위: 만 원)

구분		본인의 주거자금 기여금	본인의 총 결혼비용 기여금	사례수(명)
전체 사례	남자	4,850	6,689	1,421
	여자	1,866	3,744	1,421
결혼시점 소득이 있는 사례	남자	4,795	6,593	1,165
	여자	2,052	4,085	90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표 4-6〉은 종속변수를 본인 결혼주거자금(모형 1)과 본인 총 결혼비용(모형 2)으로 나누어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독립변수로는 성별, 결혼 당시 월평균 소득(로그값), 결혼연령, 결혼 연차, 지역을 투입했다.

모형 1과 모형 2는 회귀계수의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결혼주거자금이든 결혼 총 비용이든 상관없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결혼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또한 결혼연차가 더 오래된 경우 더 많은 결혼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주목을 요한다. 즉 최근으로 올수록 본인이 지출하는 결혼비용은 매년 327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립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도 성별은 결혼당사자가 지출한 자금의 차이를 낳는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남성이 거주주택 마련에 여성보다 2,000여만 원을 더 지출한다. 다만, 총 결혼비용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2에서 성별의 회귀계수는 1,377만 원으로 나타나, 결혼비용 전체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주거자금에 대한 성별의 차이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은 남성이 마련해야 한다는 통념이 부모세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전체 결혼비용에 대해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을 확인했다.

〈표 4-6〉 결혼당사자의 결혼주거자금 기여금액과 성별 및 소득의 관계: 다항회귀분석

(단위: 만 원)

구분	결혼주거자금	전체 결혼비용
	회귀계수	회귀계수
성별	-2010.66 ***	-1377.08 ***
결혼 당시 소득(로그)	1600.60 ***	2712.13 ***
결혼연령	138.50 ***	178.64 ***
결혼연차	284.98 ***	327.25 ***
지역	〈생략〉	
절편	-7944.83 ***	-14567.47 ***

구분	결혼주거자금		전체 결혼비용	
	회귀계수		회귀계수	
사례수	2069		2069	
r^2	0.15		0.16	
r^2_a	0.15		0.16	
F	62.56		64.5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다음으로는 이러한 추세가 최근 결혼에서도 지속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결혼시기를 구분했다. 첫 번째 시기는 결혼코호트 1의 결혼시기인 2012년 8월~2015년 7월이다. 두 번째 시기는 결혼코호트 2의 결혼시기인 2015년 8월~2017년 7월이고, 세 번째 시기는 가장 최근인 결혼코호트 3으로 2017년 8월~2019년 7월이다. 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각 결혼코호트별 성별 결혼비용 지출금액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 <표 4-7>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대체로 남성의 결혼비용은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결혼주거자금은 결혼코호트 2에 비해 결혼코호트 3에서 근소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기술통계치는 결혼코호트 2와 3 사이에 주거자금 및 총 결혼비용에 대한 여성의 기여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7> 결혼코호트별 성별 평균 결혼자금

(단위: 만 원)

구분	모형 1: 본인 결혼주거자금		모형 2: 본인 총결혼비용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결혼코호트 1	5,476	2,564	7,345	4,806
결혼코호트 2	4,226	1,463	5,947	3,301
결혼코호트 3	3,758	1,563	5,468	3,346
전체	4,795	2,052	6,593	4,085

주: 결혼코호트 1의 결혼시기는 2012년 8월~2015년 7월이고, 결혼코호트 2의 결혼시기는 2015년 8월~2017년 7월이며, 결혼코호트 3의 결혼시기는 2017년 8월~2019년 7월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표 4-8〉은 결혼코호트에 따른 당사자의 주거자금 및 총 결혼비용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3개 결혼코호트 각각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회귀계수의 크기와 통계적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표 4-8〉은 동일한 종속변수와 동일한 독립변수로 이루어져 있으나, 분석대상이 결혼시기(결혼코호트)에 의해 하위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는 차이만 있다. 따라서 회귀계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모형 1에서 최근 결혼코호트로 올수록 성별 회귀계수가 작아졌다. 결혼코호트 1의 성별 회귀계수는 2,459만 원이었으나, 결혼코호트 2의 그것은 1,949만 원으로 감소했으며, 결혼코호트 3의 성별 회귀계수는 1,092만 원으로 줄어 들었다. 총 결혼비용에 대한 회귀모형인 모형 2에서는 성별 변수의 결혼코호트별 차이가 더욱 극적이다. 결혼코호트 1의 회귀계수는 1,704만 원이었으나, 결혼코호트 2에서는 1,449만 원으로 감소했고, 결혼코호트 3에서는 602만 원으로 감소한데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월평균 소득 변수와 결혼연령 변수도 변화했다. 소득에 따른 결혼비용 지출금액은 더욱 커졌고, 결혼연령에 따른 차이도 더욱 커졌다.

〈표 4-8〉 결혼코호트별 본인지출 결혼비용의 결정요인: 다항회귀분석

(단위: 만 원)

구분	모형 3: 종속변수 주거자금			모형 4: 종속변수 총 결혼비용		
	결혼 코호트 1	결혼 코호트 2	결혼 코호트 3	결혼 코호트 1	결혼 코호트 2	결혼 코호트 3
성별 (여성)	-2458.90 ***	-1949.41 ***	-1092.10 ***	-1703.65 ***	-1449.40 ***	-601.92
로그결혼 시점소득	1366.80 **	1488.98 *	2562.99 ***	2426.07 ***	2770.46 ***	3808.47 ***
결혼연령	36.07	175.59 ***	280.10 ***	69.41	193.45 ***	347.12 ***
혼인연차	519.63 **	767.19 *	-467.29	604.65 **	842.22 *	-412.95
지역	〈생략〉			〈생략〉		
절편	-4041	-10613.37 **	-17637.59 ***	-10536.49 **	-17522.76 ***	-25652.69 ***

구분	모형 3: 종속변수 주거자금			모형 4: 종속변수 총 결혼비용		
	결혼 코호트 1	결혼 코호트 2	결혼 코호트 3	결혼 코호트 1	결혼 코호트 2	결혼 코호트 3
사례수	988	439	642	988	439	642
r^2	0.11	0.23	0.24	0.11	0.20	0.27
r^2_a	0.11	0.22	0.24	0.10	0.19	0.26
F	20.66	21.76	34	20.03	18.47	38.39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이상의 결혼코호트별 결혼비용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2017년 전후로 결혼당사자들이 자기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2017년 8월~2019년 7월 사이에 결혼한 커플에서는 전체 결혼비용 기여에서 성별 변수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실제로 남성과 여성이 지출한 금액의 차이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연령이 동일하다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사라짐과 함께, 소득과 결혼연령의 회귀계수는 더욱 커졌다. 즉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의 결혼비용 지출액의 격차가 커졌으며, 결혼연령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사이의 결혼비용 지출액의 격차도 커졌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결혼한 커플들 사이에서 결혼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주거와 주거이외 항목의 차이는 여전히 유지되었지만, 전체 결혼비용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등은 용인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용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신혼부부의 태도와 주거자금 조달유형의 관계

신혼부부들은 결혼주거자금을 조달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정상적인(normative)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부모의 지원은 어떤 성격을 띠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채무'인가 아니면 '증여'(선물)인가.

이러한 해석의 문제는 주거자금 조달유형이 향후 부모-성인자녀 세대 간의 관계와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본 분석자료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하에서는 그와 근접하다고 생각되는 부모의 역할과 성역할 태도에 대한 문항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

부모는 언제까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가. 2000년대 이후 이에 대한 견해는 점차 적정 부양시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부모의 자녀부양 적정시기에 대한 견해에 따르면, 2003년에는 자녀가 혼인할 때 (와 그 이상)까지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8.4%였으나(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건우, 2004, p. 334), 2015년에는 10.0%로 감소했고, 2018년에는 다시 8.7%로 떨어졌다(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p. 231). 2018년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 고등학교 졸업까지가 14.7%, 대학졸업까지가 59.2%, 취

업할 때까지가 17.4%를 차지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부양 책임기간을 혼인할 때까지(와 그 이상)로 길게 보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소영 외, 2018, p. 231).

「결혼동향조사」에서도 동일한 문항을 신혼 남녀에게 질문했다.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를 경제적으로 언제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둘러싼 부모의 책임에 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8.6%가 학교졸업 시까지 부모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8.1%는 취직할 때까지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결혼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1.7%에 불과했다(조성호 외, 2019, p. 322). 이러한 결과는 최근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의 경제적 자립 시기를 학교 졸업 시점으로 보는 시각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 졸업까지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지만, 취업까지 또는 결혼할 때(또는 그 이후)까지라는 응답을 합한 것도 약 40%를 차지하여, 최종학교 졸업 직후에 자녀세대가 과연 자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거자금 조달유형은 부모의 지원과 남녀 사이의 상대적 기여라는 두 기준을 교차하여 구성한 복합적인 척도로서, 각 유형의 사회적 성격이 현 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4-9>에서는 7개 조달유형이 부모의 자녀 부양 시기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7개 유형과 자녀부양 의식 사이의 뚜렷한 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다만, 결혼주거자금의 50% 이상을 부모에게 의존한 유형들 사이에서 부모의 자녀부양책임이 결혼까지라는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모로부터의 지원 경험이 자녀부양 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거자금 조달유형은 관련 주체들의 자녀부양에 대한 의식이나 가치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주거자금지원에 대해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자녀세대에서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주거자금 조달사례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나타난다. 부모로부터 주거자금의 50% 이상을 지원받은 사례 중 어떤 사례도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경우는 없었다. 사례 2(남편측 부모 의존형)의 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상견례와 주거지 선정 직전까지 결혼당사자들은 자신의 저축으로 주거지를 마련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것은 사례 6(양측부모 의존형)도 마찬가지다. 사례 6은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아파트 신규분양을 받게 되어 자신의 저축과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부모에게 여유 자산이 있던 이 두 사례에서, 일단 당사자들이 결혼을 결심하자 자금동원의 주체가 당사자에서 부모세대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부모의 지원으로 사례 2와 사례 6은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이전받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부모에 대한 부채의식과 부모의 도움에 기대어 결혼자금을 마련했다는 불편감도 동시에 갖게 되었다고 한다.

〈표 4-9〉 주거자금 조달유형별 부모의 자녀부양 적정시기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학교졸업까지	취직까지	결혼까지 또는 이후까지	전체
남성				
남성주도 자립	59.3	28.0	12.7	100.0
여성주도 자립	45.6	38.3	16.1	100.0
공동 자립	55.3	34.5	10.3	100.0
차입형 자립	59.3	27.1	13.6	100.0
남성측 부모 의존	58.3	27.4	14.3	100.0
아내측 부모 의존	68.3	22.9	8.8	100.0

구분	학교졸업까지	취직까지	결혼까지 또는 이후까지	전체
양측 의존	64.5	27.5	8.0	100.0
전체	58.6	28.6	12.8	100.0
여성				
남성주도 자립	59.4	28.8	11.8	100.0
여성주도 자립	45.3	32.8	21.9	100.0
공동 자립	61.0	26.3	12.6	100.0
차입형 자립	58.3	25.3	16.4	100.0
남성측 부모 의존	56.1	31.0	12.9	100.0
아내측 부모 의존	68.4	14.3	17.3	100.0
양측 의존	70.7	22.9	6.4	100.0
전체	58.7	27.8	13.5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이는 배우자에게서도 나타난다. 사례 1과 사례 2는 모두 남편측 부모 의존형에 속하는데,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 주거자금을 마련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인 여성들은 직접 지원을 받은 남편들이 갖는 감사, 부채감, 불편감을 공유하는 동시에, 현재의 주거자산에 대해 불완전한 소유상태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고 한다.

반면 부모의 지원이 전혀 없이 주거자금을 조달한 사례라고 해서 애초에 자립적인 자금조달을 의도했거나 그 사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례 3(남편주도 자립형)과 사례 4(아내주도 자립형)와 같이 저축과 대출에만 의존하여 주거자금을 마련하고 주거상향이동을 계획하는 것은 가구경제에 심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주거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실이 적어도 현재로서는 큰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는 자금을 제공한 주체인 부모세대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세대보다는 부모세대가 자녀의 결혼에 부모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부모세대 내부에서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의식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기 때문일 것이다.

2. 성역할에 대한 태도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남성의 78.9%, 미혼여성의 72.2%는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에 반대한다(이삼식 외, 2015, p. 344).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최근 결혼코호트의 주거자금 조달유형(표 4-7 참조)은 미혼남녀 다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최근 결혼에 진입한 본 분석자료의 사례에서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며, 그것은 주거자금 조달유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표 4-10>은 남녀의 이상적인 성역할 배분에 관한 태도를 측정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에 동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의 점수가 2.36으로 0보다 4에 가까우므로 전통적 성역할 분리에 동의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유형별 차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여성주도 자립형이었고, 가장 낮은 유형은 양측 의존형이었다.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유형은 여성주도 자립과 남성측 부모 의존형이었는데, 남성의 점수만큼 높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성역할 규범 태도 점수가 가장 낮은 유형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양측 의존형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변수를 적절히 통제한 후에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구분을 수용하는 태도가 남녀 모

두 여성주도 자립형에서 나타났다는 점은 예측을 벗어난 결과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부모-자녀 간의 경제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주거자금 조달 유형이 성역할 가치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표 4-10〉 주거자금 조달유형별 남녀의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점수

(단위: 점)

구분	남성	여성	전체
남성주도 자립	2.36	2.32	2.34
여성주도 자립	2.73	2.42	2.57
공동 자립	2.36	2.34	2.35
차입형 자립	2.32	2.26	2.29
남성측 부모 의존	2.49	2.42	2.45
아내측 부모 의존	2.33	2.40	2.36
양측 의존	2.16	2.20	2.18
전체	2.39	2.34	2.36

주: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가 가정을 지키는 삶의 방식은 바람직하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측정된 문항이다. 표에 제시한 수치는 4점 척도의 평균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남성과 여성의 주거자금 및 총 결혼비용 조달의 차이는 성별 그 자체보다 경제적 능력이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사례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4(남편주도 자립형)의 부인은 고소득 전문직인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지만, 소득에 비례하는 금액을 공동기금에 납입하고, 이 공동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방식은 결혼 전 데이트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제가 돈을 못 모았어요”라며 결혼주거자금에 기여하지 못한 사실에 몇쩍어했다. 그것은 아내주도 자립형의 사례 5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고 한 이 남성은 막연하게 집은 남자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돈을 못 모았어요”라며 마찬가지로 멋쩍어했다.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자산을 축적하지 못해 결혼주거자금에 기여하지 못한 이 두 사례는 일찍 독립하여 노동소득의 일부를 월세를 충당하는 데 소비해온 것이 목돈을 모으지 못한 요인 중 하나로 보였다.

3. 결혼 이후 세대 간 관계

결혼에 진입한 후 세대 간 관계는 주거자금 조달유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앞의 부모역할 및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주거자금 조달 유형은 양측 부모와의 관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아니면 그와 달리 영향이 있는가.

아래 <표 4-11>은 연평균 금액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한 경제적 자원의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자립형에 비해 의존형이 부모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자립/의존 유형과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이전(연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자립형	117.7	117.0	117.3
의존형	151.8	127.5	140.0
전체	128.4	120.2	124.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표 4-12>와 같이 의존-자립의 범주와 젠더를 교차한 7개 유형에 따르면, 남성은 남편측 부모 의존의 경우, 여성은 아내측 부모 의존의 경우

가장 많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자녀부양과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주거자금 조달유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듯 보였던 것과 달리, 결혼 이후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사이의 경제적 부양에 있어서는 주거자금 조달유형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주거자금에 많은 도움을 받은 층의 부모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4-12〉 주거자금 조달유형별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이전(연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남성	여성
남성주도 자립	122.9	115.9
여성주도 자립	99.1	109.7
공동 자립	99.7	120.6
차입형 자립	121.0	118.5
남성측 부모 의존	159.4	123.2
아내측 부모 의존	122.7	161.9
양측 의존	132.8	117.3
전체	129.3	119.1

주: 부모가 모두 생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고, 두 분 중 한 사람이라도 생존하는 경우, 생존한 부모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금액 총액을 계산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원자료.

이러한 서술은 자녀세대의 소득수준과 부모세대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세대 간 자원 이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자원이나 도구적 자원 이전은 반드시 부모로부터 받은 과거의 이전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세대 간의 경제적 이전은 (단기적인) 호혜적 관계로 설명되지 않으며, 특히 한국의 세대관계가 이러한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어 왔다(정병은, 2007). 과거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모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어야 하고, 자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

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고선강, 2012; 최희진, 한경혜, 2017). 그런 점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의 결혼에 막대한 자원을 지원하는 중산층에서, 결혼 초기의 신혼부부는 지원 능력이 부족하고 60대 초반 전후의 부모세대는 아직 지원 필요가 강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표 4-12>에서 나타난 주거자금 부모 의존형의 현재 부모 지원 금액은 부모의 필요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감사와 관심의 표현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사례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편측 의존형(사례 1과 사례 2)과 양측 의존형(사례 6) 모두 부모가 지원한 것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잦은 가족모임에 참여하고, 명절과 생일 등 기념일에 현금을 드리는 것이 주요한 상응행위였다. 사례 1과 사례 2는 시부모가 요청하는 친족모임에 묵묵히 동참하는 편인데, 주거자금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도 친족모임 두 번 중 한 번은 가지 않았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부모세대는 어떤 동기로 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것인가. 민간 금융권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세대가 자녀의 결혼주거자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부모세대의 노후경제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한다(이대혁, 2016. 5. 12.).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10쌍 중 7쌍은 부모의 도움을 받았으며, 그 중 3쌍은 주거자금의 절반 이상을 부모에게 의존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지원 동기 또한 자녀세대로부터의 등가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홍성희, 2019). 그러나 경제적인 보상의 요구가 없다는 것이 어떤 보상도 요구하

28)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2016년 자녀 2명 이상이 결혼한 노년층 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녀결혼비용으로 평균 1억 2,5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노후자금 추정치의 55%에 달하는 규모였고, 응답자의 75%는 자녀결혼에 지출한 비용이 노후생활에 부담되는 규모였다고 응답했다. 자녀결혼자금 지원 금액은 대부분 예적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를 활용하는 경우도 12%에 달했다(이대혁, 2016. 5. 12.).

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같은 연구에서 결혼한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한 부모들은 결혼 이후에도 자녀와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지원의 동기라고 한다(홍성희, 2019).

이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부모세대의 자녀 주거자금 지원은 아들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한 좋은 관계 유지의 동기가 어떻게 젠더와 연결되는지가 설명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논의는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부모 지원의 젠더 편향성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장년 및 노년 세대가 젠더 편향적인 방식으로 자녀의 결혼 이행을 돕는 것은 오랜 문화적 관행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노후의 생활안전망을 자녀와의 네트워크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가족의 주요한 소득원이 여전히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 자녀와의 네트워크가 더욱 중요시된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의 자원이전을 호혜성에 무관심한 이타주의적 동기로만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단기적인 보상보다는 장기적인 채무관계의 유지, 즉 긴밀한 가족 간 연대의 필요가 젠더 편향적인 세대 간 자원이전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향후 과제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이 연구는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혼주거자금을 조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객관적인 개인단위 자금원천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자기자금, 부모 지원금, 대출의 세 가지 원천이 어떻게 조합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자기자금과 부모 지원금을 남편(측)과 부인(측)으로 구분함으로써, 주거자금 조달의 논리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 추세와 관련하여, 주거자금 조달유형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최근 7년 이내에 결혼한 부부의 결혼주거자금의 규모는 전국 평균 1억 9천여만 원으로 집계되었다(이하, 2015년 가격 기준). 자금원천은 자기자금 6,716만 원, 부모 지원 7,616만 원, 대출금 4,960만 원으로 구성되었다. 부모 지원금은 총량 기준으로 결혼주거자금의 약 40%를 차지하여,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자금원천임을 보여준다.

부모 지원은 신혼부부들에게 널리 확산되어 있는 주거자금 조달방식 중 하나이다. 전체 신혼가구 10가구 중 7가구가 부모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부모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원 규모는 양극화되어 있었다. 그 규모와 비중은 계층수준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측 부모의 지원금 규모는 전혀 없는 경우가 42.3%, 3,000만 원 미만이 7.7%를 차지하는 한편, 9,000만 원 이상 1억 2,000만 원 미만이 9.7%, 1억 2,000만 원 이상이 14.2%를 차지하여, 약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부모도 전체의 약 25%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

체 주거자금에 대한 부모 지원금의 비중(기여율)을 살펴보면, 부모 지원금이 절반 이상을 기여한 경우는 전체의 30.7%를 차지했고, 부모 지원금이 전혀 없는 경우는 35.8%, 부모 지원금이 절반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3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금(남편과 부인), 부모 지원(남편측과 아내측), 대출금으로 구성되는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조달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거자금 조달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하나는 세대관계와 젠더관계를 측정하는 복합적 기준을 구성하여, 이 기준에 따라 구별된 다양한 유형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다른 하나는 부모 지원에 의존하여 주거자금을 조달하거나, 남편의 주거자금에 의존하는 현상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 결과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의 결혼주거자금 조달방식은 각 자금원천의 동원 여부와 자금원천별 기여율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전체 자금에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를 의존형으로 분류하고, 50% 미만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자립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자기자금과 부모 지원금에서 남편(측)과 부인(측)의 상대적 기여율을 기준으로 남편측 편향, 아내측 편향, 부부 공동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기준을 교차하여 유형화한 결과, 전체 주거자금 조달유형 7개 중 남편주도 자립형이 가장 높은 비중(35.6%)을 차지했고, 남편측 부모의존형이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23.5%)을 차지했다. 대출을 통해 자금을 동원하는 유형은 전체의 18.0%를 차지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자립한 유형은 10.4%로 나타났다. 그 외 아내주도 자립형, 아내측 부모 의존형, 양측 부모 의존형은 각각 4.1%, 4.0%, 3.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어떤 특성의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자립형(부모 지원금이 전

체 자금의 50% 미만)에 속할 가능성이 클 것인가를 확인하였다. 기존연구에서 자주 활용된 변수인 거주주택가격, 주택점유형태, 거주지역, 소득수준 등과 함께, 최근의 사회변화 추세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결혼연령과 부부 경제활동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산 하위 20%에 비해 자산 상위 20%층은 의존형에 속할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소득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결혼연령이 높을수록 자립형에 속하고, 부부가 결혼시점에 맞벌이로 일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립형에 속할 확률이 큰 것이었다.

부모 지원을 받지 않거나 적은 비중으로 지원을 받는 개인들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시기를 지연하는 것이다. 반대로 평균적인 결혼연령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를 계층적으로 중립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면, 여기에서 맞벌이 유형과 자립형의 관계는, 맞벌이로 인해 부부가 함께 조달할 수 있는 자금(저축과 대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때 부모의 재정적 지원에 덜 의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자기자금에서 남편과 아내의 자금 기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총 결혼비용과 주거자금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기여금 차이가 단지 성별(젠더 규범)에 따른 결과인지, 남편과 아내의 소득 차이에 따른 결과인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으로 올수록 총결혼비용에 대해 성별의 효과는 줄어들고 소득의 효과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자금만을 떼어 놓고 보면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결혼당사자들은 여전히 주거와 주거 이외의 비용을 남녀가 분리하여 지출하고 있지만, 총 결혼비용에 대해서는 성별 그 자체가 아니라 성별과 관련된 소득수준 등의 경제적 능력이 차이를 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향후 과제

1. 이론적 함의

이상의 연구결과는 결혼주거자금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계층적으로 편향적이고 젠더적으로 편향적임을 보여준다. 결혼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자금의 필요는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부부 10쌍 중 7쌍이 부모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결혼을 통한 주거독립 과정이 여전히 사적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자산상위층에서 부모 지원의 비중과 규모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상위계층이 부모세대의 부를 자녀세대로 되물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주거자금을 증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의 지원이 결혼주거자금 조달방식에 모두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혼 이행의 복지적 수단으로서의 부모 지원과 자산상위층의 지위재생산 수단으로서의 부모 지원이라는 이 두 가지 지원 모두에서 부인측 부모는 소극적이고 남편측 부모가 적극적이다. 즉 모든 성격의 부모 지원은 남편측 부모에 의한 남성 자녀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은 결혼 시 주거자금 지원을 부모의 정상적인 역할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만드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재정적 지원은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상위계층의 표시로서 기능할 수도 있으며, 젠더 편향적 지원은 남성의 경제적 부양역할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전통적이거나 근대적인 젠더 문화와 질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혼주거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계층적 편향과 세대

및 젠더의 역할은 한편으로 봉건적인 신분제로의 복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상위계층은 교육이나 직업과 같은 근대적 제도를 경유하지 않고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자산을 물려주고자 하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공히 세대 간 자립보다는 긴밀한 상호의존의 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방식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차별이나 차등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온 지금까지의 가족변화를 뒤로 하고 아들/남편측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세기 후반 이래로, 결혼은 배우자 선택과 결혼 후 독립적 경제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당사자들의 주도와 자립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왔다. 현재에도 주거와 관련하여 결혼당사자들은 결혼시기를 조정하거나 부부 사이의 경제활동유형이나 결혼자금 기여 등을 조정하면서 행위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했을 때, 주거자금동원의 젠더적 현상을 오랜 문화적 관행이 지속되는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부모 지원은 자녀의 자산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규모이다. 대략 1억 원 미만 수준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모 지원은 자녀세대로 하여금 대출에 덜 의존하도록 만들거나, 양호한 주거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므로 상당한 사적 복지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경우 부모세대는 평범한 자산수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녀에 대한 결혼주거자금 지원이 노후생활자금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결혼주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왜인가.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의 결혼자금을 지원할 때, 주로 남성 자녀에게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부모세대의

자녀주거자금 지원이 남편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개별 부모 입장에서 보면 딸이 아니라 아들을 지원하는 것의 결과이다. 그러한 차등을 유지하는 것은 부모세대가 충분한 여유자산을 향유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제약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재정상태가 선별적 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부인측 부모의 주거자금 포함 결혼비용 지원금이 부인 자신의 기여금보다 낮은 수준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세대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결혼의 상징적 의미에도 충실해야 하고, 자녀의 결혼 이후 홀로 보내게 될 노년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여유자산은 자녀세대로부터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다. 결혼은 충분한 자산을 갖지 못한 자녀세대가 독립된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의 능력 범위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시기로서 외부자원에 대한 필요가 최대화되는 시기이다. 부모세대는 바로 그러한 시기에 남성 자녀에게 편향된 지원을 함으로써,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사이의 관계를 안전하게 재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부모세대의 필요와 동기에 대해 자녀세대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으며 타협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 편향의 자금지원 규칙을 대부분의 부모가 어기지 않는다면, 자신의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여성들도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통해 이러한 세대 간 자원순환의 회로에서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배우자 남성의 의무를 공유하는 정도는 간접적이고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남편측 편향적 부모 지원이 오직 남편측으로만 발달한 친족관계, 즉 부계 중심적 친족관계라는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남성들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영역, 즉 소득의 이전에서만 남편측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부계제와 부거제가 지배하는 사회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자녀에게 경제적 부양의 책임을 계속해서 부과할 필요를 재생산하는 불안한 노후보장체계를 통해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산상위층(상위 20%)의 부모자금지원 비중과 나머지 자산중간층과 자산하위층의 부모자금지원 비중은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상위층 주택의 높은 순자산가치는 부모로부터 더 큰 규모와 더 많은 비중의 지원을 받은 결과였다. 그것은 명백하게 세대 내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로부터의 주거자금지원을 개별 세대관계 내에서의 장기적 호혜관계 구축으로만 이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계층에 따라 부모에 의한 자녀주거자금 지원의 성격과 역할이 다르다는 가정하에, 그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세대 간 자원이전은 상위계층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지만, 자원이전의 가족 내부적/가족 외부적 성격과 자원이전의 가구 내외적 역할이 모든 계층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정책적 함의

우선 신혼주택 마련 자금의 약 40%를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사적으로 이전하여 조달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도 청년층의 소득불안정과 주택가격상승 등이 나타나면서 부모세대가 자녀의 주거자금을 지원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부모에 의한 자녀결혼자금 지원 현상은 단지 최근 몇 년 사이의 시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성인으로서 주거자립을 하는 방식이 오직 노동시장에서의 소득과 사적 부모

지원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가족주의적(최소주의적) 복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주거자금을 부모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일로 인식하는 것은 가치관이나 관행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부족한 생애주기에 있는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안정감 있는 제도의 미비 때문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정책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지만, 결혼주거자금 조달 실태에 관한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제안은 정책목표와 관련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서 자금조달의 탈가족화라는 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사적인 가족지원에 의존하여 주거독립자금이 조달되는 것은, 세대 내 불평등을 심화하고 특정 성에 대한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청년기나 결혼초기의 불평등은 이후 생애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세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목표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고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부모의 도움을 받는 청년세대 자신들도 그것을 부모 재산에 대한 권리로 인식하는 경우보다는 값을 갚지 않는 도움을 받은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에 더하여 사적 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동일 세대 내 자산하위층의 불만과 박탈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주거자금 조달의 탈가족화는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서만 실현가능하다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 장기적으로는 청년 주거정책과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결혼여부가 아니라 보편적인 연령기준을 중심으로 청년 주거자립 지원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08년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실행되기 시작한 이후로 정부는 정책대상을 다자녀 신혼부부에서 신혼부부 일반으로 확대해왔다.

최근에는 청년 주거정책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연령집단에 대해 결혼 여부에 따라 상이한 지원을 하는 것은, 정책 수혜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설득력이 없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충분히 많은 수의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해 주거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사후적인 보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전적인 인센티브가 되기는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 주거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결혼을 촉진하는 정책효과보다는 선별적인 특혜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물론 결혼한 사람에 대해 충분히 많은 규모의 공적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시민들 다수에게 익숙한 사실로 자리잡는다면 결혼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주거상의 혜택이 결혼을 계획하는 이들이 안정된 미래를 전망하도록 하는 데에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의 수혜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정부가 안정된 주택을 지원해준다’는 메시지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결혼을 기준으로 한 공적 지원보다는 일정한 연령(가령 25세 이상)에 도달하면 다양한 정부의 주택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20대의 절대적 다수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주거독립의 경험이 전혀 없이 결혼으로 이행할 때에는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외부적 조달이 필수적이게 된다. 부모집을 떠나 개인으로서 주거자립을 시작하는 연령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주거이행의 탈가족화라는 목표는 부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계층의 청년세대나 신혼부부에 대한 안정된 지원을 통해 시작되어야 한다. 청년세대와 신혼부부는 자가소유율이 낮고 임차비율이 높은 집단이다. 이러한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은 최근 정부의 주거정책 내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효과가 충분

히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주택 임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가구의 절대 다수가 민간임대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또한 임차가구 내에서도 소득과 자산수준에 따라,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지원에 접근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계층과,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지원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계층으로 구분되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보증금 규모가 낮은 월세 임대가구는 부모의 지원도 거의 없지만 대출에도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월세임대가구가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확인했듯이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부부가 부모의 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시기는 물론 결혼시점에도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의 청년기 경제활동 위축은 결혼주거자금을 남성 한 사람(과 그 부모)에 편향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청년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제거하고 청년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보다 자유로운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결혼의 도구적 성격을 완화하여 결혼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향후 연구 과제

이 연구는 신혼부부의 결혼주거자금 조달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조달원천별 금액을 개인단위로 제공한 자료가 있었기에 연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자료는 실태조사의 특성상 소득 및 자산의 상위계층이나 하위계층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보고에 의존한 자료수집은 세대 간 자산 이전 내역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충실한 보고를 강제하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아닌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추정 방법을 이용하는 대안적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실태조사에 의존해야 한다면, 소득이나 자산의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을 표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기존 실태조사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 계층의 실태가 파악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자원 이전, 특히 결혼이라는 비일상적 사건에 이루어지는 자산 이전을 둘러싸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동기와 의미부여 등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결혼할 때 부모가 주거자금을 증여하는 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상적이라면 그것의 역할과 성격은 무엇인가와 같은 심층적인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막대한 규모의 자산이 혈연관계를 매개로 이전되고 혼인관계를 통해 공유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동기와 태도를 전통적인 관습이나 규범의 틀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다소 순진하고 단순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자산 이전의 관계가 오직 경제적 이익의 문제로만 이해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결혼주거자금에 대한 부모의 지원은 널리 퍼져 있지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부모의 지원 없이 결혼주거자금을 마련하는 사례도 10가구 중 3가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적인 지원 경험여부와 무관하게,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결혼주거자금에 대한 부모 지원 현상은 젠더 편향적인 가족 실천을 유발하고, 세대 내 불평등을 심화하며, 결혼의 경제적 문턱을 높이는 등 사회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 향후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국내 문헌]

- 고선강. (2012).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과 경제자원 이전: 20-40대 기혼여성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1-19.
- 고진수, 김준형, 강민규. (2015). 서울 중고령가구의 주택자산 이전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6(1), 41-55.
- 권내현. (2010). 조선후기 평민 동성촌락의 성장. 민족문화연구, 52, 1-34.
- 김모란. (1995). 한국사회 혼인거래 관행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9(3), 533-558.
- 김승경. (2015). 생산성, 투쟁성, 여성성: 한국 여공의 다층적 이미지. 이재경, 유철인, 나성은 외 지음. '조국 근대화'의 젠더정치: 가족·노동·섹슈얼리티. 서울: 아르케.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진우. (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주희. (2009). 결혼초기 여성의 친족관계: 외동딸에 대한 사례연구. 가족과 문화, 21(4), 95-118.
- 김현주, 이선이, 이여봉. (2013). 초기 성인기의 정체성 구성에 관한 연구: 중요한 타자와의 상호작용. 가족과 문화, 25(3), 54-96.
- 마강래, 권오규. (2013). 주택자산의 세대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21(2), 169-188.
- 문소정. (1991). 일제하 한국농민가족에 관한 연구: 1920~1930년대 빈농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미선, 강미나, 임상연, 유은영, 오주형. (2019).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세종: 국토연구원.
- 박종훈, 이성우. (2017). 신혼부부 가구는 왜 독립적이지 못하는가?: 주거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33(3), 31-47.

- 성미애. (2006). 질적 연구를 통한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대한 진단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59-72.
- 신윤정. (2020). 사회계층별 합계출산율의 격차와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9호.
- 오민준. (2020).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02-08.
- 윤자영. (2012). 노동시장통합과 결혼이행. *한국인구학*, 35(2), 159-184.
- 윤형숙. (1991). 서울근교농촌의 경제와 결혼: K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호재 외 지음.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117-143). 서울: 또하나의 문화.
- 이기춘, 조은정. (1992). 도시 신혼기가계의 결혼비용과 신혼주거자금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95-113.
- 이길제. (2017). 신혼가구 주택소비에서 나타나는 세대간 자산과 시간의 이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길제. (2020). 부모의 소득·자산 및 분가 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19-29.
- 이길제, 최막중. (2017). 신혼가구의 주택소비에 나타나는 세대간 자산 이전과 성별 효과. *주택연구*, 25(1), 35-62.
- 이대혁. (2016. 5. 12.). 집 팔고...빚 내고...자녀결혼에 노후자금 절반 넘게 쓴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5122016206739>에서 2020. 10. 28. 인출.
-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림, 이지혜. (2017).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2011). 세대간 자산이전측면에서 연령대에 따른 결혼시 주거자금 마련 변화추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205-216.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립,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철승, 정준호. (2018).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세대 내 불평등의 증대, 1990~2016. 동향과 전망, 104, 316-373.
- 이태진, 우선희, 최준영. (2017). 청년층의 주거실태는 어떠한가. 보건복지포럼 (2017.2)
- 이해영, 권태환. (1968). 한국가족형태의 한 연구: 이천읍의 경우. 동아문화, 8, 1-34.
- 이현정, 김영주. (2018).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청년층가구의 사회경제적 차이 및 주택자산효과 분석. 도시행정학보, 31(2), 73-95.
- 임덕영, 이경애, 진미윤, 이의중. (2017). 청년 주거 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전창환. (2011). 1997년 한국의 외환,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증권화, 동향과 전망, 81, 71-112.
- 정병은. (2007). 세대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노인자료의 분석. 한국노년학, 27(2), 503-518.
- 정승모. (2010). 조선후기 지역사회 구조 연구. 서울: 민속원.
- 조성호, 변수정, 김문길, 김지민.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선영. (2020). 한국여성의 생애과정 재편과 혼인행동의 변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신덕. (1980). 계층별로 결혼행동에 나타난 여성 역할: 여공과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36, 227-252.
- 최필선, 민인식. (2015).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 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57-83.
- 최희진, 한경혜. (2017).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기적·단기적 호혜성: 아들과 딸의 비교. 한국노년학, 37(1), 83-102.
- 한경혜, 윤성은. (2004). 한국가족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 세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7(2), 177-202.

- 함인희. (2001). 배우자 선택 양식의 변화: 친밀성의 혁명?. 가족과 문화, 13(2), 3-28.
- 함인희. (2002). 결혼으로 가는 길. 이동원, 김현주, 최선희, 함인희, 김선영 공저. 한국가족의 현주소. 서울: 학지사.
- 홍성희. (2019). 여성 베이비부머의 결혼기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 인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2), 61-78.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71호, 2020. 10. 19.,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2020a).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7. 28.).
- 국토교통부. (2020b).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325호, 2020. 10. 19.,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해양부훈령 제 2008-99호.
- 대한민국 정부. (각 연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중앙부처).
- 대한민국 정부. (각 연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중앙부처).
- 대한민국 정부. (각 연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중앙부처).
- 통계청. (2019).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8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9. 12. 12.).
- 통계청. (2020).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20. 12. 10.).

[국외 문헌]

- Bayrakdar, S., Coulter, R., Lersch, P., & Vidal, S. (2019). 'Family formation, parental background and young adults' first entry into homeownership in Britain and Germany', *Housing Studies*, 34(6), 974-996.
- Cherlin, A. J. (2004).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848-861.
- Fingerman, K. L., Cheng, Y.-P., Wesselmann, E. D., Zarit, S., Furstenberg, F., & Birditt, K. S. (2012). Helicopter parents and landing pad kids: Intense parental support of grow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4), 880-896
- Furstenberg, F. F. (2010). On a new schedule: Transitions to adulthood and family change. *Future of Children*, 20(1), 67-87. doi: 10.1353/foc.0.0038
- Hajnal, J. (1982). Two kinds of preindustrial household formation system.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8(3), 449-494.
- Heath, S., & Calvert, E. (2013). Gifts, loans and intergenerational support for young adults, *Sociology*, 47(6), 1120-1135.
- Kim, K., Zarit, S. H., Fingerman, K. L., & Han, G. (2015). Intergenerational exchanges of middle-aged adults with their parents and parents-in-law in Kore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3), 791-805.
- Kim, Keuntae. (2017). The Changing Role of Employment Status in Marriage Formation among Young Korean Adults. *Demographic Research*, 36(1), 145-172.
- Lee, J., & Bauer, J. W. (2013). Motivations for providing and utilizing child care by grandmothers in South Kore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2), 381-402.
- Lennartz, C., & Helbrecht, I. (2018). The housing careers of younger adults and intergenerational support in Germany's 'society of

renters.' *Housing Studies*, 33(2), 317-336.

Micheli, G. A. (2012). Two strong families in Southern Europe? Re-examining the geography of kinship regimes stemming from the reciprocity mechanisms between generation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8, 17-38.

Poggio, T. (2008)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ome ownership and the reproduction of the familialistic welfare regime', in Saraceno, C. (ed.) *Families, Ageing And Social Policy: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European Welfare States*. Edward Elgar, 59-87.

Rowlingson, K., Joseph, R., & Overton, L. (2017). *Inter-generational financial giving and inequality: Give and take in 21st century families*. UK: Palgrave Macmillan.

[통계 원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MDIS에서 인출]

통계청. (2019). 신혼부부통계. [MDIS에서 인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웹사이트]

마이홈 포털. [웹사이트]. (2020. 10. 20.). URL: <https://www.myhome.go.kr>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 (2020. 10. 20.). URL: <http://nhuf.molit.go.kr>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신혼부부통계. [웹사이트]. (2020. 10. 30.) URL: <https://kosis.kr/index/index.do>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웹사이트]. (2020. 10. 10.) URL: <https://kosis.kr/index/index.do>

한국토지주택공사. [웹사이트]. (2020. 10. 20.). URL: <https://www.lh.or.kr>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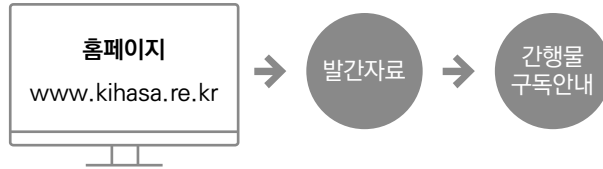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